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Vol.02
July 2015

FTA TRADE REPORT

FTA 무역 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TRADE REPORT

Vol.02
July 2015

FTA 무역 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Contents

FTA FOCUS

“원산지검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현황과 대응방안 04
이명구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FTA 최근 동향

FTA 최근동향 17

- 관세청 주요 이슈
- 우리나라 FTA 동향
- 해외 FTA 관련 동향

FTA ANALYSIS

한-EU FTA 발효 5년을 맞이하여 – FTA 활용 성과와 전망 40
권민경 |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 한-EU FTA 교역동향
- 한-EU FTA 활용 동향 분석
- 주요국의 FTA 활용 동향
- 한-EU FTA 5년을 맞이하여

산업별 FTA 이행 동향 – 신선 과일류 및 과일류 생산품 76
진병진 |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 분석개요
- 최근 3년간 신선 과일류 및 과일류 생산품 수입동향
- 최근 3년간 협정별 신선과일류 및 과일류 생산품 수입동향

FTA EXPERT

① 전문가 기고
영연방 3국과의 FTA와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100
어명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연구원

② 전문가 기고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주요내용과 시사점 105
금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③ 전문가 기고
영연방 3개국 FTA 의미와 전망 113
정혜선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FTA Trade Report

FTA와 품목분류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제20류 주 규정 해설 120
오수교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위원

FTA 활용 성공사례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129

-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리 모델(한-EU FTA)
- 합리적 의심 사전차단 원산지검증 회피 모델(한-EU FTA)
-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 모델
-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임가공 전환 모델
- FTA활용을 위한 생산시설 국내유턴 모델
- 수출입 쌍방향 FTA 활용 모델
- FTA로 인한 가격인하 활용 모델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원산지 관리사 수석합격자 후기 167
류기식 | 11회 수석합격자 이서연 | 12회 수석합격자

활용하기 쉬운 FTA PASS

교육용 FTA-PASS 기능 추가 171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FTA 100% 활용하기

호주 통관환경 동향 및 FTA 활용방안 177
이지원 |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과장

지도로 보는 2013 대비 2014 특혜 수출입실적 증감률 183

원산지검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현황과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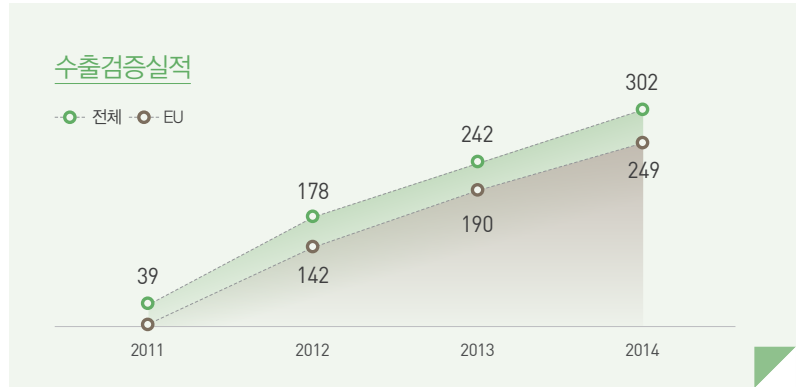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예고 없이 들이닥친 美 관세청 섬유·의류 10개社 원산지검증」,
「원산지 요청 EU가 81%, 대응능력 없으면 불이익」

얼마 전 문화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작년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21%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는 2011년 7월에, 미국과는 2012년 3월에 FTA를 발효하였다.

지난해 관세청은 FTA 상대국의 요청으로 302건의 수출검증을 실시하였다. 2011년에 비해 약 674%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유럽연합(EU)의 요청에 따라 수출검증을 실시한 비율은 약 81%에 달한다.



그렇다면 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진짜 '한국산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FTA가 발효되면 수입국은 상대국 제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관세징수 대신에 질 좋은 한국산 상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3국(예를 들면 일본, 중국)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되어 수입되거나, 한국에서 라벨작업·절단·세척 등과 같은 단순한 가공을 한 후 수입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입국인 EU와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징수도 하지 못할 뿐더러 상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질 것이다. 또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에도 피해가 불가피 할 것이다.

FTA 혜택을 자국 소비자가 아닌 엉뚱한 제3국의 수출업체가 가로채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FTA를 적용 받아 수입된 상품이 진짜 '한국산 제품'인지 여부와 'FTA 상품'의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원산지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원산지검증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와 관세징수가 부정하게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의문이 더 있다. 한국에서 수출한 상품을 유럽연합(EU)세관이 아닌 한국세관에서 원산지검증을 하는가?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검증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캐나다, 칠레, 페루, 호주와의 협정은 수입국 세관이 상대국 수출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EFTA), 터키와의 협정은 수입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 세관이 수출자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형태를 조합한 협정도 있다.

‘A’라는 수출업체가 있다고 하자. 의류를 만들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로 수출한다. ‘A’사의 ‘B’라는 모델에 대해 영국에서 한국세관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세관은 ‘B’ 모델은 “한국산 제품”이라고 영국에 회신하였다. 그리고 한 달 후 미국세관은 ‘B’모델에 대해 한국 수출자에 대해 직접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FTA특혜를 받을 수 없는 “베트남산 제품”으로 판명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A’사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A’사에 대한 FTA 특혜를 배제하였으며 그 이후 한동안 ‘A’사가 수출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산지검증을 하였다.

위 사례는 가상의 시나리오이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한국세관이 원산지검증을 부실하게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출업체와 한국산 제품에게로 돌아간다. 상대국 수입자는 FTA 특혜로 납부하지 않았던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이며, 상대국 소비자들은 한국산 상품의 선택을 주저할 것이다. 또한 한국 수출자는 무역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워 질 것이며, 한국세관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추락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세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원산지증빙자료에 기초를 둔 정확한 원산지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야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인도와 한국세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대외 신뢰도 증가는 상대국의 불필요한 원산지검증을 예방하고, 한국산 제품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원산지검증이 중요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였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원산지검증에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원산지 입증자료를 꼼꼼히 챙기자

01

문화일보 기사를 다시 살펴보자.

CBP는 사전에 선별해 둔 검증대상 섬유류 수출기업에 불시에 들이 닦쳤고, 현장에서 검증에 응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수출거래·생산 사실, 원재료 구매서류 및 보관 여부, 재단·봉제 등 공정 생산설비 및 기계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제조과정을 역추적했다.**

‘수출거래·생산 사실, 원재료 구매서류 및 보관 여부’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와 ‘보관’이다.

다시 말하면 해당제품이 원산지상품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잘 보관하고 세관에서 요구할 때 제때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또한, 계약 → 원재료 구매 → 제품 생산 → 출고 → 운송·선적 → 대금수령 등 단계별로 챙겨야 할 자료 역시 다양하다.

수출자 보관서류 예시

수출자 보관 서류(FTA 특례법)	보관서류의 종류(예시)
업체 소개 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임직원 현황, 공장등록증, 생산설비 현황 등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 좌동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국외반출신고서(자유무역지역 생산제품), 보세운송신고서(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 영수증·선하 증권 사본(우편물·택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수입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대금지급자료, 원재료의 C/O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무역계약서, 구매요청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수출자 보관 서류(FTA 특례법)	보관서류의 종류(예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재료 구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내국신용장,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ERP 시스템 출력자료 등 (제품의 생산)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이동표, BOM, 임가공(사급) 관련 증빙자료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원재료/제품수불부, 노무비·제조간접비·기타경비 및 이윤내역, ERP 출력자료, 실제원가결산 자료 등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 관리대장	입출고·재고관리대장, 생산일지, 매출전표(A/R), 판매원장, ERP 출력자료
생산자가 제공한 서류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 확인서

하지만, 몇 가지 사항만 기억한다면 자료보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첫째, 업무 단계별로 자료를 취합하라.

통상 업무절차는 각 단계별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산지 증빙자료도 업무단계별, 시간별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미국세관이 방문하여 금년 6월 4일 수출한 상품(송품장)에 대한 원산지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원재료구매 → 제조 → 출고까지 일자순으로 보관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① 원재료('15.5.20)	수입신고필증(5.19), 발주서(5.19), 거래명세표(5.20), 입고증(5.20), 원재료수불부(5.20), 원산지확인서(5.20), 세금계산서(5.20)
② 제조('15.5.30)	작업지시서(5.29), 생산일지(5.30), 생산관리대장(5.30)
③ 창고보관('15.6.2)	창고 인수증(6.2), 재고관리대장(6.2)
④ 판매('15.6.4)	계약서(6.2), 송품장(6.4), 포장명세서(6.4), 대금영수증빙(외환통장 등)
⑤ 수출('15.6.5)	수출신고필증(6.5), 매출전표(6.5), 출고증(6.6), 항공운송증권(6.7)

예고 없이 방문한 미국세관의 현지검증에는 주문서(P/O) 또는 송품장 단위별로 자료를 관리하면 효율적이다.

또한, 생산일지 등 생산관련 입증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기업전사시스템(ERP)의 각종 출력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둘째, 품명과 규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원재료명세서(BOM)에 기재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원산지·HS번호와 실제 투입된 원재료의 내역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A물품을 생산할 때 실제 원재료가 a, b, c가 투입됐다면, 원재료 명세서(BOM)에도 a, b, c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세관에서 받은 서류는 반드시 챙기자.

세관은 FTA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세관은 검토 후 인증서 또는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 준다.

세관에서 받은 서류는 반드시 챙기자. 세관에서 인증 받았거나, 사전에 확인한 자료는 원산지 입증자료로 인정된다.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세관에서 미리 확인했으므로 일단 신뢰하는 것이다.

한국세관은 인정하더라도 미국세관이 방문하여 직접 검증할 때 이러한 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가?

걱정 할 필요가 없다. 한-미 세관은 양국에서 사전심사한 자료는 상호 인정하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자료보관은 어렵다. 그렇다면 관세청에서 발간한 두 권의 책에 주목하자.

「수출입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와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이다.



▲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책자는 수출입기업이 원산지 증빙을 위해 보관·제출하여야 할 자료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제 검증사례를 토대로 세관직원이 원산지검증을 할 때 요구하는 자료내역과 요구사유, 질의내용을 함께 포함하였다.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에는 한-미 세관 합동 현지검증제도, 현지검증 단계별 조사내용과 대응요령 및 기업체 현지검증 대응 실제사례로 구성하였다.

또한,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한 8대 핵심 포인트와 미국세관의 질의서 및 실제 증빙서류 견본을 포함시켰다.

이 두 권의 책에 원산지검증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02

사장의 얼굴이 더 붉어졌다. 씩씩거리는 숨소리는 더 거칠어졌다. “잠깐만 기다리슈” 한-미 검증팀에게 한 마디 던지고 밖으로 나간다. 사전통지 없이 검증을 나왔다고 한참 거칠게 항의했던 사장이었다. “쿵” 소리가 나더니 사장이 들어왔다. 양 손에는 메모지를 가득 들고 있다. “여기는 일하는 사람이 적어서 내가 직접 관리하요”, “찾으시는 서류는 여기에 있을거유”. 메모지를 뒤척이더니 검증팀이 요청했던 작업지시서를 펼쳐 보인다. 거기에는 주문 받은 일자·수량, 작업 지시한 내역, 출고한 날짜, 구매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또 필요한 게 뭐요? 언제 출국하죠? 내가 출국하기 전까지 다 챙겨 드리리다” 사장의 화난 목소리에 통역은 어찌해야 할지 당황한 얼굴이다.

위 사례는 결코 원산지검증에 잘 대응한 사례는 아니다. 원산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지는 않아 송품장의 물품과 사용된 원재료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사장은 적극적으로 검증에 대응했다.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료는 출국 전까지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며칠 후 요청했던 자료를 직접 들고 왔다.

미국 세관은 결국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미 합동 현지검증은 하루에 2~3개 업체를 실시한다. 업체당 약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제약에 부딪힌다. 따라서 수출자는 짧은 시간내에 적극적으로 원산지검증에 대응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고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증빙자료들은 잘 보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산시설을 견학시키고 제조공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장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출국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미국 세관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결코 원산지검증에 겁을 낼 필요가 없다.

원산지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자

03

FTA를 잘 활용하려면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제품생산, 구매·판매, 회계에 대한 지식은 필수이다. 추가로 FTA 협정, 관세법,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료보관과 원산지검증에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분업화가 잘 되어 있다. 생산, 물류, 영업, 경영 분야별로 전문가를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전사시스템(ERP)을 구축한다.

하지만, 원산지검증에는 이렇게 훌륭한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산지검증은 1개의 상품이 수출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한다. 따라서 상품의 전 과정을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전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원산지 전담직원(팀) 없이 각 분야별로 각각 대응하게 되면 결국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제품생산 분야의 직원이 원재료의 HS번호와 수출상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설명할 수는 없다. 기업전사시스템(ERP)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증빙자료를 추적하여 제출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한, 원산지검증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모두 동원되어야 하므로 인력 손실도 크다.

그래서 FTA 전담직원이 필요하다. 관세청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FTA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소기업에서 신규 인력 채용 또는 교육 파견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FTA 전담직원으로 육성해도 이직 등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표나 임원이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건 어떨까? FTA 관련 교육도 이수하고 원산지 관리사 자격에도 도전해 보자.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 실시한 한-미 공동조사의 실제 사례이다.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방문대상은 지방의 생산 공장이었다. 공장장이 직접 원산지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회사의 개요부터 원재료의 구매, 제품생산 과정, 출고 및 수출과정, 관련 운송업체·관세사 등을 막힘없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보여 주었다. 본사에서 보관하는 대금 관련 자료와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서 등은 추가 제출하기로 양해를 구하였다. 공장 견학도 직접 안내하여 보관중인 원재료, 출고 대기 제품(검증대상 제품과 동일한 물품), 제조공정을 일일이 설명하였다. 검증팀은 원산지제품임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상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회의실 문을 열자 20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검증팀을 바라봤다. 회사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 웃음으로 맞이한다. 회의 테이블을 두고 서로 마주 앉았다. 검증팀은 4명, 회사측은 10명이 앉아 있다. 회사 대표는 한명 한명 소개를 한다. 생산 본부장, 재무 본부장, 구매팀장, 영업팀장, 관세사, 관세사, 회계사, 변호사, 일본 본사에서 출장 온 임원, 회사 대표 본인까지 모두 10명이다. 원재료 내역서 한 장을 요청해도 구매팀장 → 관세사 → 회계사 → 생산 본부장 → 대표이사의 검토를 거쳐 검증팀에 제출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다.

위 사례는 필리핀에 있는 일본계 기업을 현지검증 했을 때의 일화이다. 업체 관계자가 아닌 변호사 등이 같이 참여하여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서류 한 장을 요청해도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전달하였다. 검증팀의 질문에는 먼저 전문가들과 상의 후 대답하였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답했다. 그렇지만, 검증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답변과 서류는 정확하고 충실하였다.

현지검증 때 변호사·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협정과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공동조사 당시 전문가들이 참석한 적은 없었다. 갑작스런 방문에 연락할 시간도 없었고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미국 등은 민간전문가의 조력을 제도적 장치*로 활성화하고 있다.

* 미국 관세법 제1592조(19 USC 1592) (c) Maximum penalties

기업이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였다면 규정 위반 시 처벌을 완화해 준다. 합리적 주의의무 이행여부는 정기적인 컨설팅, 전문가 의견서 보관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미국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FTA 특례법 제24조 제3항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였더라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통보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사 등 전문가들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통보 등 후속 절차에 능숙하다.

원산지검증 뿐만이 아니다. FTA 상담, 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재료 및 수출제품의 품목분류, 부가가치 계산, 특혜적용, 불복 등에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자.

관세청을 활용하자

05

관세청은 새로운 FTA가 발효될 때마다 국내 유일한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앞서 언급한 각종 제도와 더불어 FTA 비즈니스 모델 보급,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인증수출자 조기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중 FTA를 대비하여 영세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해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01

「수출입기업 지원 센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FTA 컨설팅, 교육 및 고용지원, AEO,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입통관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02 **기업별 맞춤형
YES FTA
컨설팅 전개**

FTA전문 교육을 받은 FTA 컨설턴트(관세사)를 선정하여, 중소·영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원산지 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등 유형도 다양화하여 중소기업이 컨설팅 방식을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03 **FTA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원**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준비를 위해서는 FTA 전문인원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YES FTA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기업실무자·특성화고생·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FTA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민간과 함께 하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FTA 전문교육 이수자와 중소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04 **수출물품 원산지
관리시스템
(FTA-PASS)
무료 보급**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시 어려움을 겪는 원산지 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FTA-PASS를 무료로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약 11,850개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수출물품 FTA-PASS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ftapass.or.kr)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PASS를 확대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05 **FTA 활용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관세청은 FTA 종합정보 사이트인 YES FTA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한-중 FTA에 대비하여 對中 관세특화정보를 제공하는 「차이나 Info」를 개설하였다. 또한 원산지검증 사례, 원산지검증 진행내역 및 최신 원산지검증 동향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 콜센터 내에 원산지검증과 한-중 FTA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담체계를 갖추고 민원 상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FTA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세계 각국은 소비시장의 선점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 FTA 활용이 '선택'이 아닌 '생존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FTA 배후에는 원산지검증이라는 날카로운 창이 도사리고 있다. 원산지검증을 잘 준비해야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 원산지검증은 자료보관이 반이다 ”

기업들이 자료를 잘 보관만 해도 원산지검증에 반 이상은 대비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원산지검증은 생소한 업무분야이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업무분야이기도 하다. 원산지검증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면 언제든지 관세청을 찾아주기 바란다.

우리기업이 원한다면 관세청은 기업 지원을 위해 언제라도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FTA 최근 동향



01 관세청 주요 이슈*

2015.05.22

제1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참석

관세청은 지난 5월 21일(수)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대(對) 아세안 관세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005년 7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타결을 계기로 시작된 이 회의는 역내 무역의 원활화와 교역의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 등 관세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對) 아세안 협력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양 측은 지난해 11월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의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도입 및 한국과의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위한 적극 협력도 진행된다.



▶ 지난 5월 21일(수)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한 이돈현 관세청차장이 대(對) 아세안 관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관세청

* 자료 : 관세청

이 밖에도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인정된 관세행정 시스템(UNI-PASS), 전자 상거래물품 통관정책 등 선진 통관시스템과 세관직원 능력배양 및 개도국 고위직 장학 프로그램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앞으로도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2대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의 관세외교 활성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역내 무역의 원활화와 교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5.05.27

대중(對中) 수출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중국 FTA 전용 홈페이지 '차이나-Info'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대중(對中) 관세특화정보를 지난 6월 1일부터 제공하였다.

한-중 FTA 가서명 직후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 내에 구축한 '차이나-Info'의 콘텐츠를 4개의 메뉴에서 20개의 메뉴로 대폭 보강하고, 별도의 홈페이지로 분리하여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한, 온라인 상담창구에서는 차이나센터에 배치된 지역별 공익관세사가 FTA 활용을 위한 실시간 밀착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특히 대(對) 중국 FTA 전용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이유는 4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 설문조사 결과(14.4.18~29) 대(對) 중국 수출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많고, FTA 활용에 있어 정보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 FTA 활용애로: 정보부족(20.3%), 원산지관리 어려움(14.4%), 전문인력 부족(11.4%) 등

차이나-Info는 다음과 같이 '한-중 FTA 협정', '활용정보', '동향정보',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차이나-Info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차이나-Info 홈페이지 메뉴 설명

한-중 FTA 협정	활용정보	동향정보	자료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정문과 단계별 양허유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등 한-중 FTA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세율(중국 관세율),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제공 FTA 성공사례를 산업·품목별, 비즈니스모델별로 분류하여 성공 사례를 기업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 FTA 관련 보도자료 및 동영상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보, 관련통계 및 'CEO REPORT' 등을 제공 'Q&A'를 통해 한-중 FTA 100문 100답 열람 및 YES FTA 차이나센터 상담이 가능

2015.06.01

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정품목 및 서류 확대

관세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우리 농수축산물의 FTA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해 주는 서류 및 품목을 대폭 확대·고시하였다.

올해 3월 5일부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이 협의를 거쳐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3종, 481개 품목에 대해 농관원 발급서류를 FTA 원산지 확인서로 간편하게 인정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여기에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추가하고, 인정품목 수도 대폭 확대(HS 6단위 기준, 481개 → 1,027개 품목)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리 농수축산물 등의 수출지원을 확대하였다.

FTA 원산지 인정서류 및 품목수 확대

구분	과거(3.15~)		현행(6.1~)	
인정서류	3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4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		지리적 표시 등록증
인정품목	481	녹차, 사과 등	1,027	청양고추, 나주배 등
수해농가	17만 가구		30만 가구	

이번 조치로, 지리적표시대상인 지역명품특산품(예 : 나주배, 청양고추 등)의 FTA체결 국가로의 해외진출이 쉬워지고, 특히, 한-중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의 중국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었으나, 이번 고시로 30여만 개의 농가가 지리적표시 등 서류 1개만으로 FTA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산물 및 축산물 등 더 많은 산업분야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15.06.05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10대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에 대비해 대(對) 중국 수출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중 FTA에 특화된 ‘10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관세청이 개발하였다.

이 자료는 우선, ‘개성공단 활용 모델’부터 ‘YES FTA 차이나센터 활용 모델’까지 총 10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5대 산업별(농수산물, 석유화학, 섬유 의류, 전기전자, 생활산업)로 특정 모델 적용이 가능하도록 활용 체계도 제시되어 있다.

또한, 모델별로 한-중 FTA에 대한 ‘활용 예시’ 및 ‘적용 팁’을 제시하여 중소 수출기업들이 FTA 발효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 자료를 한-중 FTA 특화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차이나-Info’에 등재하고 기업들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며, 전국 30개 세관의 한-중 FTA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상담 직원 및 공익관세사에게 배포해, 한-중 FTA 상담 시 기업별로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안내해 줄 계획이다.

2015.06.10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원산지검증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세관 황남재 FTA1과장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서 작성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관세청 제공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은 한국의 유일한 원산지검증 담당기관으로서 검증 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기업들의 원산지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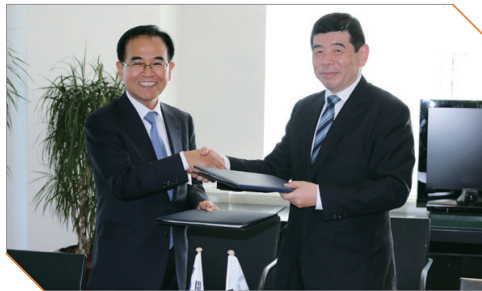
결정기준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및 발급절차를 설명함으로써 원산지 위반에 따른 기업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FTA를 활용한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 또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 기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2015.06.11

관세청,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및 위상 강화

김낙희 관세청장은 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73차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정책위원회 및 제123/124차 총회'에 참석하여 179개 회원국 관세청장들과 세계 관세행정 of 주요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극적으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이행지원 방안과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한 대응방안 등 지난 1년간 WCO에서 중점 추진해 온 정책들을 논의했다.



◀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73차 WCO 정책위원회 및 제123/124차 총회'에서 김낙희 관세청장이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이행을 위한 개도국 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 관세청 제공

또한, 이번 협정문 체결로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전자상거래 등 전 세계 관세 행정의 주요이슈를 주도하는 한편, 스페인어 랭귀지펀드에 이어 아랍어를 추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중남미 지역의 스페인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 등 아랍 지역 회원국들과의 협력관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06.17

섬유·의류 업계, 더 철저히 원산지 관리해야 피해 예방

최근 섬유·의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비정상적으로 발급되어 FTA를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등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지난 6월 17일(수) 서울 섬유센터에서 한국섬유산업 연합회와 함께 섬유·의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섬유업계의 원산지관리 정상화와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고, 원산지검증 대응 우수사례와 실패사례를 비교·분석하며 기업들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찾아보는 '모의검증'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동안의 원산지검증 사례를 통해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주요 요청 사유와 원산지검증 대응 실패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상대국은 주로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로 인해 사후검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수출기업들은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소홀, 원산지검증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후검증 대응에 실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오류 사례

구분	내용
한-EU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다른 경우
한-터키, 한-EFTA	수출자의 서명 누락, 원산지문구 오타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인장이 사전 통보한 인장과 다르거나, 원산지 증명서와 송품장간 금액 또는 수량이 상이 등

관세청 관계자는 “FTA 무역체제에서는 원산지의 입증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원산지를 입증하는 원재료 구매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국이나 터키 수출 섬유류 제품 중 원산지결정기준이 원사(原絲)부터 한국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원사기준'인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특별히 주의하여,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15.06.19

무역 교과과정에 '원산지관리 실무' 편입 추진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원산지관리' 분야를 신설해, 무역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교 학생이 정규 교과과정에서 FTA 원산지관리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는 현재 원산지관리 교육은 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론 위주의 단기 교육(2~3일)으로 진행되고 있고, 원산지실무에 대한 표준화된 교재도 없어 실무자에 필요한 필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역관련 특성화고·전문대의 FTA 교육 과정은 대부분 방과 후 또는 방학특강 형식으로 일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정부지원사업 예산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분류체계 개선 의견을 제출하여, NCS 내에 '원산지관리' 분야를 신설(6. 1. 확정)했고, 하반기부터 분야별(현장, 교육, 자격) 전문가들과 함께 워킹그룹(Working Group)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NCS 개발 및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

또, FTA 원산지 분야 전문자격인 원산지관리사 등 자격제도와 교육 과정을 연계하여 실무 중심의 FTA 교육을 받은 전문인재들이 자격증 취득 후 기업 고용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산지관리 실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그동안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교과 과정에 원산지관리 실무가 포함될 경우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FTA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FTA 활용률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 무역·유통관리(소분류) 내에 원산지관리(세분류) 신설(6.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설 사유
02. 경영·회계·사무	4. 생산·품질관리	3. 무역·유통관리	03. 원산지 관리	기업의 FTA 활용 필수직무

- 원산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NCS로 개발·분류 추진

2015.06.22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대비 100일간 특별지원 성과

관세청은 한-중 FTA의 가서명(2월 25일) 직후 지난 3월 2일에서 6월 10일까지(100일간) 실시한 '한-중 FTA 발효 대비 1단계 100일 특별지원'을 완료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1단계 특별지원은 기업들이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①활용지원 체계 구축', '②활용인프라 확대', '③활용안내 홍보 강화' 등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 기간 중 전국 30개 세관에 '차이나센터'를 열어 총 12,940여 개의 대(對)중국 수출기업에게 FTA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원산지관리에서부터 활용시스템 구축, 증명서 발급절차 및 중국 통관정보 등 FTA 활용 준비를 위해 종합적인 상담과 안내를 해주었다.

지역공단에 위치한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YES FTA 센터(상담버스)'를 마련하고, 전국의 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FTA 안내를 받지 못하던 총 362개 중소기업들에게도 맞춤형 상담을 해 주었다.

또한 FTA 활용 준비, 원산지증명, 상대국 검증 대비를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보급하고, 원산지증명서(C/O) 일괄(원스톱) 발급시스템 및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에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중소기업이 한-중 FTA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한-중 FTA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의 관심을 높이고자 'CEO 리포트' 발간, '신규 FTA 비즈니스 모델' 제공, '기업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관세청은 1단계 특별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작성해 상담에 활용하고, 한-중 FTA 발효시점에 맞춰 '2단계 100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5.06.25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상반기 중소기업 FTA활용률 상승과 비용 36억원 절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지난 1월 관세청에서 신설된 기업지원 전담조직)의 상반기 성과를 분석한 결과, FTA 종합 컨설팅 제공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59.1%(15.1월)에서 63.0%(15.5월)로 증가하였다. 또한, 통관애로 해소를 통해 약 36억 원의 중소기업 비용을 절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 ①중소기업 FTA·AEO 원스톱 컨설팅 지원, ②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③통관애로 맞춤형 해소 지원, ④한-중 FTA 100% 활용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추진하였다.

센터 신설 직후, 업무계획 수립, 직원 역량강화 교육, 이동 상담버스 배치 등 기업지원 업무 기반을 신속히 정비하였고, 조직 신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5월말 기준) 현장 방문컨설팅(61건 → 344건), 통관애로 해소(51건 → 63건), 일자리 창출(3명 → 53명) 등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한-중 FTA 특별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총 12,943개 대(對)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한-중 FTA 상담을 지원하였다.

특히, 세관 직원 및 공익관세사가 팀을 이루어 이동버스를 타고 영세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FTA+AEO+해외통관애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통관애로 해소와 관련, 지원센터 ↔ 관세청 ↔ 해외 관세관 ↔ 외국세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FTA 협정관세 배제 위기를 해결하는 등 63개 업체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며 약 36억 원의 기업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과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역량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5.06.29

전국 특성화고·대학교 교원 대상 FTA 원산지 교육과정 개설

전국 특성화고 및 대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 2차에 걸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충남 천안소재)에서 'FTA 원산지관리 전문교육 연수과정'을 개설한다.

관세청은 앞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원산지관리" 분야를 신설했고, 무역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이 정규 교과과정에서 FTA 원산지관리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수는 교과과정 개편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FTA 원산지 관리 실무를 가르칠 수 있는 인적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고, 부산 교육청의 협조로 FTA원산지관리 전문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주관한다.

교과과정은 FTA개요부터 FTA법령, 원산지결정기준과 수출입통관실무 및 품목분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까지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실무중심으로 1일 7시간씩 진행되며 세관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원산지아카데미 홈페이지(www.fta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FTA전문인력 양성과 취업과 고용을 연계하여 일자리연결(잡매칭)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고 등을 중심으로 FTA 취업교육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오는 9월 4일(금)에는 경제단체, 정부, 언론기관 간 협력사업인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도 참가하여 FTA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도 「FTA 원산지 전문교육 지도교사 연수」 참가 안내

구분	내용	
대상	특성화고교 FTA/무역/국제통상 등 경영/사무/제조업분야 교육 교사 * 전국 중등교사 중 연수지명번호를 부여 받은 교원 우선권 부여	
교육내용	FTA교육	FTA 협정 및 원산지결정기준, 국내이행법, FTA 관련 수출입통관 및 품목분류 등 FTA 활용실무 중심 교육
	전산실습	원산지관리시스템 이해 및 실습(FTA-PASS 활용)
	현장학습	평택세관 수출입통관현장 등 견학
교육일정	각 차수당 1일 7시간 (10:00~18:00), 35시간 교육(4박5일, 합숙)	
교육장소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시 병점 소재)	
교육문의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인재개발팀 • 전화 : 031-600-0743~4 • 이메일 : kioifita@origin.or.kr	

02 우리나라 FTA 동향*

2015.04.30

FTA 세부 추진 전략을 담은 '新FTA 추진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전략적 FTA 추진”의 일환으로, 향후 세부적 FTA 정책 방향을 담은 “新FTA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新FTA 추진 전략”은 2013년 6월 발표한 “新통상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이에 따라 국가별·지역별 FTA 세부 추진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新FTA 추진 전략”은 중국, 일본 등 인접국들도 최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어, 기체결 FTA를 통해 구축된 FTA 플랫폼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나온 후속조치이다.

新FTA 추진 전략은 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Mega)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 ② 기체결 FTA의 개선, ③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 등 3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TPP·RCEP 등 메가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은 기구축된 FTA 플랫폼을 토대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상황 및 우리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하여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新FTA 추진 전략 세부내용

구분	내용
① TPP·RCEP 등 메가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EU·中 등 3대 거대경제권과의 양자 FTA 체결 이후, TPP·RCEP 등 메가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메가 FT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임• 기구축된 FTA 플랫폼을 토대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상황 및 우리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할 계획임
② 기체결 FTA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인도 등 활용도가 낮은 FTA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여타 기체결 FTA의 경우도 FTA 체결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속 모색할 계획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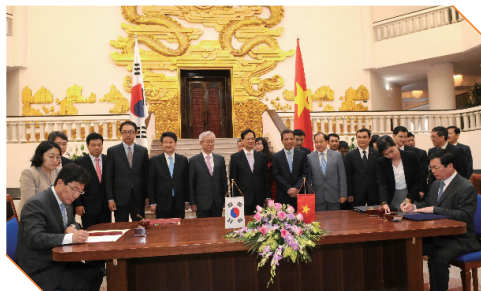
구분	내용
③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FTA 대상국은 경제적 지표(GDP·실행관세율·인구 등), 상대국의 통상정책, 국제 분업구조에서의 위치 및 국제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이에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신규 FTA 대상국은 권역별로 다음과 같음

2015.05.05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지난 5월 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FTA에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인 한-베트남 FTA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의 중요한 성과다. 이번 협정은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서 한-아세안 FTA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했다.



◀ 사진 : www.fta.go.kr 제공

한-베트남 FTA는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 베트남의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는 상생형·친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의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직물 뿐 아니라,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트남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윤상직 장관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2015.05.13

한중일 FTA 제7차 수석대표협상 개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수석대표협상이 지난 5월 12일(화)부터 13일까지(수)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측은 왕 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을, 일본측은 나가미네 야수마사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하였다.



◀ 사진 : www.fta.go.kr 제공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현재 7차례 실무협상까지 진행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SPS, 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5월 12일 열린 '한중일 FTA 제 7차 수석대표회의'에서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저는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한중일 FTA의 진전이 RCEP 협상 추진의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한중일 3국은 협상 진전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2015.05.14

기업 편의 증진을 위한 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 논의

한-아세안 FTA 제12차 이행위원회가 관세·경제협력·투자 분야 등 여타 산하 이행기구와 함께 '15년 5월 12에서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발효 후 열 두번째 정기 위원회로서 양측은 한-아세안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한다. 이행위원회에서는 아세안 6개국이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6년 1월 1일까지 민감품목의 관세를 0~5%로 차질없이 인하하도록 당부하는 등 주요 이행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무역원활화(통관) 규정과 상호주의 제도 개선 등이 연내 상품협정 개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아세안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5.06.01

올해 통상정책 중심은 한-중FTA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 되면서 한중 수교 23년,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15년 6월 1일(월)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중국 상무부 부장은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중 FTA는 '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15년 2월 25일 가서명(initialing)을 거쳐 정식서명을 마무리하고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되었다.



◀ 사진 : www.fta.go.kr 제공

양국 통상장관은 서명식 계기에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과 한-중 산업단지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중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대(對) 한국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며,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이러한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긴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5.06.04

정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6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각 FTA협정별 경제 효과 분석 결과

구분	실질GDP (발효 후 10년)	소비자후생 (발효 후 10년)	고용 (발효 후 10년)	세수 (발효 후 10년 평균)
한-중 FTA	0.96%	146억불	53.8천명	0.27조원
한-베 FTA	0.01%	1.46억불	671명	△267.4억원
한-뉴 FTA	0.03%	2.96억불	952명	△215.9억원

또한 정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중국/한-베트남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2015.06.11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작업반

지난 6월 10일에서 11일 양일간 개최된 서울 무역협회에서 한국-유럽연합(이하 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정에 따른 분야별* 이행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가 있었다.

*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화학물질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국-EU FTA 이행 작업반에서 양측은 분야별로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정책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째날(6월 10일) 개최된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對)EU 시장 진출 접근성 제고를 위해 EU의 관련 정책 및 관행 등에 대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을 EU측에 제기하고 해소를 요청했다.

둘째날(6월 11일) 개최된 화학물질 작업반에서는 최근 시행된 우리나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5.1.1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EU의 화학물질 관련 제도 이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같은날 개최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는 원료의약품의 EU 수출시 필요한 서면확인서 제출 면제(화이트 리스트 국가 등재 신청) 관련 EU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산 의료기기의 EU 진출시 필요한 인증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의약품·의료기기 적합인정표시(GMP)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하여 EU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015.06.19

중미 6개국과 상생형 FTA 협상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지난 6월 18일 오후 미국 휴스턴에서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중미¹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무역규모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우리나라 200여개 기업이 현지에 투자와 진출해 15만명 가량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교역과 투자가 정체 상태를 보여 교역 품목과 투자 분야를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미지역의 다양한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할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1) 중미는 SIECA(중미경제통합기구)에 소속된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의미하고, 이들 6개국은 경제적 공동체인 SIECA(중미경제통합기구)를 결성하는 등 경제적 통합 수준이 높음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윤장관과 중미 통상장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중미간의 교역과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이 그간 공적개발 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전개한 중미지역 상수도, 전력망, 태양광 등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을 기반으로 상생형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했다.

비록 현재의 한국과 중미 6개국간 교역규모는 50억불 수준('14년)으로 크지 않지만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인 반면, 중미의 주요 수출품목은 커피, 열대과일, 금속 등으로 양측은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상생(win-win)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미 6개국은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 칠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미주와 유럽 진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중미 지역의 개발협력 사업들을 통해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잠재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들의 중미지역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사진 : www.fta.go.kr 제공

2015.06.25

한국의 TPP 가입, 무역업계 60% 이상이 '찬성'

지난 6월 24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의 TPA(무역촉진권한) 승인으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및 의견 수렴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의 TPP 가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2.2%가 대체로 가입에 찬성하며, 특히 농수산물, 전자전기, 생활용품 분야 중소기업의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PP를 통한 일본 시장에 대한 개방은 일부 민감 분야에서 국내 시장 잠식의 우려가 제기되어 우리의 중장기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무역업계가 바라보는 TPP'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업계의 TPP 참여에 대한 인지도와 의견 및 향후 TPP 가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까지 TPP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기업이 42.7%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TPP 참여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62.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TPP 회원국 중 10개국과 이미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FTA 미체결국이자 우리와 무역비중이 큰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무역업계는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12개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 확대와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단일화되어 스파게티볼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는 일본의 국내 시장 잠식과 농축수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TPP 가입에 따른 손익은 '이익이 크거나 이익과 손해가 대등하다'는 답변이 85.6%를 차지했다.

03 해외 FTA 관련 동향*

2015.05.29

EEU, 베트남과 FTA 체결

베트남과의 FTA는 올해 초 공식 출범한 EEU가 역외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정은 서명국 의회의 비준 절차가 끝나고 2개월이 경과한 뒤 발효한다.

협정에 따라 서명국 간 교역 대상 품목의 88%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59%는 협정 발효 즉시, 29%는 5~10년 내에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날 서비스 시장 진출 간소화에도 합의했으며 EEU의 다른 국가들도 조만간 러시아의 선례를 따를 계획이다.

유럽연합(EU)에 맞서 러시아 주도로 창설된 옛소련권 경제공동체인 E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이 지난해 5월 창설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 본격 출범했다. 뒤이어 지난해 10월 가입 협정에 서명한 아르메니아가 올해 초 EEU에 가세했고 지난해 12월 협정을 체결한 키르기스스탄이 가입 절차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2015.06.17

중국-호주 FTA 정식 체결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과 앤드루 롱 호주 통상장관이 지난 6월 17일 호주 캔버라에서 각기 양국 정부를 대표해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으며, 이는 '05년 4월 협상 개시 이후 10년 만의 결실이다.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에는 화물, 서비스, 투자 등 10여개 영역이 포괄되어 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호주는 주력 수출품인 농·축산물, 와인, 유제품 등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연간 19조원의 수출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화물 분야에서 쌍방이 각자 수출무역액의 85.4%를 차지하는 제품은 협정 발효시 즉시 무관세를 실현하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전자 제품에 적용되는 5%의 관세가 사라지는 등 경제적 이익과 함께 한국과 아세안(ASEAN)을 넘어 태평양을 향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또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자료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한편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지난해 두 나라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 규모는 1천600억 호주달러(138조원)를 넘어선 바 있다. 중국-호주 FTA는 연내 발효될 예정이다.

2015.06.18

인도,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추진 합의

러시아에서 인도 통상장관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의 통상장관이 자유무역 협정(FTA) 추진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FTA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FTA 협상 개시 전까지 7개월간의 공동연구 진행예정이며, EEC 통상장관은 이란과도 FTA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EU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옛 소련권 중심 경제공동체로 유럽연합(EU)에 맞서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재 회원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 4개국이고 키르기스스탄이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2015.06.25

TPP 협상 동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불가결한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에 서명했다. '15년 6월 24일 TPA*가 미 상원을 통과한 후 6월 25일 TAA**법안도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29일 최종으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의회가 통상 교섭 권한을 대통령에 일임하는 TPA 법안이 성립돼 TPP 교섭은 타결 쪽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TPP 참여국들은 연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중이며 상품 협상의 핵심은 미·일의 양자 협상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TPP 협상 마무리 후, 12개국 각료 회의에서 미국과 다른 참가국 간 가교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의 TPP 정부대책본부는 지난 6월 30일, 자민당 회의에서 TPP의 협정문 21개 분야 중 지적 재산 및 투자 등 4개 분야가 계속해서 과제로 남아 각료급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rade Promotion Authority(무역촉진권한) :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정협상 권리를 부여하며 의회는 가·부결 권리만 부여되고 수정권한 없음

**Trade Assistance Administration(무역조정지원제도) : TPP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미국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령

2015.06.25

「일본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출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P, 원장 : 이일형)이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에서 일본 기업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한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기체결한 FTA와 현재 협상 진행 중인 TPP 및 EU와의 FTA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의 TPP 협상 및 제반 FTA 추진에 유용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대해 수입규제, 통관 등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EU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라면서 “이는 향후 TPP 참여시, 또는 일본과의 여타 협상에서 우리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이라고 언급했다.

2015.06.29

중국의 FTA 체결 및 추진 동향

중국은 현재까지 13개 FTA를 체결·10개 FTA가 협상 또는 추진 중인 가운데, 체결한 FTA 중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하였다.

'15년 6월 17일 정식 서명한 호주와의 FTA를 포함하여 아세안 10개국·파키스탄·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페루·홍콩·마카오·코스타리카·아이슬란드·스위스·한국 등과 13개 FTA(총 22개 국가)이다.

한편, GCC(걸프협력회의), 노르웨이, 한중일, RCEP, 스리랑카 등 5개 FTA를 협상중이며, 인도, 콜롬비아, 몰디브, 그루지아, 몰도바 등 5개 FTA도 추가로 추진 중이다.

한-EU FTA 발효 5년을 맞이하여

FTA 활용 성과와 전망

권민경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01

한-EU FTA 교역동향

* 분석범위 및 정의

한-EU FTA 발효 5주년을 맞이하여 FTA 이행 초기단계의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향후 보다 활발한 EU와의 FTA 교역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현황검토의 분석시기는 발효시기에 맞추어 이행연차별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1년차(2011.7~2012.6), 2년차(2012.7~2013.6), 3년차(2013.7~2014.6), 4년차(2014.7~2015.6)로 분석시기가 구분된다.

분석통계와 관련하여 '총수출입'은 해당기간의 모든 수출입실적을 의미하고, 'FTA 대상 수출입'은 FTA 특혜대상인 품목의 실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활용률'은 FTA 대상품목이 실질적으로 FTA를 활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모든 데이터는 관세청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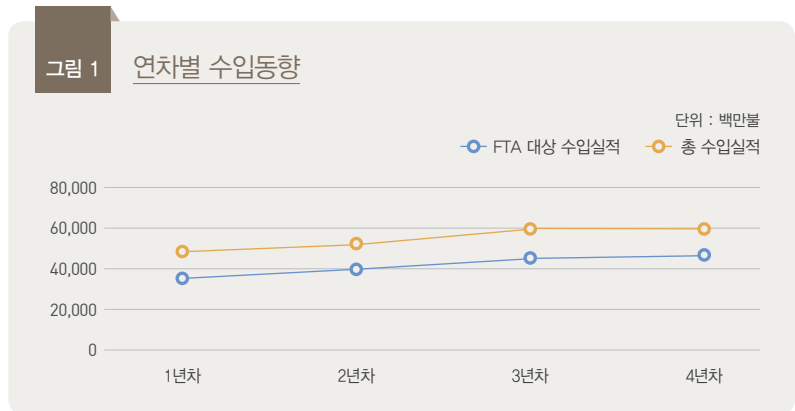
1 수입

1) 연차별 수입 변화

단위 : 백만불

구분	FTA 대상수입	총수입
1년차	34,439	49,174
2년차	39,167	52,916
3년차	44,901	59,699
4년차	45,526	60,076

그림 1 연차별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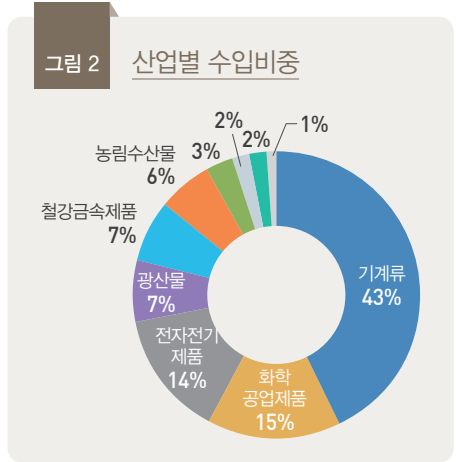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한-EU FTA 발효 이후 매년 EU로부터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한-EU FTA 이행 1년차에 약 491억 달러에서 4년차에는 600억 달러로 18% 증가하였다.

FTA 대상품목의 수입도 344억 달러(1년차)에서 455억 달러로 연차별로 지속 상승하였고 증가율은 25%에 달한다. 총수입의 증가율 보다 FTA 대상품목의 수입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FTA로 인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산업별 수입동향

이행연차별로 10대 산업의 수입변화는 다음과 같다. EU로부터 수입이 가장 많이 되는 산업은 기계류로 4년차 총수입의 4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화학공업제품이 15%, 전자전기 제품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FTA 이행연차가 거듭될수록 몇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포착된다. 우선 대부분의 산업이 이행 1년차 이후 지속적으로 총수입과 FTA 대상 수입 실적이 증가하였으나 광산물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광산물은 이행 2년~3년차에 급격히 수입이 증가하였다가 이행 4년차에는 다시 급감하였다.



그리고 총수입실적과 FTA 대상품목의 수입실적을 비교하였을 때 생활용품, 석유류,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화학공업제품 등은 실적상호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산업군의 대부분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양허 품목들이 수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전자전기 제품과 철강금속제품은 연차별 총수입 실적과 FTA 대상 수입실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수입품목에 FTA 양허제외 품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 표1 산업별 연차별 수입변화

단위 : 백만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FTA 대상수입	총수입	FTA 대상수입	총수입	FTA 대상수입	총수입	FTA 대상수입	총수입
광산물	2,778	3,842	3,933	7,068	5,195	7,180	2,836	4,463
기계류	14,018	18,911	15,534	18,656	18,381	23,336	19,936	25,667
농림수산물	1,832	2,812	2,175	2,632	2,629	3,155	3,121	3,475
생활용품	1,060	1,211	1,154	1,307	1,255	1,412	1,396	1,596
석유류	1,236	1,320	1,236	1,272	1,307	1,341	1,425	1,441
잡제품	334	856	375	721	485	808	519	842
전자전기제품	4,188	7,424	4,933	8,396	4,952	8,777	5,258	8,557
철강금속제품	1,525	3,735	1,600	3,454	2,006	3,743	2,115	3,86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789	804	898	907	1,004	1,015	982	1,023
화학공업제품	6,677	8,258	7,330	8,503	7,685	8,930	7,938	9,151

3) 국가별 수입동향

한-EU FTA 발효 이후 4년동안 국가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수입 최상위 10개국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독일로 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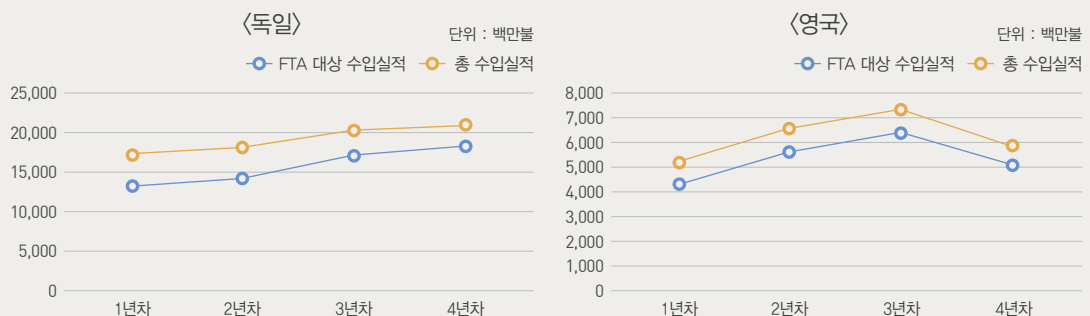
■ 표2 對EU 수입상위 10개국의 연차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FTA 대상수입	총수입	FTA 대상수입	총수입	FTA 대상수입	총수입	FTA 대상수입	총수입
1 독일	13,851	17,341	14,758	18,241	17,057	20,431	18,032	21,185
2 영국	4,338	5,360	5,764	6,663	6,299	7,281	5,070	5,916
3 프랑스	3,463	5,651	3,953	5,531	4,101	6,307	4,369	7,144
4 이탈리아	3,858	4,622	4,225	5,141	4,964	5,804	5,138	6,106
5 네덜란드	1,242	4,433	1,523	3,424	1,808	4,595	1,765	4,558
6 스페인	1,013	1,217	1,117	1,407	1,875	2,262	2,168	2,689
7 스웨덴	1,076	1,599	1,203	1,515	1,146	1,838	1,264	1,624
8 벨기에	1,019	1,439	1,151	1,510	1,282	1,563	1,443	1,767
9 오스트리아	825	1,303	992	1,300	1,021	1,369	1,007	1,283
10 핀란드	613	979	938	1,221	991	1,294	895	1,295
총합계	34,439	49,174	39,167	52,916	44,901	59,699	45,526	60,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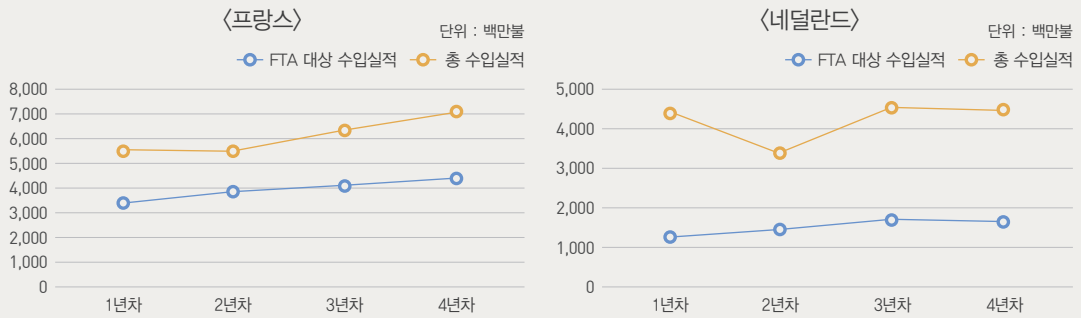
국가별 수입의 특징으로는 독일과 이탈리아로 부터의 수입은 매년 지속적으로 고른 상승을 보인 반면 영국은 2년차와 3년차 수입이 증가하였다가 4년차에 다시 감소양상을 보였다.

그림 3 對EU 연차별 수입동향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총수입 규모와 FTA 대상 수입 규모간의 차이가 다른 국가들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발효 2년차에 총수입이 감소하였다가 종래의 수입규모로 회복되었는데, FTA 대상품목의 수입은 감소 없이 매년 소폭증가하고 있다.

그림 4 對EU 연차별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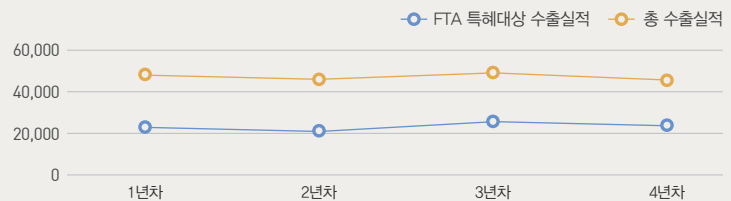
2 수출

1) 연차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불

구분	FTA 대상수출	총수출
1년차	21,570	49,666
2년차	21,020	47,245
3년차	23,952	50,320
4년차	23,026	46,387

그림 5 연차별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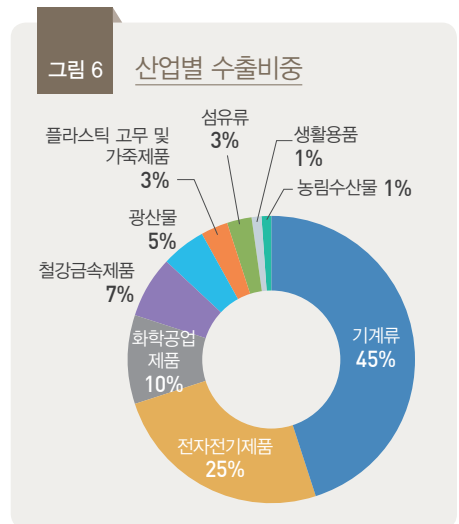
FTA 발효이후 우리나라와 EU와의 수출교역은 수입이 지속증가 것에 반해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행 1년차에 497억 달러이던 수출은 4년차에 464억 달러로 7% 감소하였다.

2012년 이후 EU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나라의 對 EU 수출도 탄력을 잃고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FTA대상 품목의 수출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행1년차 216억 달러에서 4년차에는 230억 달러로 FTA 대상품목의 수출은 14억 달러 증가하였다.

2) 산업별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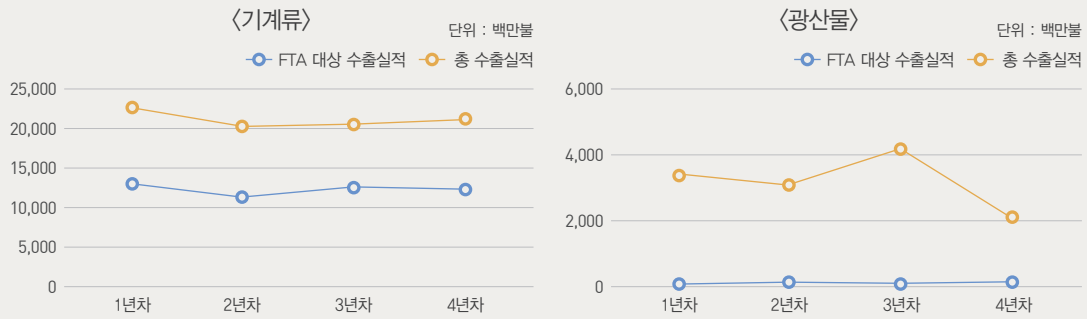
EU로 수출하는 품목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수입과 마찬가지로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이 60%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광산물과 농림수산물의 수입 비중이 6~7% 차지하지만 수출의 경우 광산물 5%, 농림수산물 1%로 낮은 비중을 보인다.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 EU로 수출되는 산업별 동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출비중이 가장 큰 기계류는 총수출실적과 FTA 대상 수출실적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년차 대비 2년차에 수출감소가 있었고 그 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총수출의 감소폭 보다는 FTA 대상품목의 수출감소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FTA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광산물의 경우 연차별로 수출변화의 등락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년차와 4년차에 전년대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FTA 대상품목의 수출은 총수출 실적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광산물이 양허제외품목 이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림 7 對EU 연차별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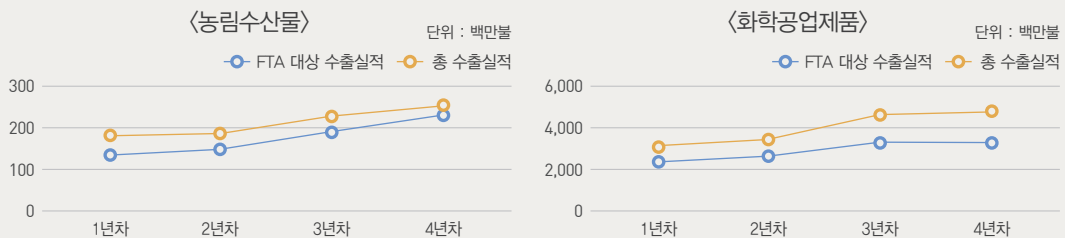


한편 농림수산물의 수출변화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산업이 수출감소 흐름을 보이는 반면 농림수산물만 유일하게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행 1년차 총수출실적이 196억달러에서 4년차에는 266억달러로(4년차)로 42% 증가하여 농림수산물의 수출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화학공업제품도 농림수산물과 마찬가지로 이행연차를 거듭할 수록 EU 수출이 증가하는 산업으로 나타난다. 화학공업제품은 EU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향후에도 보다 적극적인 FTA지원을 통해 對 EU 수출 성장을 견인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 비중 2위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총수출실적과 FTA대상 품목의 수출실적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자전기제품 산업에 속한 품목들이 IT 협정에 따라 무관세 대상품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FTA 혜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對EU 연차별 수출동향



■ 표3 산업별 연차별 수출변화

단위 : 백만불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FTA 대상수출	총수출	FTA 대상수출	총수출	FTA 대상수출	총수출	FTA 대상수출	총수출
광산물	26	3,637	31	3,153	28	4,121	35	2,177
기계류	13,290	23,310	12,031	20,529	13,195	20,817	12,649	21,087
농림수산물	131	196	162	198	198	225	225	266
생활용품	255	322	372	432	318	379	267	354
섬유류	845	1,405	834	1,389	936	1,537	848	1,381
잡제품	119	167	104	148	104	171	92	154
전자전기제품	2,390	13,005	2,663	13,536	3,195	13,715	3,117	11,442
철강금속제품	610	2,781	597	2,782	679	2,946	700	3,185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590	1,705	1,445	1,573	1,686	1,829	1,474	1,614
화학공업제품	2,315	3,134	2,781	3,505	3,613	4,577	3,619	4,721

3) 국가별 수출동향

FTA 발효이후 총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상위10개국을 선별하였다.

수출1위국인 독일은 이행 1년차 이후 수출이 매년감소하고 있다. 다만 총수출 실적의 감소폭이 크게 반하여 FTA 대상수출실적은 소폭 상승추세를 보이고 수출평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출규모 2위인 영국은 10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수출성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행 1년차 대비 4년차에 30% 상승하였다.

총수출대비 FTA 대상수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군은 체코, 스페인, 슬로베니아로 수출품목의 다수가 FTA 활용이 가능한 국가들이다.

반면 총수출대비 FTA 대상수출의 비중이 낮은 국가군은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으로 수출품목에서 FTA 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출품목이 이미 무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인 경우와, 양허제외 또는 단계적 양허철폐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4 對EU 수출상위 10개국의 연차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불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FTA 대상수출	총수출	FTA 대상수출	총수출	FTA 대상수출	총수출	FTA 대상수출	총수출
1 독일	3,469	8,081	4,157	7,238	4,462	7,693	3,836	6,105
2 영국	2,230	3,882	2,354	5,149	2,885	5,149	3,004	5,509
3 슬로바키아	2,008	4,186	1,853	4,494	2,194	4,447	2,023	3,766
4 이탈리아	1,679	3,358	1,607	3,063	1,933	3,176	1,855	3,574
5 프랑스	1,578	2,853	1,543	3,095	1,570	3,012	1,417	2,307
6 체코공화국	1,574	2,001	1,214	1,632	1,491	1,713	1,595	1,901
7 네덜란드	1,463	4,650	1,468	4,695	1,499	5,915	1,418	4,202
8 폴란드	1,202	3,909	1,110	3,627	1,359	3,628	1,302	3,203
9 스페인	1,147	1,804	940	1,467	1,190	1,802	1,660	2,196
10 슬로베니아	1,080	1,461	999	1,383	1,097	1,556	986	1,572

02

한-EU FTA 활용 동향 분석

이 장에서는 한-EU FTA 발효이후 연차별로 FTA가 활용된 현황들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수입과 수출을 구분하여 10대산업별 활용률을 확인하고, 수출입 상위 국가들의 연차별 활용 현황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MPI 3단위 기준으로 개별 품목들의 FTA 활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우선 교역상위 30대 품목을 선별하여 이들 품목의 3년차·4년차 FTA 활용 현황을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3~4년차 총수입실적 또는 총수출실적의 합계가 100만달러 이상인 품목들 중에서 가장최근(4년차)의 FTA 활용률이 80%이상인 FTA GOOD 품목의 현황과 FTA 활용률이 50% 미만인 FTA BAD 품목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수입

1) 산업별 FTA 활용 현황

FTA 발효이후 현재까지 수입시 산업별 한-EU FTA 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차별로 활용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농림수산물로 나타난다. 농림수산물은 4년

평균 81%의 활용률을 보이고 연차별로 72% → 82% → 84% → 85%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활용률이 가장 낮은 산업은 잡제품으로 4년 평균 48%의 활용률로 50%미만으로 나타났다.

광산물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연차별 활용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차별로 ±5%내외의 활용률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광산물의 경우 연차별로 65% → 87% → 72% → 49%로 이행2년차에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인후 최근 급감하여 49%로 떨어졌다.

■ 표5 산업별 FTA 수입활용 현황

단위 : %

구 분	1년차 활용률	2년차 활용률	3년차 활용률	4년차 활용률
광산물	65	87	72	49
기계류	63	68	70	71
농림수산물	72	82	84	85
생활용품	48	55	62	62
섬유류	46	55	57	59
잡제품	45	52	49	48
전자전기제품	46	54	57	57
철강금속제품	54	54	50	49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70	76	75	78
화학공업제품	64	71	74	74

2) 수입상위 15개국 활용 현황

우리나라가 EU회원국들 중에서 수입을 가장많이 하는 상위 15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수입 1,2위인 독일과 영국은 4년 평균 70%이상의 활용률을 보인다. 독일의 경우 1년차 64%에서 4년차 78%로 매년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1년차 65%에서 2,3년차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최근 4년차에는 59%로 가장 낮은 활용률을 나타냈다.

연차별 활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로 수입규모 9위와 10위에 해당한다. 오스트리아는 4년 평균 80%, 루마니아는 81%의 높은 활용률을 보인다.

연차별 활용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 덴마크, 이탈리아로 각각 수입규모 13위, 14위, 3위이다. 이들 국가의 4년평균 활용률은 각각 43%, 54%, 54%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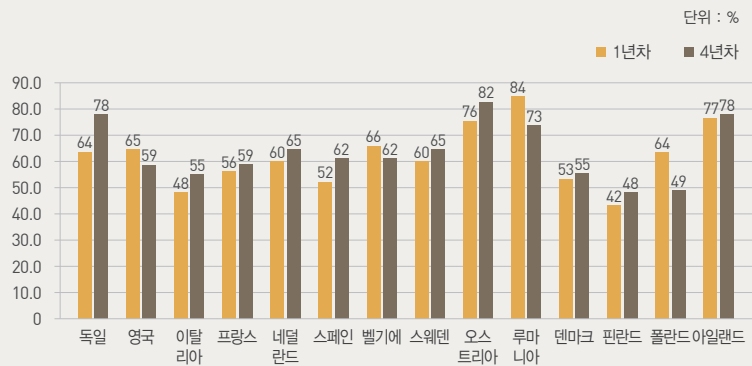
■ 표6 국가별 FTA 수입활용 현황

단위 : %

구 분	1년차 활용률	2년차 활용률	3년차 활용률	4년차 활용률
독일	64	73	76	78
영국	65	79	76	59
이탈리아	48	56	57	55
프랑스	56	57	58	59
네덜란드	60	63	61	65
스페인	52	64	56	62
벨기에	66	72	69	62
스웨덴	60	73	69	65
오스트리아	76	84	83	82
루마니아	84	86	79	73
덴마크	53	61	48	55
핀란드	42	34	47	48
폴란드	64	73	67	49
아일랜드	77	72	73	78

수입상위 15국의 1년차 4년차 활용률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1년차에서 4년차 활용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폴란드, 루마니아, 영국, 벨기에는 4년차 활용률이 1년차보다도 감소하였다. 게다가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각각 15%와 11%로 가장 감소폭이 큰 국가로 나타난다.

그림 9 수입상위 15개국 활용현황



3) 교역 상위 30대 품목의 활용 현황

최근 2년간 총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수입실적 상위 30대 품목(MTI 3단위기준)의 FTA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해보도록 한다.

수입 상위 30대 품목에는 수입비중 1위를 차지하는 기계류산업에 해당하는 품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U로부터 수입되는 1위 품목은 자동차로 3년차, 4년차 모두 100%에 육박하는 활용률을 보인다. 따라서 EU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는 모두 FTA 관세특혜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수입 2위 품목은 원동기 및 펌프로 수입 1위인 자동차가 100%에 육박하는 활용률을 보이는 것에 반하여 평균 활용률이 55%로 수입규모 대비 활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수입 3위품목인 기계요소 역시 수입활용률이 평균 36%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 표7 30대 수입품목의 FTA 활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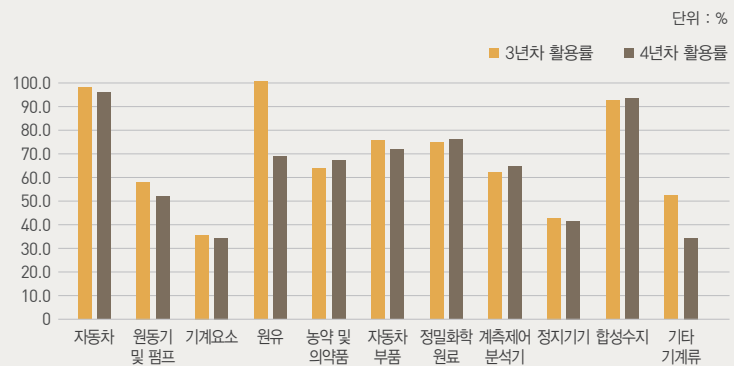
구분	품목(mti 3)	3년차 활용률	4년차 활용률	증감률
1	자동차	99.5	99.4	-0.1
2	원동기 및 펌프	59.3	51.6	-15.0
3	기계요소	36.8	36.4	-1.2
4	원유	100.0	69.9	-43.0
5	농약 및 의약품	64.6	67.3	4.1
6	자동차부품	77.0	73.8	-4.3
7	정밀화학원료	75.1	76.7	2.1
8	계측제어분석기	63.0	65.4	3.7
9	정지기기	43.4	41.0	-5.7
10	합성수지	90.5	90.7	0.2
11	기타기계류	51.7	35.2	-46.9
1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6.4	11.1	42.9
13	주단조품	17.8	13.7	-29.8
14	기호식품	82.0	80.4	-1.9
15	가방	55.8	54.8	-1.9
16	금은 및 백금	59.4	64.6	8.1
17	섬유 및 화학기계	73.0	73.2	0.2
18	전자응용기기	62.3	62.6	0.5
19	육류	99.8	99.8	0.0
20	기타석유 화학제품	51.1	48.4	-5.7
21	의류	58.9	58.7	-0.3

구분	품목(mti 3)	3년차 활용률	4년차 활용률	증감률
22	비누치약 및 화장품	62.1	61.9	-0.3
23	천연가스	0.0	0.0	40.9
24	기타정밀화학제품	78.9	82.2	4.1
25	기타산업기계	43.6	40.4	-8.1
26	회전기기	59.6	50.8	-17.4
27	석유제품	41.4	54.7	24.2
28	금속공작기계	87.4	84.7	-3.1
29	기타화학공업제품	73.1	73.4	0.4
30	축산가공품	83.9	86.7	3.3

수입상위 30대 품목 중에서 활용률이 평균 75%이상으로 높은수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원유,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기초식품, 육류, 축산가공품이다. 화학, 기계, 농림수산업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행 3년차와 4년차를 비교하였을때 활용률의 편차가 가장심한 품목들은 대부분 4년차에 활용률이 급감한 품목으로 원유, 기타기계류, 주단조품이 차지하고 있다.

그림 10 수입 상위 10대 품목 FTA 활용현황



4) FTA 활용 GOOD & BAD 품목

한-EU FTA를 적용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품목들 중에서 FTA 활용실적이 좋은 품목(FTA GOOD)과 저조한 품목(FTA BAD)을 선별하였다. 활용이 극히 저조한 품목들의 향후 FTA 활용정책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품목선별을 위하여 개별품목(MTI 3단위)의 3년차 및 4년차 수출입실적을 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였다. 다만 품목의 총합계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들 중에서 GOOD & BAD 품목을 선별하였다.¹⁾

- (A) 그룹 : 총수출입 실적 10억 달러 이상
- (B) 그룹 : 총수출입 실적 5억 달러 이상 10억 달러 미만
- (C) 그룹 : 총수출입 실적 1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미만
- (D) 그룹 : 총수출입 실적 1000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미만
- (E) 그룹 : 총수출입 실적 1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

① FTA GOOD 품목

MTI 3단위 품목 중에서 총수출입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4년차 활용률이 80%이상으로 높은 품목은 29개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품목들은 3년차와 4년차의 활용률간의 편차가 크지 않다.

활용률이 95%이상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한-EU FTA를 적용받은 품목은 자동차, 육류, 모피, 합성고무, 수산가공품으로 나타난다.

3년차 대비 4년차에 활용률이 증가한 폭이 큰 품목은 니켈제품, 석유화학합성 원료,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 농기계, 기타 정밀화학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3년차 대비 4년차 활용률 감소폭이 큰 품목은 염료 및 안료, 수산가공품, 금속공장기계이다.

■ 표8 4년차 FTA GOOD 품목

단위 : %

구 분	품목(mti 3)	3년차 활용률	4년차 활용률	증감률	그룹
1	자동차	99.5	99.4	-0.1	(A)
2	합성수지	90.5	90.7	0.2	(A)
3	기호식품	82.0	80.4	-1.9	(A)
4	육류	99.8	99.8	0.0	(A)

1) 이 그룹은 후술하는 수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분	품목(mti 3)	3년차 활용률	4년차 활용률	증감률	그룹
5	기타정밀화학제품	78.9	82.2	4.1	(A)
6	금속공작기계	87.4	84.7	-3.1	(B)
7	축산가공품	83.9	86.7	3.3	(B)
8	목재류	82.8	81.0	-2.3	(B)
9	식물성물질	83.0	83.9	1.1	(B)
10	염료 및 안료	92.8	86.5	-7.3	(C)
11	압연기용접기 및 주조설비	67.3	80.3	16.2	(C)
12	제지인쇄기계	84.4	81.7	-3.3	(C)
13	타일 및 도자기제품	87.1	85.5	-1.9	(C)
14	유리제품	82.9	81.8	-1.4	(C)
15	니켈제품	69.0	85.3	19.1	(C)
16	표면활성제	81.5	80.8	-0.8	(C)
17	합성고무	97.2	96.7	-0.5	(C)
18	가죽	89.2	90.9	1.9	(C)
19	석유화학합성원료	90.0	96.1	6.4	(C)
20	기타요업제품	82.5	85.8	3.8	(C)
21	도료및잉크	85.4	85.6	0.3	(C)
22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	86.3	91.8	5.9	(C)
23	강판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91.7	95.1	3.5	(C)
24	수산가공품	98.3	94.8	-3.7	(C)
25	모피	95.9	96.5	0.6	(C)
26	농기계	89.3	94.1	5.1	(C)
27	모직물	79.9	81.5	2.0	(C)
28	인조섬유장섬유사	93.2	95.1	2.0	(C)
29	사진영화용재료	90.1	90.7	0.6	(C)

② FTA BAD 품목

MTI 3단위 품목 중에서 총수입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4년차 활용률이 50%미만으로 낮은 품목은 31개로 나타난다. 활용실적 BAD 대부분의 품목들은 GOOD 품목과는 반대로 3년차와 4년차의 활용률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활용률이 20%미만으로 한-EU FTA를 거의 적용받지 못하는 품목은 천연가스, 귀금속장식품, 기타 금속광물, 영상기기이다.

3년차 대비 4년차에 활용률이 증가한 품이 큰 품목은 연제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귀금속장식품, 레일 및 철구조물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3년차 대비 4년차 활용률 감소폭이 큰 품목은 기초유분, 철강재용기 및 체인, 철도차량부품, 기타기계류 등이다.

■ 표9 4년차 FTA BAD 품목

단위 : %

구분	품목(mti 3)	3년차 활용률	4년차 활용률	증감률	그룹
1	기계요소	36.8	36.4	-1.2	(A)
2	정지기기	43.4	41.0	-5.7	(A)
3	기타기계류	51.7	35.2	-46.9	(A)
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6.4	11.1	42.9	(A)
5	주단조품	17.8	13.7	-29.8	(A)
6	기타석유화학제품	51.1	48.4	-5.7	(A)
7	천연가스	0.0	0.0	40.9	(A)
8	기타산업기계	43.6	40.4	-8.1	(A)
9	기타섬유제품	38.6	41.3	6.5	(B)
10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56.5	45.0	-25.7	(B)
11	귀금속장식품	9.2	14.8	37.6	(C)
12	기타금속광물	0.6	1.3	55.8	(C)
13	철강재용기 및 체인	63.3	35.2	-79.7	(C)
14	철도차량 및 부품	70.1	45.2	-55.0	(C)
15	레일 및 철구조물	21.7	39.8	45.3	(C)
16	기초유분	70.0	4.6	-1407.8	(D)
17	어육및어란	20.8	18.4	-12.9	(D)
18	팅스텐몰리브덴 및 망간제품	56.3	49.1	-14.5	(D)
19	천연섬유사	41.9	44.7	6.2	(D)
20	영상기기	5.0	9.9	48.9	(D)
21	면직물	50.1	48.3	-3.7	(D)
22	어류	28.8	34.3	16.0	(D)
23	모류	36.7	32.0	-14.6	(D)
24	시계	50.1	35.4	-41.4	(D)
25	연제품	9.5	42.9	77.9	(D)
26	기타잡제품	42.8	47.0	8.9	(D)
27	주석제품	40.0	35.7	-12.0	(D)
28	보석	48.3	47.2	-2.3	(D)
29	기타공예품	42.3	32.0	-32.0	(E)
30	인형	39.2	32.4	-20.8	(E)
31	미술용구	44.6	40.1	-11.1	(E)

2 수출

1) 산업별 FTA 활용 현황

FTA 발효이후 현재까지 수출시 산업별 한-EU FTA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차별로 활용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과 기계류로 나타난다.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은 4년 평균 89.5%의 활용률을 보이고 연차별로 85% → 89% → 92% → 92%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활용률이 가장 낮은 산업은 농림수산물로 4년 평균 58.5%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산업군은 농림수산업과 전자전기제품으로 연차별로 활용률의 증가가 눈에 띈다. 농림수산물은 활용률이 산업군 중에서 가장 낮기는 하지만 연차별로 46% → 51% → 60% → 77%로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전자전기제품 역시 연차별로 70% → 76% → 79% → 81%로 증가하고 있다.

■ 표10 산업별 FTA 수출활용 현황

단위 : %

산업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광산물	78	88	76	78
기계류	86	90	90	89
농림수산물	46	51	60	77
생활용품	59	76	80	72
섬유류	79	86	88	88
잡제품	59	59	77	75
전자전기제품	70	76	79	81
철강금속제품	63	64	75	75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85	89	92	92
화학공업제품	78	77	76	80

2) 국가별 FTA 활용 현황

우리나라가 EU회원국들 중에서 수출을 가장많이 하는 상위 15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수출1,2위 국가는 독일과 영국으로 수입과 같다. 두 국가 모두 4년 평균 80%이상의 활용률을 보인다.

연차별 활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체코, 슬로베니아로 수출규모 3위, 6위, 10위, 12위에 해당한다. 덴마크, 벨기에, 그리스의 경우

1년차 대비 4년차의 활용률 증가폭이 큰 국가들이다. 국가순으로 각각 7%, 12%, 11%의 증감차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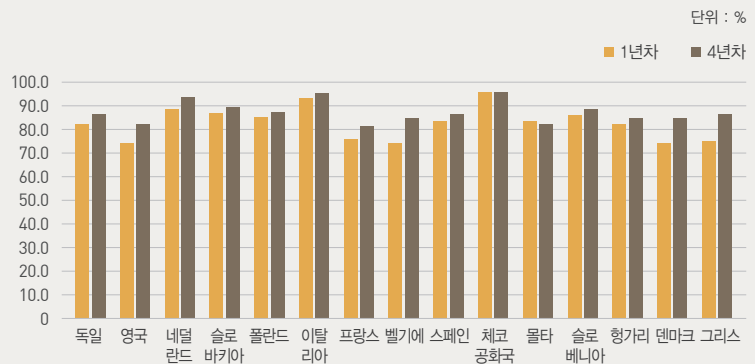
수입의 경우 전반적으로 활용률의 평균이 낮은 반면 수출의 경우 수입과 비교하였을때 활용률의 평균적 수준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표11 국가별 FTA 수출활용 현황

단위 : %

구분	국가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	독일	81	88	87	87
2	영국	73	83	82	81
3	네덜란드	89	90	94	92
4	슬로바키아	85	85	87	89
5	폴란드	85	88	88	86
6	이탈리아	92	96	95	93
7	프랑스	76	76	79	81
8	벨기에	75	83	85	83
9	스페인	83	84	85	88
10	체코공화국	96	89	91	96
11	몰타	84	86	82	82
12	슬로베니아	87	87	88	88
13	헝가리	81	76	76	83
14	덴마크	73	77	79	85
15	그리스	77	85	88	88

그림 11 국가별 FTA 수출활용 현황



3) 교역 상위 30대 품목의 활용 현황

최근 2년간 총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 상위 30대 품목(MTI 3단위기준)의 FTA 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출 상위 30대 품목에는 수출비중 1위를 차지하는 기계류산업에 해당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출 1위 품목역시 자동차로 3년차, 4년차 모두 100%에 달하는 활용률을 보인다.

수출 2위 품목은 자동차 부품으로 자동차와 동일하게 평균 93%의 높은수준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수출상위 30대 품목 중에서 활용률이 낮은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합성 원료, 향고기 부품, 광학기기 등으로 50%미만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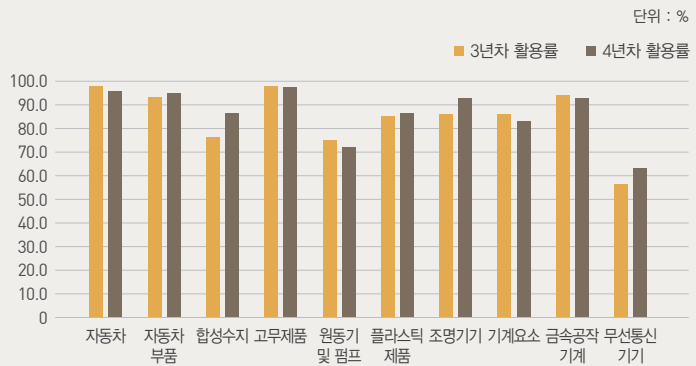
■ 표12 30대 수출품목의 FTA 활용

단위 : %

구 분	품목(mti 3)	3년차 활용률	4년차 활용률	증감률
1	자동차	99.6	99.4	-0.1
2	자동차부품	93.2	94.3	1.1
3	합성수지	78.8	88.5	11.0
4	고무제품	98.4	98.2	-0.2
5	원동기 및 펌프	75.8	72.1	-5.0
6	플라스틱 제품	85.1	85.3	0.1
7	조명기기	85.5	92.8	7.9
8	기계요소	83.3	81.1	-2.7
9	금속공작기계	92.5	91.9	-0.7
10	무선통신기기	56.5	62.5	9.5
11	정밀화학원료	82.0	85.6	4.2
12	건전지 및 축전지	96.1	96.8	0.8
13	금형	84.8	82.1	-3.3
14	인조섬유	99.3	97.5	-1.8
15	석유화학합성원료	40.6	49.2	17.4
16	정지기기	81.5	82.5	1.1
17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79.7	84.3	5.5
18	항공기 및 부품	3.6	2.6	-37.5
19	기타석유화학제품	71.0	75.7	6.2
20	냉장고	99.6	99.7	0.1
21	주단제품	80.7	83.4	3.4
22	기타화학공업제품	61.4	70.8	13.2
23	공구	87.9	88.2	0.3

구분	품목(mi 3)	3년차 활용률	4년차 활용률	증감률
24	음향기기	72.4	58.3	-24.2
25	기타기계류	62.1	74.0	16.1
26	섬유 및 화학기계	89.1	81.5	-9.3
27	가정용회전기기	92.3	92.9	0.6
28	계측제어분석기	80.4	86.6	7.1
29	회전기기	85.0	77.3	-9.9
30	광학기기	63.5	52.1	-21.9

그림 12 수출상위 10대 품목 FTA 활용현황



4) FTA 활용 GOOD & BAD 품목

① FTA GOOD 품목

MTI 3단위 품목 중에서 총수출실적을 기준으로 4년차 활용률이 80%이상으로 높은 품목을 30개를 선별하였다. 대부분의 품목들은 3년차와 4년차의 활용률 간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활용률이 95%이상으로 최상위인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고무제품, 냉장고, 기타정밀 화학제품등으로 나타난다.

3년차 대비 4년차에 활용률이 증가한 폭이 큰 품목은 기호식품, 압연기용접기 및 구조설비로 나타났다. 반대로 3년차 대비 4년차 활용률 감소폭이 큰 품목은 섬유 및 화학기계이다.

■ 표13 4년차 FTA GOOD 품목

단위 : %

구분	품목(mti 3)	3년차 활용률	4년차 활용률	증감률	그룹
1	자동차	99.6	99.4	-0.1	A
2	자동차부품	93.2	94.3	1.1	A
3	합성수지	78.8	88.5	11.0	A
4	고무제품	98.4	98.2	-0.2	A
5	플라스틱 제품	85.1	85.3	0.1	A
6	조명기기	85.5	92.8	7.9	A
7	기계요소	83.3	81.1	-2.7	A
8	금속공작기계	92.5	91.9	-0.7	B
9	정밀화학원료	82.0	85.6	4.2	B
10	건전지 및 축전지	96.1	96.8	0.8	B
11	금형	84.8	82.1	-3.3	B
12	인조섬유	99.3	97.5	-1.8	B
13	정지기기	81.5	82.5	1.1	B
14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79.7	84.3	5.5	B
15	냉장고	99.6	99.7	0.1	B
16	주단조품	80.7	83.4	3.4	C
17	공구	87.9	88.2	0.3	C
18	섬유 및 화학기계	89.1	81.5	-9.3	C
19	가정용회전기기	92.3	92.9	0.6	C
20	계측제어분석기	80.4	86.6	7.1	C
21	기타정밀화학제품	96.3	98.3	2.0	C
22	인조섬유장섬유사	96.5	95.2	-1.3	C
23	의류	78.8	81.4	3.2	C
24	기타철강금속제품	84.3	84.4	0.1	C
25	압연기용접기 및 주조설비	63.8	84.5	24.4	C
26	인조장섬유직물	80.2	80.8	0.7	C
27	기타섬유제품	77.4	80.5	3.9	C
28	편직물	73.6	80.5	8.6	C
29	안경	80.4	88.4	9.0	C
30	기호식품	54.1	86.5	37.4	C

② FTA BAD 품목

MTI 3단위 품목 중에서 최근 2년간 총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4년차 활용률이 50%미만으로 낮은 품목은 27개로 나타난다. 수입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출의 경우도 FTA 활용 BAD 품목은 전년대비 활용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활용률이 20%미만으로 한-EU FTA를 거의 적용받지 못하는 품목은 항공기 및 부품, 가발 및 가늌셋, 사무기기, 종이제품, 운모제품, 모직물 등으로 나타났다.

3년차 대비 4년차에 활용률이 증가한 품이 큰 품목은 항공기 및 부품, 가발 및 가늌셋, 사무기기, 종이제품, 운모제품, 모직물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3년차 대비 4년차 활용률 감소폭이 큰 품목은 종자류, 갑각류, 니켈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면직물 등이다.

■ 표14 4년차 FTA BAD 품목

단위 : %

구분	품목(mti 3)	3년차 활용률	4년차 활용률	증감률	그룹
1	석유화학합성원료	40.6	49.2	17.4	B
2	항공기 및 부품	3.6	2.6	-37.5	B
3	농약 및 의약품	37.3	48.4	22.8	D
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4.5	15.1	-62.7	D
5	반도체제조용장비	22.2	41.1	46.0	D
6	식품가공포장기계	33.3	43.3	23.0	D
7	해조류	44.0	49.7	11.4	D
8	기타완구	21.3	46.8	54.5	D
9	철강재용기 및 체인	47.2	41.2	-14.6	D
10	컴퓨터	33.8	29.4	-15.1	D
11	견직물	22.6	16.9	-33.7	D
12	면직물	56.8	36.0	-57.9	D
13	가발 및 가늌셋	10.4	13.2	20.8	D
14	석유화학 중간원료	74.2	46.9	-58.1	D
15	약기부분품	37.8	32.6	-16.0	E
16	의료위생용품	28.0	12.5	-123.1	E
17	사무기기	12.1	19.6	38.5	E
18	곡실류	16.5	20.9	20.9	E
19	시계	36.0	40.2	10.5	E
20	종이제품	0.2	1.4	87.2	E
21	종자류	69.4	5.7	-1111.7	E
22	갑각류	45.8	9.5	-383.0	E

03

주요국의 FTA 활용 동향

구분	mi 3	3년차 활용률	4년차 활용률	증감률	그룹
23	목재류	40.8	37.6	-8.7	E
24	반도체	65.0	37.3	-74.5	E
25	운모제품	12.7	11.3	-12.4	E
26	모직물	2.7	1.2	-129.7	E
27	니켈제품	60.9	22.4	-172.2	E

1 수입

1) 수입상위 5개국의 산업별 활용 현황

EU국가 중 수입상위 5개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이며 주요 5개국의 FTA활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수입 1위국인 독일의 FTA 수입활용률이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농림수산물의 FTA 수입활용률이 영국(76.9%)을 제외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대체적으로 80%이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 표15 주요국 산업별 수입활용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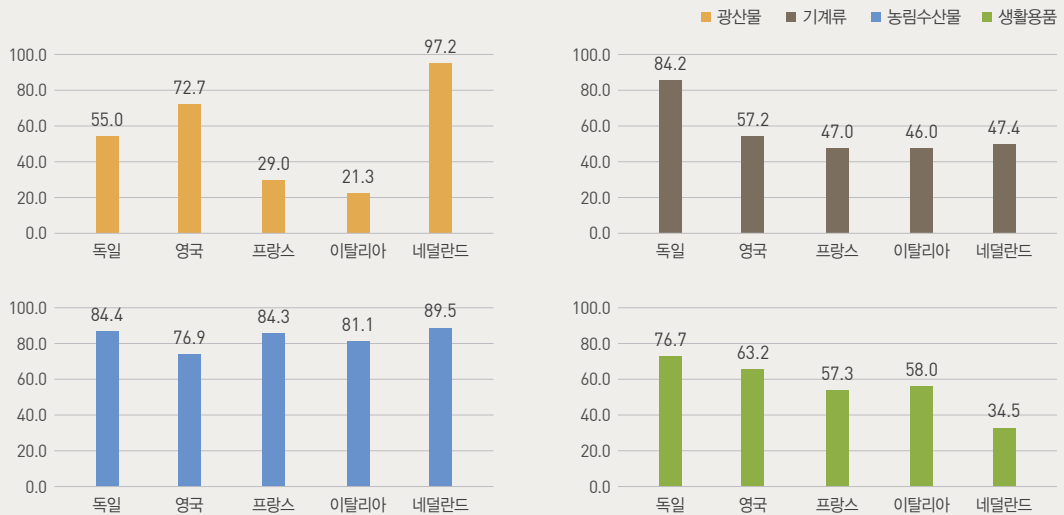
산업	4년차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광산물	55.0	72.7	29.0	21.3	97.2
기계류	84.2	57.2	47.0	46.0	47.4
농림수산물	84.4	76.9	84.3	81.1	89.5
생활용품	76.7	63.2	57.3	58.0	34.5
섬유류	83.3	58.4	26.3	62.7	87.8
잡제품	77.5	64.8	22.8	49.3	82.4
전자전기제품	62.5	43.4	56.2	47.4	52.1
철강금속제품	70.3	23.2	61.6	31.6	43.7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79.9	56.5	73.7	81.8	48.7
화학공업제품	72.6	56.8	76.3	70.8	83.0
총합계	78.3	59.2	59.0	55.4	65.5

2) 산업의 국가별 활용 현황

10대 산업별로 주요수입 5개국의 FTA활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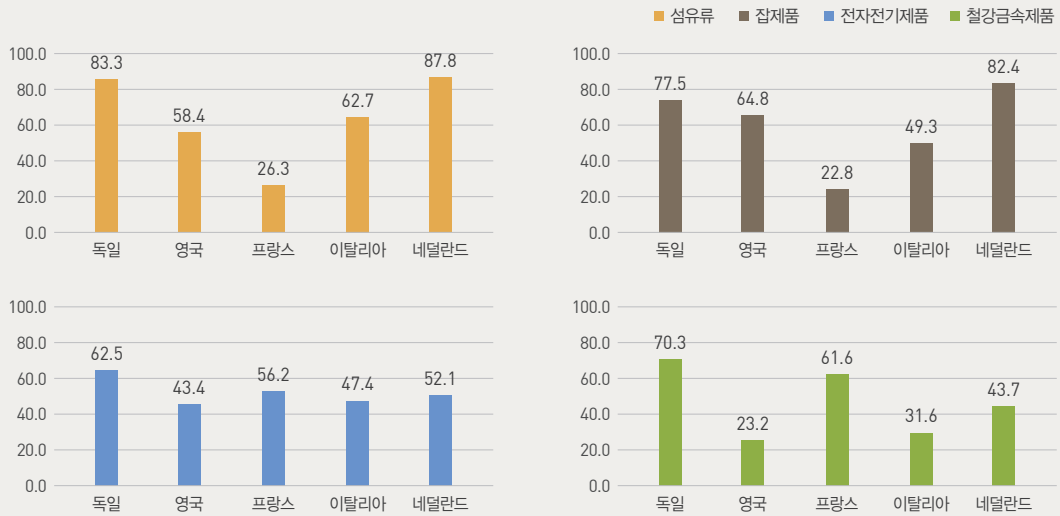
FTA 발효 4년차를 기준으로 광산물은 네덜란드가 97.2%로 수입활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30%미만으로 저조했다. 기계류의 경우 독일이 84.2%의 높은 수입활용률을 보이고 그 외 4개국은 평균 50%내외의 활용률을 보여 기계류의 독일수입 의존이 높지만 FTA활용 또한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산업의 국가별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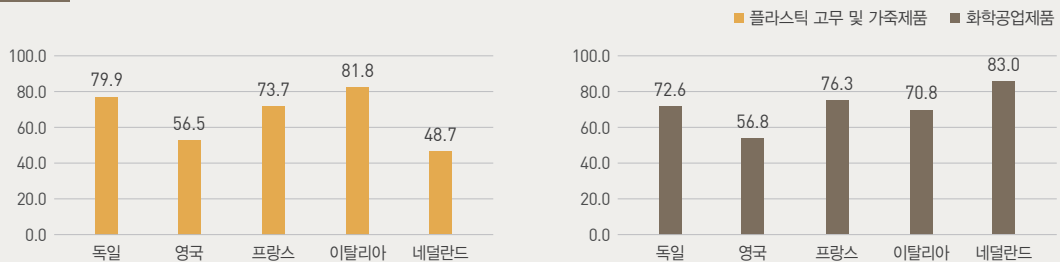
네덜란드산 석유류와 잡제품이 각각 87.8%와 82.4%로 높은 수입활용률을 보였다. 반면 프랑스산의 경우 석유류와 잡제품의 수입활용률이 30%미만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전자전기제품은 주요 5개국간의 수입활용률간 편차없이 40%~65%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 14 산업의 국가별 활용 현황



화학공업제품에서는 영국을 제외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70%이상의 높은 FTA 수입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제품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평균 75%내외의 활용률을 보인다.

그림 15 산업의 국가별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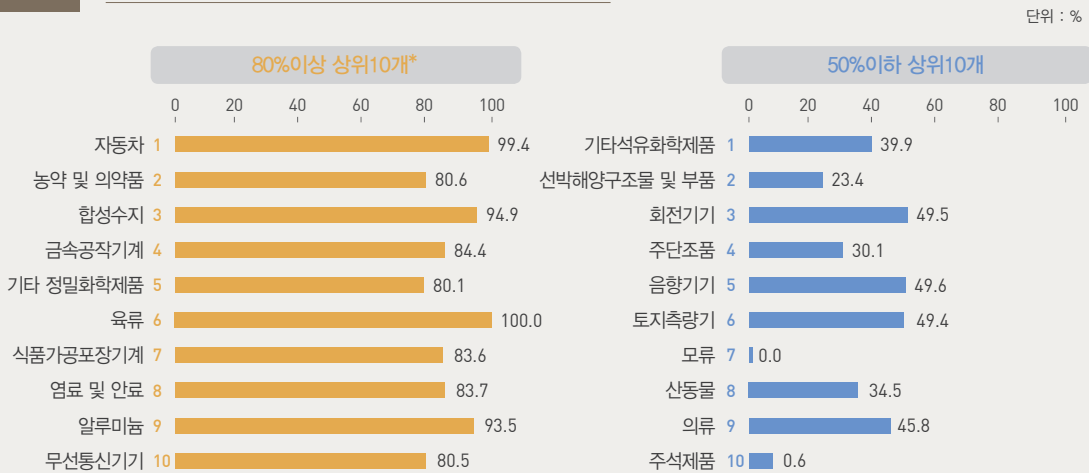


3) 주요 5개국 품목별 FTA활용 현황

① 독일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 현황

MTI 3단위 기준 독일의 주요 품목별 활용 현황은 FTA 발효 3년차 육류가 100.0%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4년차에도 동일하게 100%활용률을 기록하였다. 자동차, 육류의 경우 수입활용률이 99%이상을 넘어 EU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와 육류 제품이 FTA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육류 제품의 경우 국내산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FTA 수입 활용률이 낮은 품목은 기타석유화학제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이며, 모류와 주석제품의 경우 4년차 FTA 수입활용률이 1% 미만으로 거의 수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독일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 현황(4년차 활용률)



주 : 2년간 총수입 실적기준(이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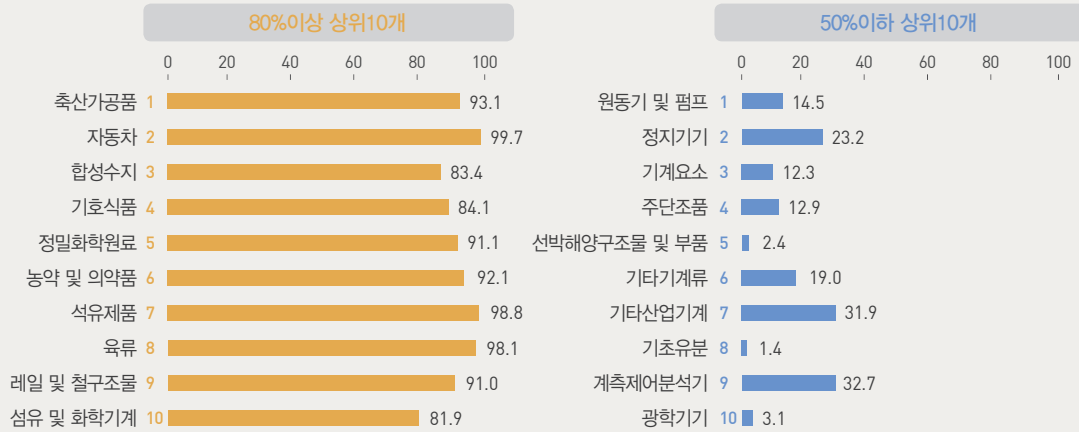
② 영국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 현황

영국의 주요 품목별 활용 현황은 FTA 발효 4년차 육류가 98.1%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석유제품 역시 98.8%의 높은 FTA 수입활용률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석유제품이 FTA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입 활용률이 낮은 품목은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기초유분, 광학 기기가 각각 2.4%, 1.4%, 3.1%로 저조한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그림 17 영국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 현황(4년차 활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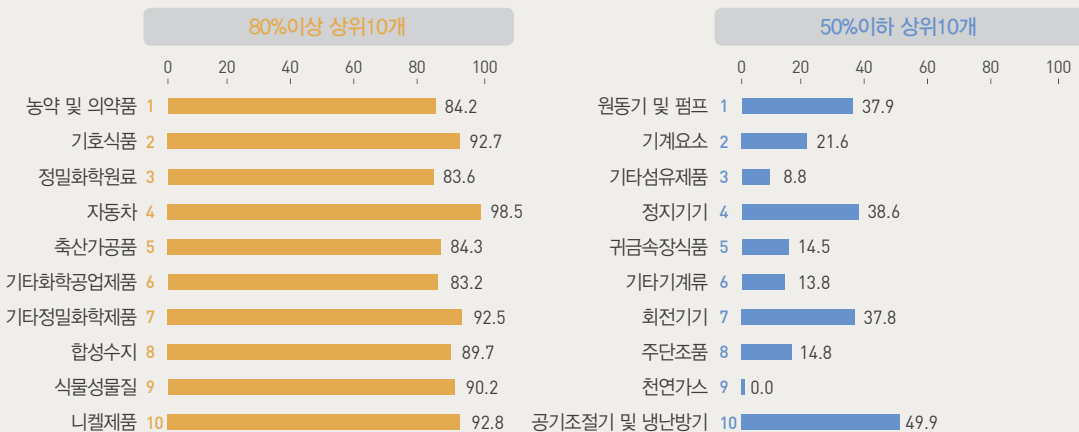


③ 프랑스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 현황

MPI 3단위 기준 프랑스의 주요 품목별 활용 현황은 FTA 발효 4년차 기호식품이 92.7%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FTA 수입 활용률이 낮은 품목은 기타섬유제품, 천연가스 등으로 해당 품목은 4년차 FTA 활용률이 8.8%, 0%에 달한다.

그림 18 프랑스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 현황(4년차 활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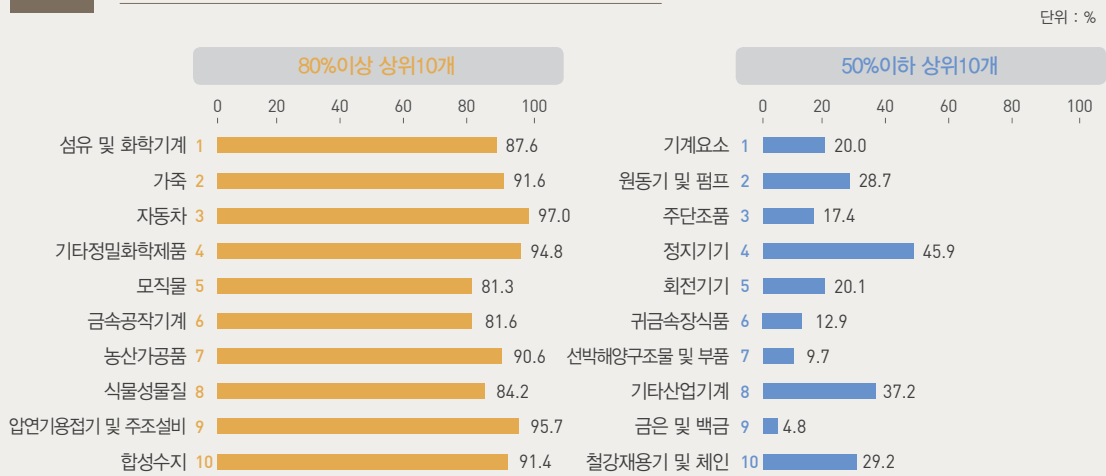


④ 이탈리아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 현황

MPI 3단위 기준 이탈리아의 주요 품목별 활용 현황은 FTA 발효 4년차 자동차가 97%, 기타정밀화학제품이 94.8%, 합성수지가 91.4%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시장이 특화된 가죽제품의 경우 관세철폐로 인해 FTA 수입 활용률이 91.6%를 기록하였다.

FTA 활용률이 낮은 품목은 금은 및 백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으로 각각 4.8%, 9.7%의 미미한 FTA 수입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19 이탈리아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현황(4년차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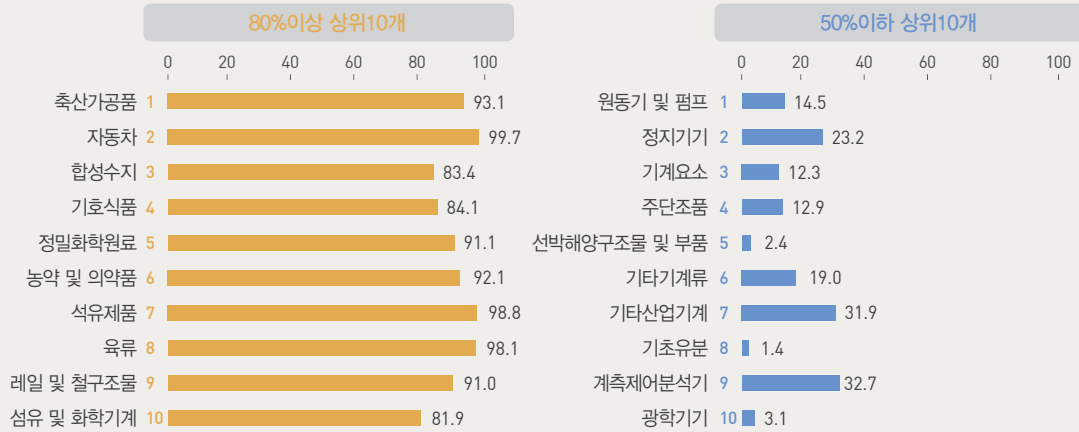


⑤ 네덜란드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 현황

네덜란드의 주요 품목별 활용 현황은 FTA 발효 4년차 자동차가 99.7%, 석유 제품이 98.8%, 육류가 98.1%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FTA 활용률이 낮은 품목은 기초유분 1.4%, 광학기기 3.1%로 해당 품목의 FTA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0 네덜란드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 현황(4년차 활용률)

단위 : %



2 수출

1) 수출상위 5개국의 산업별 활용 현황

FTA 발효 4년차 EU국가 중 수입 상위 5개국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이며, 슬로바키아의 FTA 수출 활용률이 생활용품(59.4%), 잡제품(44.4%)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FTA 수출 활용률은 광산물(92.5%), 화학공업제품(98.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FTA 관세 인하로 인해 섬유류의 경우 FTA 활용률이 독일(91%), 영국(87.6%), 폴란드(94%)로 EU 주요 5개국의 FTA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16 주요국 산업별 수출활용 현황

단위 : %

구분	4년차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광산물	49.5	73.6	91.5	92.5	57.4
기계류	88.8	85.5	81.0	92.1	85.2
농림수산물	73.0	68.3	69.3	69.6	86.0
생활용품	55.9	74.3	90.6	59.4	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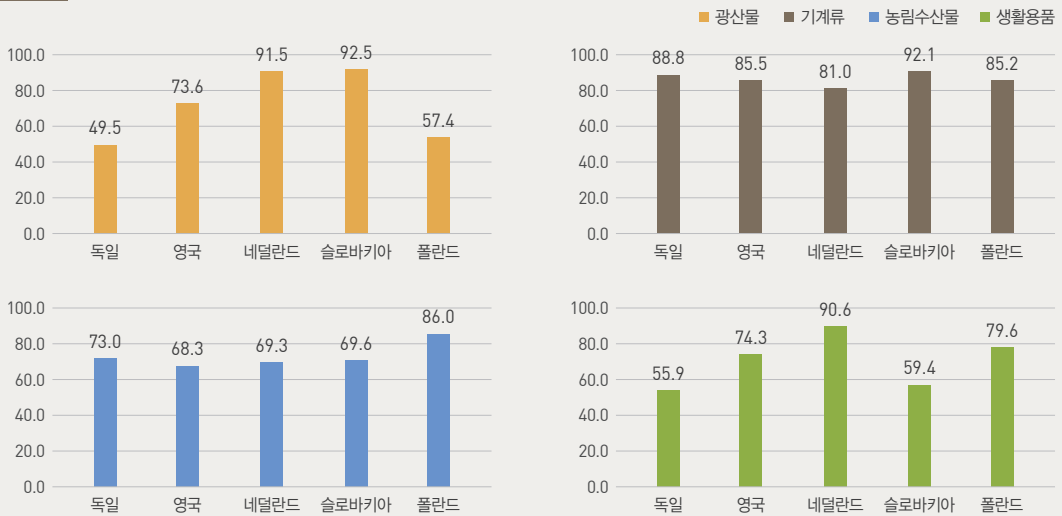
구분	4년차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섬유류	91.0	87.6	87.4	79.7	94.0
잡제품	79.8	74.5	88.4	44.4	50.4
전자전기제품	73.9	72.0	76.8	91.9	75.2
철강금속제품	86.9	70.5	57.0	87.8	67.8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93.7	87.9	87.6	93.8	88.4
화학공업제품	85.7	59.2	85.2	98.8	89.8
총합계	86.5	80.9	81.0	92.4	82.9

2) 산업의 국가별 활용 현황

EU 주요국 중 광산물의 경우 네덜란드, 슬로바키아가 각각 91.5%, 92.5%의 높은 수출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기계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는 슬로바키아, 폴란드가 각각 92.1%, 85.2% 높은 수출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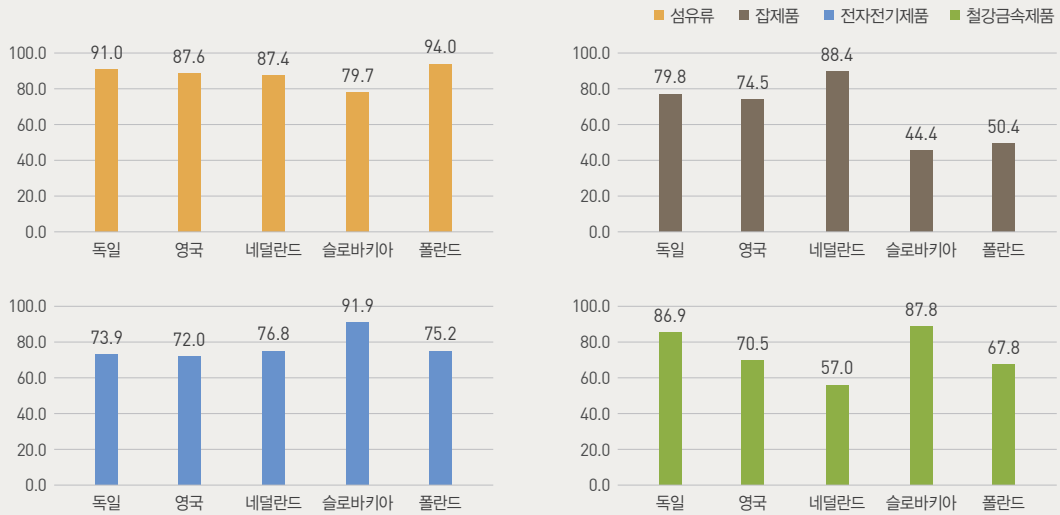
농림수산물의 수출 활용률은 주요5개국간의 편차없이 65%이상으로 안정적인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 산업의 국가별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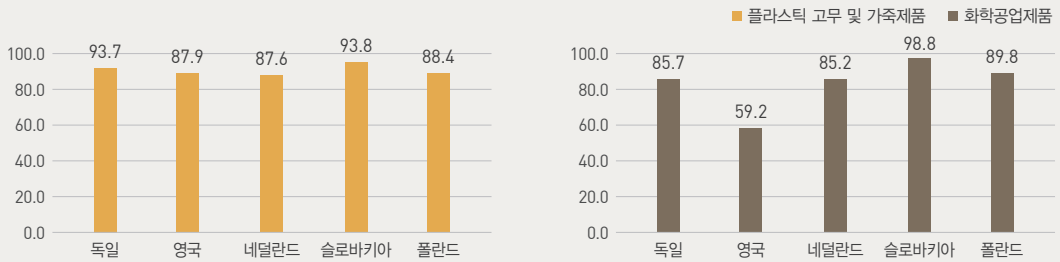
EU 주요국 중 석유류의 경우 폴란드가 94.0%, 독일이 91.0%의 높은 수출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주요 5개국의 수출 활용률이 약 80% 이상으로 FTA 원활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산업의 국가별 활용현황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경우 독일이 93.7%, 슬로바키아가 93.8%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FTA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슬로바키아가 98.8%의 상당한 수준의 FTA 수출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화학공업 제품은 영국이 59.2%인 것을 제외하고 독일,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가 85%이상의 높은 수준의 활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23 산업의 국가별 활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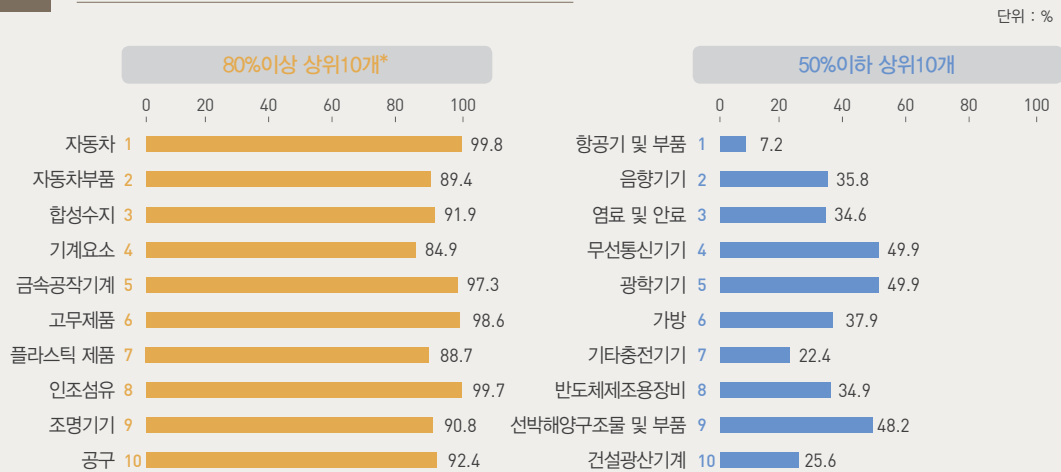


3) 주요 5개국 품목별 FTA활용 현황

① 독일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 현황

MTI 3단위 기준 독일의 주요 품목별 활용 현황은 FTA 발효 4년차 자동차가 99.8%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FTA 수출 활용률이 낮은 품목은 항공기 및 부품으로 7.2%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24 독일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현황(4년차 활용률)



주 : 2년간 총수출 실적기준(이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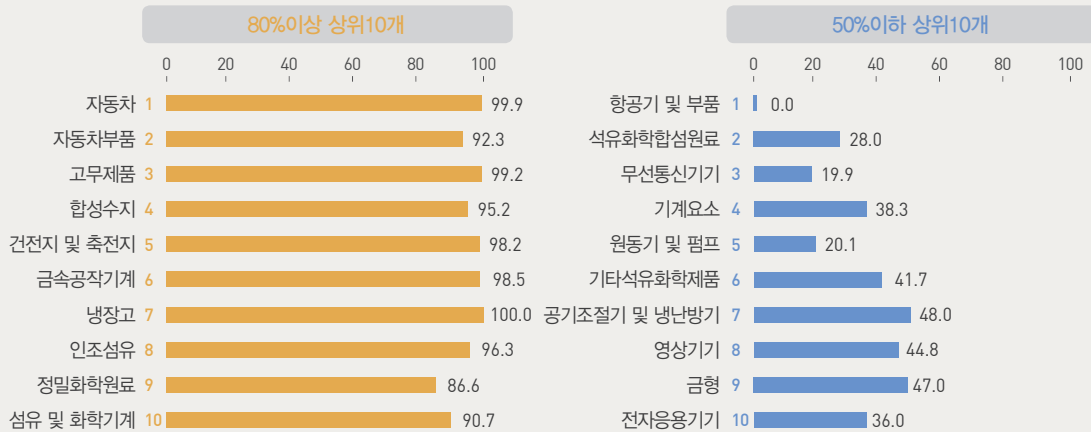
② 영국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 현황

MTI 3단위 기준 영국의 주요 품목별 활용 현황은 냉장고가 100%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역시 99.9%, 고무제품 99.2%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한편, 영국에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의 제품을 수출하려면 KITE마크(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를 획득하여야 하므로 수출자는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항공기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각각 FTA 활용률이 0.0%, 19.9%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림 25 영국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현황(4년차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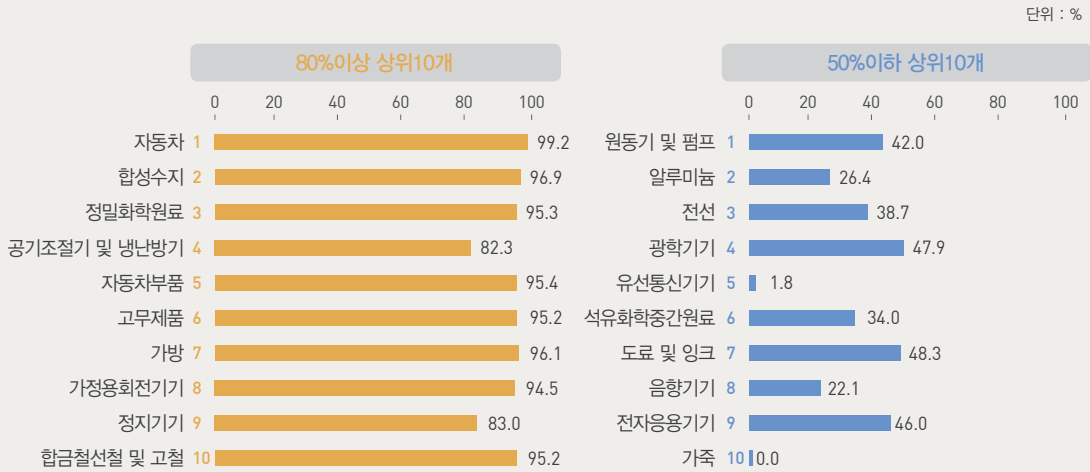
단위 : %



③ 네덜란드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 현황

네덜란드의 주요 품목별 활용 현황은 FTA 발효 4년차 기준 자동차가 99.2%, 합성수지가 96.9%,정밀화학원료가 95.3%의 높은 수출 활용수준을 보이고 있다. FTA 수출 활용률이 낮은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가죽으로 각각 1.8%, 0%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6 네덜란드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현황(4년차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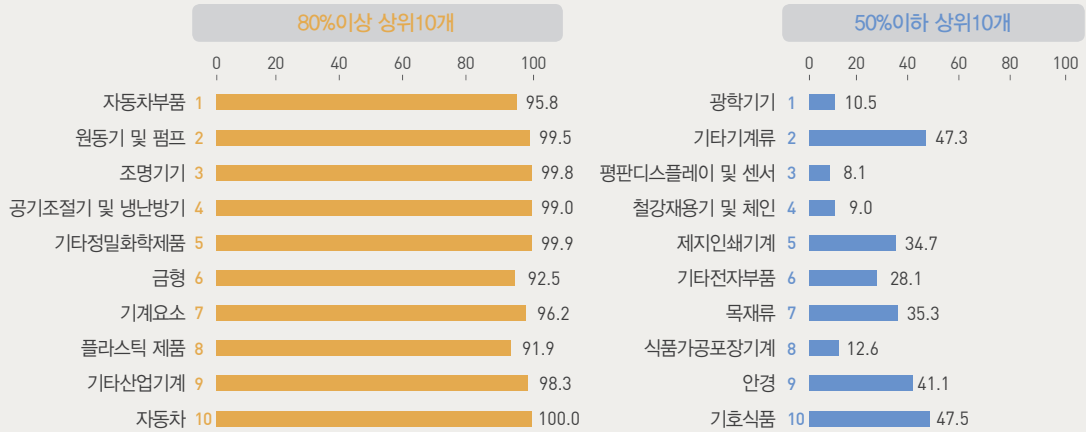
④ 슬로바키아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 현황

MPI 3단위 기준 슬로바키아의 주요 품목별 활용 현황은 FTA 발효 4년차 기준 기타정밀화학제품, 조명기기, 원동기 및 펌프가 각각 99.9%, 99.8%, 99.5%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발효 4년차 FTA 활용률이 100%를 기록하고 있어 자동차 전체 품목이 FTA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수출 활용률이 낮은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철강재 용기 및 체인이 4년차 FTA 수입활용률이 8.1%, 9.0%를 기록하였다.

그림 27 슬로바키아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현황(4년차 활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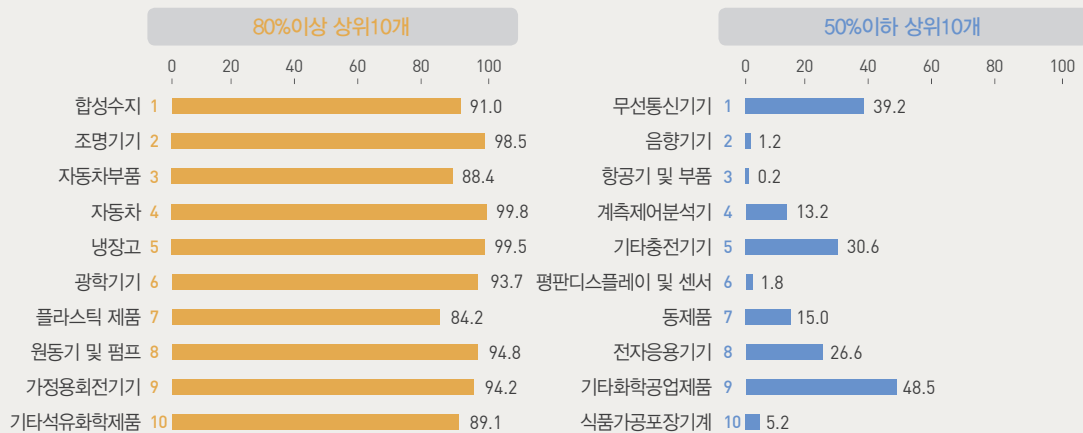
⑤ 폴란드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 현황

MTI 3단위 기준 폴란드의 주요 품목별 활용 현황은 FTA 발효 4년차 기준 자동차, 냉장고가 각각 99.8%, 조명기기가 98.5%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타석유 화학제품 역시 89.1%의 수출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FTA 수출 활용률이 낮은 품목은 음향기기, 항공기 및 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각각 1.2%, 0.2%, 1.8%의 저조한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8 폴란드의 주요 품목별 FTA 활용현황(4년차 활용률)

단위 : %



04

한-EU FTA 5년을 맞이하여

한-EU FTA 이행 5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4년간의 FTA 활용실적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FTA 활용정책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EU와의 교역동향은 FTA발효이후 무역수지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FTA 대상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고 FTA 활용률 또한 높게 나타난 점을 바탕으로 할 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것이 FTA 때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오히려 유럽산 자동차와 주류(와인, 맥주) 및 화장품, 의류 등 고급 소비재등의 수입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난 4년간의 FTA 활용성적이 수입활용률의 평균 보다 수출 활용률의 평균이 70%이상으로 높다는 점은 향후 한-EU FTA활용에 있어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FTA의 부정적 효과로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를 꼽지만 유럽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FTA 수출 활용률이 연차별로 높아진다는 것은 FTA로 인한 수출경쟁력도 뒤쳐지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FTA 발효 5년차에 접어들면서 소형차, TV, 순모직물 등의 관세율이 보다 더 낮아지므로 단계적 관세철폐 품목의 적극적 FTA 활용과 수입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농림수산물의 수출 활용률이 매년 큰 성장성을 보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물의 수출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FTA 활용률도 이행연차별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2월 1일부터 한국에서 받은 유기인증만으로도 EU 시장에서 'ORGANIC' 표시를 하면 상품판매가 가능해 지므로 보다 적극적 FTA 활용을 통해 농림수산물의 수출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별 FTA 이행 동향

신선 과일류 및 과일류 생산품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01

분석개요

1 분석배경

최근 건강이나 다이어트, 새로운 과일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는 열대과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수입산 신선 과일 및 과일류 생산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에 더해 FTA발효의 영향으로 관세인하 등에 따른 가격인하 요인의 발생으로 수입여건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수입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재 발효 중인 FTA협정 중 상당량의 과일류가 수입되고 있는 4개 주요 FTA협정(한-칠레, 한-아세안, 한-EU, 한-미)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신선 과일류 및 과일류 생산품 수입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변화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2 분석대상

분석은 FTA체약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선 과일류 및 과일류 생산품(HS 10단위 기준)을 대상으로 하되, 대부분의 협정에서 체약당사국 내에서의 재배 및 수확을 FTA특혜적용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과일류의 특성상 당사국 내에서 과일류가 대량 생산되는 협정을 선정하였다.

또한 최근 수입동향의 분석을 위해 2012~2014년의 3년 동안 협정이 발효되고 있는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 한-EU FTA, 한-미 FTA 등 4개 협정을 분석대상 협정으로 채택하였으며, 분석의 범위는 수입되는 신선 과일류 및 과일류 생산품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38개 품목(HS 10단위 기준)으로 한정된 후 분석의 편의를 위해 분석대상을 4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 표1 신선 과일류 및 과일류 생산품 분석대상 구분

구분	HS코드	품명
신선 과일류 (11개 품목)	0804400000	아보카도
	0805100000	오렌지
	0805501000	레몬
	0805502020	라임
	0806100000	포도
	0806200000	건포도
	0807190000	멜론
	0810400000	크랜베리 등
	0810500000	키위프루트
	0811200000	구즈베리 등
	0813200000	프룬
잼·과일젤리류 (2개 품목)	2007911000	감귤류 과실잼·과일젤리와 마멀레이드
	2007991000	기타 과실잼·과일젤리와 마멀레이드
조제·저장처리과실 (5개 품목)	2008200000	파인애플
	2008600000	체리
	2008701000	복숭아
	2008930000	크랜베리 등
과실주스 (20개 품목)	2009110000	오렌지주스(냉동)
	2009120000	오렌지주스(냉동하지 않은 것) : 브릭스값 20 이하
	2009190000	오렌지주스(냉동하지 않은 것) : 기타
	2009210000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브릭스값 20 이하

1) 분석기간(2012~2014년) 중 총수입액이 100만불 이상인면서 관세인하 등이 적용되는 FTA대상 수입액이 50만불 이상이고 실제 FTA적용수입액이 20만불 이상인 신선 과일류 및 과일류 생산품

구분	HS코드	품명
과실주스 (20개 품목)	2009290000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기타
	2009311000	레몬주스 : 브릭스값 20 이하
	2009391000	레몬주스 : 기타
	2009490000	파인애플주스 : 기타
	2009610000	포도주스 : 브릭스값 30 이하
	2009690000	포도주스 : 기타
	2009710000	사과주스 : 브릭스값 20 이하
	2009790000	사과주스 : 기타
	2009810000	크랜베리주스 등
	2009891010	복숭아주스
	2009891020	딸기주스
	2009891090	기타주스
	2009901010	혼합 주스 :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2009901020	혼합 주스 :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2009901030	혼합 주스 :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2009901090	혼합 주스 : 기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3 분석범위

분석의 범위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최근 3년간의 수입동향 변화를 HS 10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對세계 수입액 대비 각 협정별 수입비중을 확인해 봄으로써 각 품목의 4개 분석대상 협정에 대한 수입편중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FTA발효가 이들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 신선 과일류 및 과일류 생산품의 對한국 수출에 어떤 변화를 발생시켰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분석기간을 기준으로 협정별로 FTA특혜 적용 수입동향의 변화를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인하가 해당 품목의 수입량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02

최근 3년간 신선 과일류 및 과일류 생산품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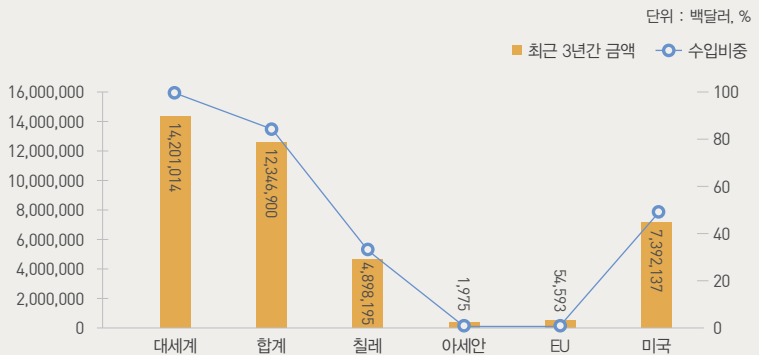
1 신선 과일류

분석대상 11개 품목의 최근 3년간 수입총액에서 4개 분석대상 FTA협정 체약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86.9%를 차지하며, 특히 아세안이나 EU로부터의 수입은 극히 적은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52.1%로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칠레로부터의 수입도 34.5%로 높은 비중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기간(2012~2014년) 중 신선 과일류는 총 1,420백만불이 수입되었는데 4개 FTA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1,235백만불로 전체의 86.9%에 달하였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총 수입의 52.1%인 739백만불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칠레로부터의 수입 또한 490백만불로 총 수입의 34.5%에 달해 이들 2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86.6%를 차지함으로써 신선 과일류는 주로 칠레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최근 3년간 신선 과일류 수입비중 변화 추이



반면, 아세안과 EU로부터의 신선 과일류 수입은 극히 미미한데 아세안의 경우 3년간 총 수입액이 2.0십만불에 불과하며 수입된 품목도 라임과 건포도 등 2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EU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분석대상기간(2012~2014년) 동안 對세계 수입액의 0.4%인 54.6십만불에 불과하며 주로 키위프루트와 오렌지 등의 수입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대상 신선과일류 11개 품목 중 분석대상기간 내에 4개 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 100백만불 이상 수입된 물품은 오렌지와 포도 2개 품목인데, 가장 많은 수입이 이루어진 품목은 오렌지로 3년간 565.5백만불이 수입되었으며 이어서 포도가 470.5백만불이 수입되었다.

이어서 10백만불 이상 수입된 품목은 5개 품목으로 '레몬 > 건포도 > 키위프루트 > 크랜베리 등 > 프룬' 의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분석대상인 신선 과일류 11개 품목 중 4개 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의 50%를 넘는 품목은 키위프루트를 제외한 10개 품목으로, 이들 협정 체약상대국(지역)에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과일별로 수입지역의 편중이 명확한 점이 특징이다.

■ 표2 최근 3년간 신선 과일류 품목별 4개 협정 수입동향

단위 : 백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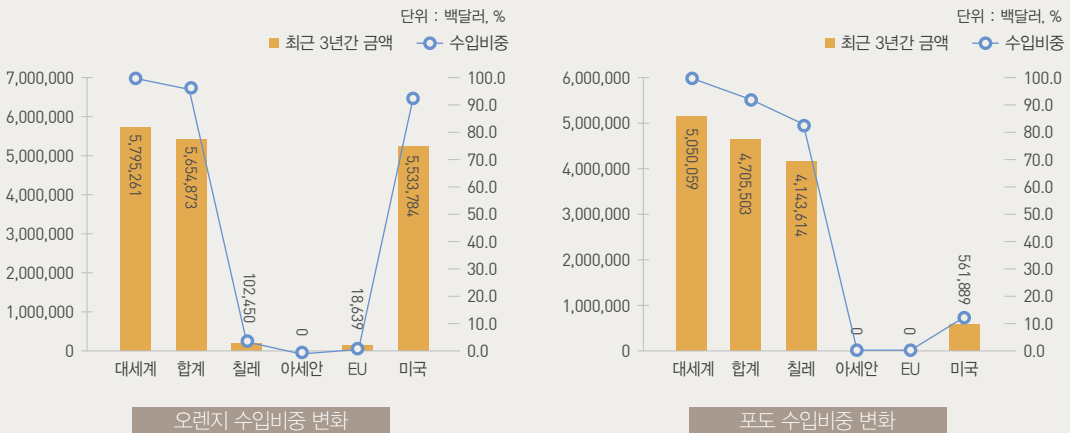
품명(HS코드)	칠레	아세안	EU	미국	합계	대세계
아보카도 (0804400000)	0 (0.0)	0 (0.0)	54 (0.1)	65,124 (63.9)	65,179 (63.9)	101,976 (100.0)
오렌지 (0805100000)	102,450 (1.8)	0 (0.0)	18,639 (0.3)	5,533,784 (95.5)	5,654,873 (97.6)	5,795,261 (100.0)
레몬 (0805501000)	109,574 (14.8)	214 (0.0)	0 (0.0)	630,796 (85.2)	740,585 (100.0)	740,585 (100.0)
라임 (0805502020)	0 (0.0)	1,212 (9.2)	0 (0.0)	11,690 (89.0)	12,903 (98.2)	13,142 (100.0)
포도 (0806100000)	4,143,614 (82.1)	0 (0.0)	0 (0.0)	561,889 (11.1)	4,705,503 (93.2)	5,050,059 (100.0)
건포도 (0806200000)	3,062 (0.9)	542 (0.2)	503 (0.1)	343,017 (95.3)	347,124 (96.4)	360,059 (100.0)
멜론 (0807190000)	0 (0.0)	0 (0.0)	0 (0.0)	41,960 (97.2)	41,960 (97.2)	43,151 (100.0)
크랜베리 등 (0810400000)	178,053 (70.0)	0 (0.0)	0 (0.0)	76,121 (29.9)	254,174 (100.0)	254,185 (100.0)
키위프루트 (0810500000)	318,059 (19.5)	0 (0.0)	25,127 (1.5)	18 (0.0)	343,204 (21.1)	1,629,522 (100.0)
구즈베리 등 (0811200000)	33,261 (42.5)	6 (0.0)	10,261 (13.1)	3,137 (4.0)	46,664 (59.6)	78,352 (100.0)

품명(HS코드)	칠레	아세안	EU	미국	합계	대세계
프룬 (0813200000)	10122 (7.5)	0 (0.0)	8 (0.0)	124,600 (92.5)	134,731 (100.0)	134,722 (100.0)
합계	4,898,195 (34.5)	1,975 (0.0)	54,593 (0.4)	7,392,137 (52.1)	12,346,900 (86.9)	14,201,014 (100.0)

주 : ()내는 대세계 해당기간(2012~2014)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신선 과일류 수입품목 중 분석대상기간 총 579.5백만불이 수입되어 수입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하고 있는 오렌지의 경우 4개 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97.6%이며, 이중 미국으로부터 553.3백만불이 수입되어 총 수입액 대비 95.5%를 기록한 반면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1.8%에 불과하였다. 반대로 포도는 최근 3년간 총 505.0백만불이 수입되었는데 4개 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총 수입액의 93.2%인 470.6백만불이며, 이중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414.4백만불로 총 수입액 대비 82.1%를 기록하였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1.1%인 56.2백만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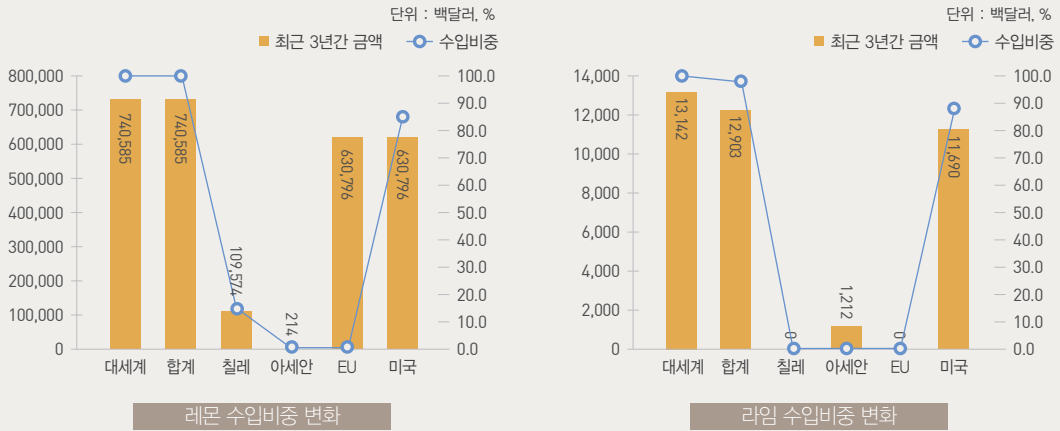
그림 2 오렌지 및 포도 수입비중 변화 추이



신선 과일류 11개 품목 중 분석대상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 편중도가 80%를 상회하는 품목은 8개 품목(오렌지, 레몬, 라임, 포도, 건포도, 멜론, 크랜베리 등, 프룬)으로 앞서 살펴본 오렌지와 포도를 제외하고 개별 품목별로 분석대상 FTA협정 체약상대국(지역) 중 가장 많은 수입이 이루어진 국가(지역)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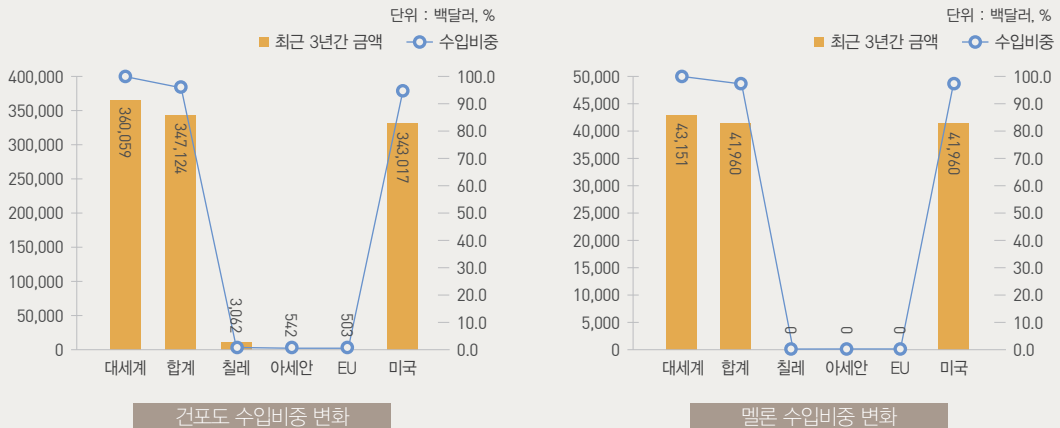
먼저, 이들 4개 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 100% 수입된 레몬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85.2%로 미국에 대한 수입편중도가 가장 높으며, 라임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89.0%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았다.

그림 3 레몬 및 라임 수입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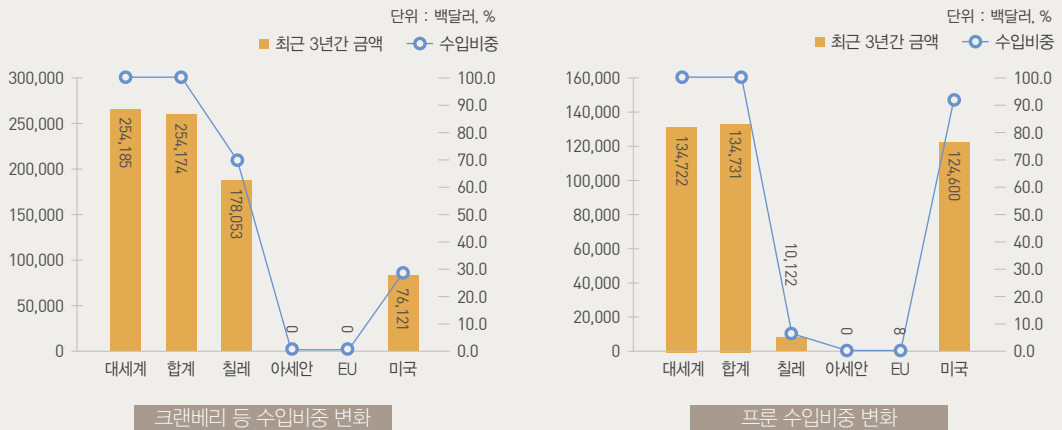
이어서 건포도와 멜론의 경우에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선포도의 수입이 칠레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건포도는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0.9%에 불과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5.3%에 달하는 등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4 건포도 및 멜론 수입비중 변화 추이



마지막으로 크랜베리 등과 프룬은 분석대상 기간 중 수입된 전체 수입량이 이들 4개 FTA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 수입되었는데, 크랜베리 등의 경우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총 수입액의 70.0%로 수입편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프룬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았다.

그림 5 크랜베리 등과 프룬 수입비중 변화 추이



2 잼·과실젤리류

분석대상 2개 품목의 최근 3년간 수입총액에서 4개 분석대상 FTA협정 체약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53.3%이며, 신선 과일류의 경우 수입량이 많지 않았던 EU로부터의 수입량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분석대상기간(2012~2014년) 중 잼·과실젤리류는 총 34.8백만불이 수입되었는데 4개 FTA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18.5백만불로 총 수입액의 53.3%를 차지하였다.

4개 FTA협정 중 이들 물품은 주로 EU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는데 EU 지역으로부터 분석대상기간(2012~2014년) 총 수입의 20.2%인 7,0백만불이 수입되었고 미국으로부터는 11.1백만불이 수입되어 총 수입의 32.1%가 수입되었다.

그림 6 최근 3년간 잼·과실젤리류 수입비중 변화 추이



특히, 감귤류로 만든 제품의 경우에는 총 수입액의 98.8%가 EU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었으며 기타 과실로 만든 제품은 전체 수입의 절반 수준인 51.0%가 EU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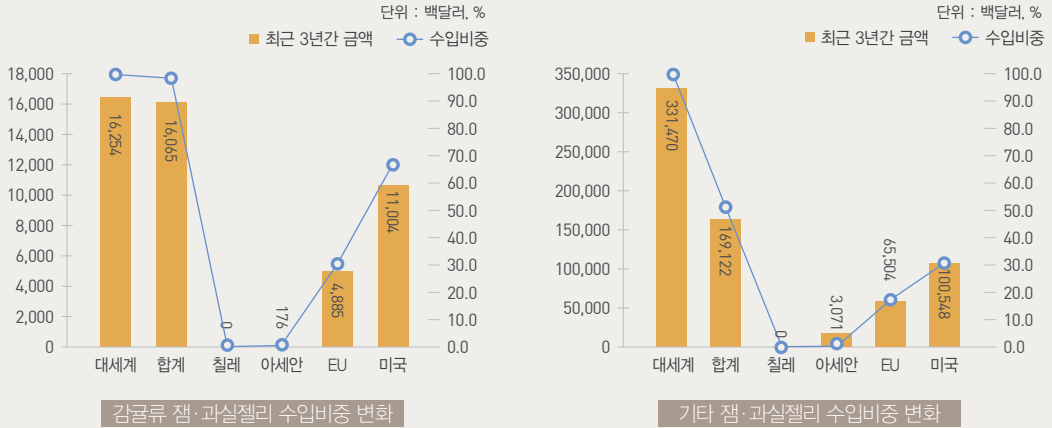
■ 표3 최근 3년간 잼·과실젤리 품목별 4개 협정 수입동향

단위 : 백불, %

품명(HS코드)	칠레	아세안	EU	미국	합계	대세계
감귤류 과실잼·과일젤리 (2007911000)	0 (0.0)	176 (1.1)	4,885 (30.1)	11,004 (67.7)	16,065 (98.8)	16,254 (100.0)
기타 과실잼·과일젤리 (2007991000)	0 (0.0)	3,071 (0.9)	65,504 (19.8)	100,548 (30.3)	169,122 (51.0)	331,470 (100.0)
합계	0 (0.0)	3,247 (0.9)	70,389 (20.2)	111,551 (32.1)	185,187 (53.3)	347,724 (100.0)

주 : ()내는 대세계 해당기간(2012~2014)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그림 7 잼·과실젤리류 수입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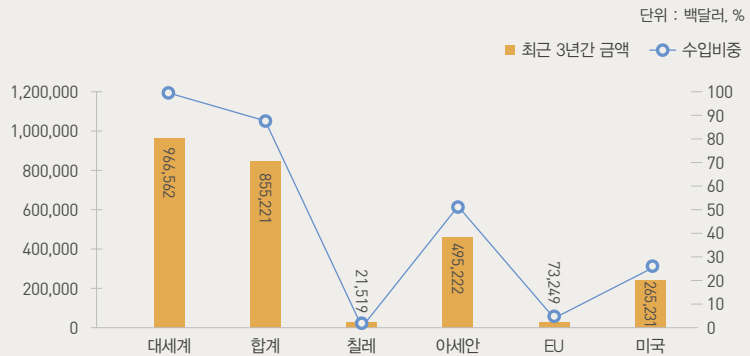
3 조제·저장처리 과실류

분석대상 5개 품목의 최근 3년간 수입총액에서 4개 분석대상 FTA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88.5%를 차지하며, 특히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2%로 가장 많은 수입이 이루어졌다.

분석대상기간(2012~2014년) 중 조제·저장처리 과실류는 총 96.7백만불이 수입되었는데 4개 FTA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총 수입의 88.5%인 85.5백만불이었다.

조제·저장처리 과실류는 특히 아세안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았는데 분석대상기간 중 당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총 수입의 51.2%인 49.5백만불이었으며, 이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총 수입의 27.4%인 26.5백만불이었고 EU지역으로부터 7.6%와 칠레로부터 2.2% 정도 수입되는 등 이들 두 지역으로부터는 많지 않은 양이 수입되었다.

그림 8 최근 3년간 조제·저장처리 과실류 수입비중 변화 추이



분석대상인 5개 품목 중 4개 FTA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 수입된 대표 품목은 파인애플과 크랜베리 등이었는데 이들 2개 품목은 전체 수입 중 각각 99.9%와 99.5%가 수입되었고, 체리도 총 수입의 81.6%가 이들 지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특정 국가(지역)로부터의 수입에 집중되어 있는 파인애플 등과 달리 사과와 아세안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 고루 수입되었는데, 수입량은 전체 20.1백만불이며 이중 71.6%인 14.4백만불이 3개 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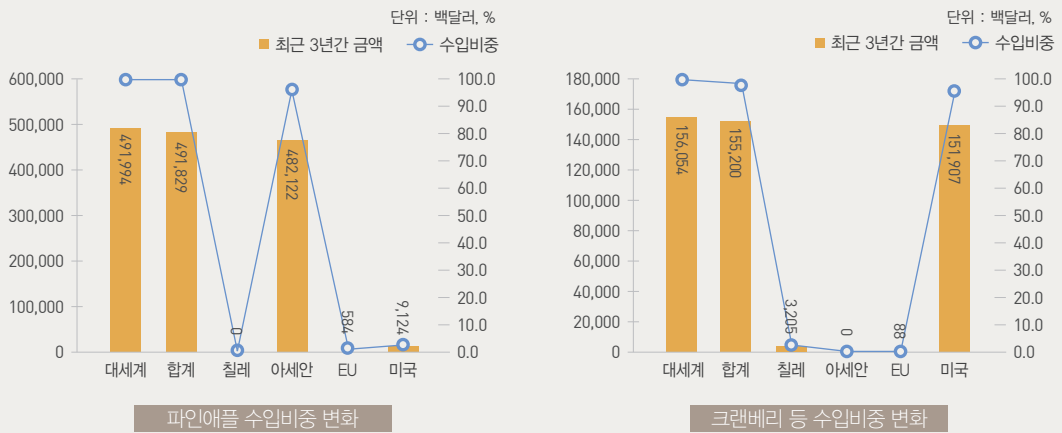
■ 표4 최근 3년간 조제·저장처리 과실류 품목별 4개 협정 수입동향 단위: 백만, %

품명(HS코드)	칠레	아세안	EU	미국	합계	대세계
파인애플 (2008200000)	0 (0.0)	482,122 (98.0)	584 (0.1)	9,124 (1.9)	491,829 (99.9)	491,994 (100.0)
체리 (2008600000)	1,902 (1.3)	0 (0.0)	22,393 (15.7)	92,218 (64.5)	116,514 (81.6)	142,868 (100.0)
복숭아 (2008701000)	13,167 (8.5)	13,087 (8.4)	45,127 (29.0)	5,899 (3.8)	77,281 (49.7)	155,570 (100.0)
크랜베리 등 (2008930000)	3,205 (2.1)	0 (0.0)	88 (0.1)	151,907 (97.3)	155,200 (99.5)	156,054 (100.0)
사과 (2008992000)	3,245 (16.2)	13 (0.1)	5,057 (25.2)	6,083 (30.3)	14,398 (71.7)	20,076 (100.0)
합계	21,519 (2.2)	495,222 (51.2)	73,249 (7.6)	265,231 (27.4)	855,221 (88.5)	966,562 (100.0)

주: ()내는 대세계 해당기간(2012~2014)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조제·저장처리 과실류 수입품목 중 대표적 수입품목인 파인애플의 수입액은 분석대상기간 총 49.2백만불로 가장 많은 수입량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아세안지역으로부터 총 수입의 98.0%인 48.2백만불이 수입되었고 두 번째로 많은 수입이 이루어진 크랜베리 등의 경우 총 15.6백만의 수입 중 97.3%인 15,2백만불이 미국으로부터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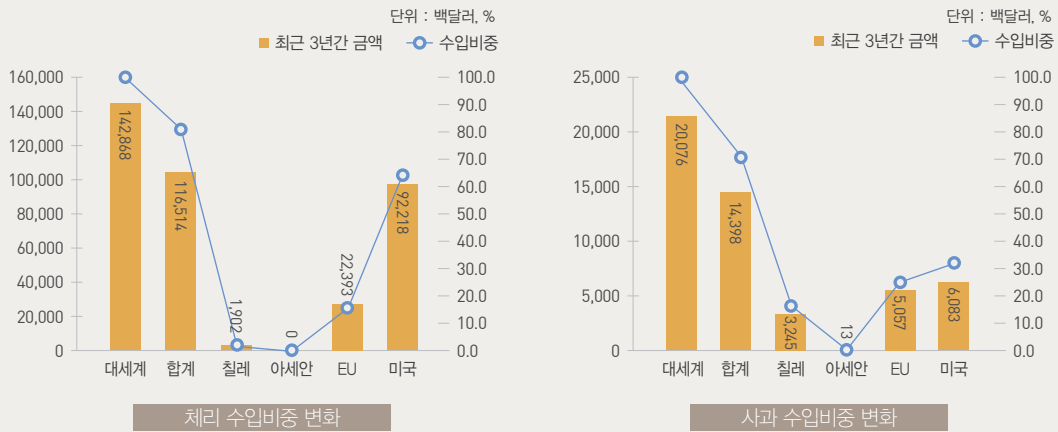
그림 9 파인애플 및 크랜베리 등 수입비중 변화 추이



조제·저장처리 과실류 수입품목 중 분석대상 4개 FTA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편중도가 90%를 상회하는 파인애플과 크랜베리 등을 제외하고 절대적인 양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81.6%가 수입된 체리와 71.7%가 수입된 사과인데, 체리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4.5%로 가장 많았고 사과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30.3%로 가장 많았으나 EU나 칠레로부터도 상당량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체리 및 사과 수입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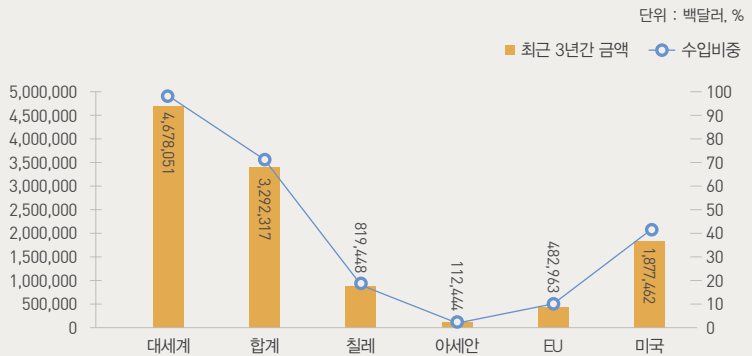
4 과실주스류

분석대상 20개 품목의 최근 3년간 수입총액에서 4개 분석대상 FTA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70.4%를 차지하며,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40.1%로 가장 많았고 칠레로부터의 수입 또한 17.5%로 상당한 양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기간(2012~2014년) 중 과실주스류는 총 467.8백만불이 수입되었는데 4개 FTA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70.4%인 329.2백만불이었다.

이를 협정국별로 구분하여 보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은 187.7백만불로 총 수입의 40.1%였으며 이어서 칠레로부터 총 수입액의 17.5%인 81.9백만불이 수입되었고, EU지역으로부터도 총 수입의 10.3%인 48.3백만불이 수입되었으나 아세안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총 수입의 2.4%에 불과하였다.

그림 11 최근 3년간 과실주스류 수입비중 변화 추이



분석대상 20개 품목을 수입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오렌지주스(냉동한 것)와 포도주스(기타)의 수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오렌지주스(냉동한 것)의 경우 과실주스 총 수입액 467.8백만불 중 29.9%인 139.8백만불이 수입되었고 포도주스는 총 수입액의 26.9%인 125.9백만불이 수입되었다.

■ 표5 최근 3년간 과실주스류 품목별 4개 협정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

품명(HS코드)	칠레	아세안	EU	미국	합계	대세계
오렌지주스(냉동한 것) (2009110000)	0 (0.0)	0 (0.0)	64,894 (4.6)	695,785 (49.8)	760,680 (54.4)	1,397,912 (100.0)
오렌지주스 (냉동하지 않은 것) : 브릭스값 20 이하 (2009120000)	0 (0.0)	20,904 (28.8)	15,380 (21.2)	18,982 (26.2)	55,267 (76.2)	72,530 (100.0)
오렌지주스(냉동하지 않은 것) : 기타 (2009190000)	0 (0.0)	11 (0.0)	4,704 (14.2)	10,430 (31.4)	15,145 (45.6)	33,214 (100.0)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브릭스값 20 이하 (2009210000)	0 (0.0)	1,573 (9.2)	1,365 (8.0)	14,016 (82.2)	16,953 (99.5)	17,044 (100.0)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기타 (2009290000)	4 (0.0)	5 (0.0)	420 (0.3)	22,975 (15.0)	23,403 (15.3)	153,093 (100.0)
레몬주스 : 브릭스값 20 이하 (2009311000)	0 (0.0)	1 (0.0)	6,666 (14.9)	21,641 (48.4)	28,308 (63.3)	44,735 (100.0)
레몬주스 : 기타(2009391000)	0 (0.0)	227 (0.3)	26,767 (37.6)	4,726 (6.6)	31,721 (44.6)	71,1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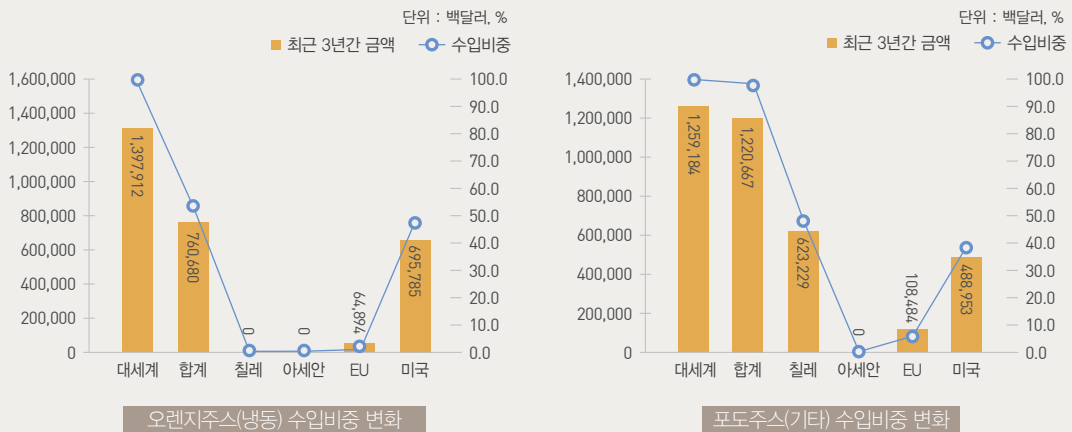
품명(HS코드)	칠레	아세안	EU	미국	합계	대세계
파인애플주스 : 기타 (2009490000)	0 (0.0)	64,597 (75.8)	5,634 (6.6)	2,490 (2.9)	72,721 (85.3)	85,225 (100.0)
포도주스 : 브릭스값 20 이하 (2009610000)	45 (0.1)	421 (1.1)	5,051 (13.7)	26,483 (72.0)	31,999 (87.0)	36,769 (100.0)
포도주스 : 기타 (2009690000)	623,229 (49.5)	0 (0.0)	108,484 (8.6)	488,953 (38.8)	1,220,667 (96.9)	1,259,184 (100.0)
사과주스 : 브릭스값 20 이하 (2009710000)	211 (0.2)	411 (0.3)	1,600 (1.3)	99,356 (80.9)	101,578 (82.7)	122,847 (100.0)
사과주스 : 기타 (2009790000)	163,631 (36.2)	0 (0.0)	4,847 (1.1)	11,431 (2.5)	179,909 (39.9)	451,417 (100.0)
크랜베리주스 등 (2009810000)	7,569 (38.2)	0 (0.0)	798 (4.0)	11,468 (57.8)	19,835 (100.0)	19,838 (100.0)
복숭아주스 (2009891010)	74 (0.2)	0 (0.0)	7,373 (18.3)	12,150 (30.2)	19,598 (48.7)	40,247 (100.0)
딸기주스 (2009891020)	0 (0.0)	0 (0.0)	3,533 (13.6)	7,743 (29.9)	11,275 (43.5)	25,922 (100.0)
기타주스 (2009891090)	24,601 (4.0)	4,106 (0.7)	163,813 (26.7)	371,278 (60.6)	563,797 (92.0)	612,612 (100.0)
혼합주스 :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2009901010)	0 (0.0)	9,175 (9.3)	33,621 (34.2)	354 (0.4)	43,150 (43.8)	98,427 (100.0)
혼합주스 :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2009901020)	0 (0.0)	3,165 (11.0)	4,813 (16.8)	5,427 (18.9)	13,406 (46.8)	28,665 (100.0)
혼합주스 :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2009901030)	0 (0.0)	2,536 (12.4)	5,379 (26.3)	5,433 (26.6)	13,348 (65.4)	20,421 (100.0)
혼합주스 : 기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2009901090)	82 (0.1)	5,311 (6.1)	17,822 (20.5)	46,343 (53.4)	69,558 (80.1)	86,815 (100.0)
합계	819,448 (17.5)	112,444 (2.4)	482,963 (10.3)	1,877,462 (40.1)	3,292,317 (70.4)	4,678,051 (100.0)

주 : ()내는 대세계 해당기간(2012~2014)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분석대상 과실주스 20개 품목 중 주요 수입품목의 협정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분석대상기간(2012~2014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이 이루어진 오렌지주스 (냉동한 것)의 경우 4개 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같은 기간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4%였으며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對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입의 49.8%인 69.6백만불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수입된 포도주스(기타)는 분석대상 기간 동안 125.9백만불이 수입되었는데 이중 96.9%인 120.1백만불이 4개 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62.3백만불로 총 수입액의 49.5%를 차지하였고 미국으로부터도 총 수입액의 38.8%인 48.9백만불이 수입되었다.

그림 12 오렌지주스(냉동) 및 포도주스(기타) 수입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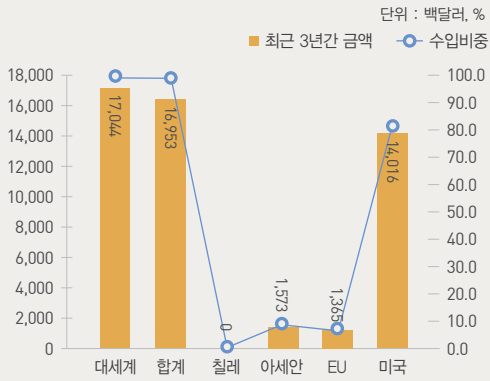
분석대상 과실주스류 20개 품목 중 분석대상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편중도가 80%를 상회하는 품목은 8개 품목(그레이프프루트주스 : 브릭스값 20 이하, 파인애플주스 : 기타, 포도주스 : 브릭스값 30 이하, 포도주스 : 기타, 사과주스 : 브릭스값 20 이하, 크랜베리주스 등, 기타주스, 혼합주스 : 기타 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이다.

특히, 이중 크랜베리주스 등은 전량이 이들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 수입되었는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총 수입량의 57.8%로 가장 많았고 칠레로부터 38.2%가 수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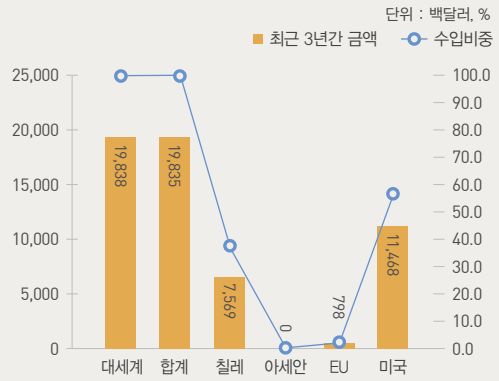
또한 그레이프프루트주스(브릭스값 20 이하)의 경우에도 총 수입의 99.5%가 이들 4개 협정 체약상대국(지역)으로부터 수입되었는데, 이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82.2%에 달하였다.

그림 13

그рей프프루트주스(브릭스값 20 이하) 및 크랜베리주스 등 수입비중 변화 추이



그рей프프루트주스 수입비중 변화



크랜베리주스 등 수입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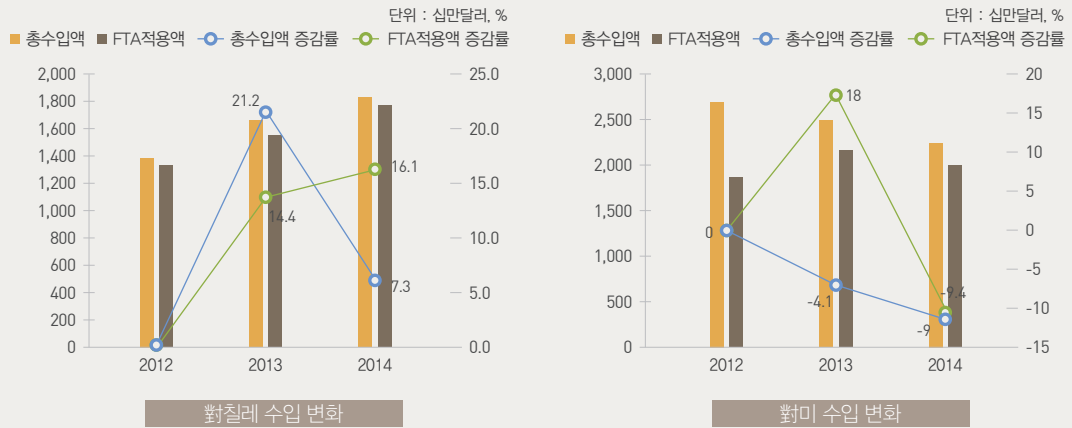
03

최근 3년간 협정별 신선 과일류 및 과일류 생산품 수입동향

1 신선 과일류

분석대상기간(2012~2014년) 중 신선 과일류는 총 수입액의 86.5%가 미국과 칠레로부터 수입되었는데,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4 칠레 및 미국 신선 과일류 수입 변화 추이



칠레로부터는 분석대상물품 11가지 중 1천만불 이상 수입된 품목이 5개 품목(오렌지, 레몬, 신선 포도, 크랜베리 등, 키위프루트)으로, 이중 오렌지는 양허품목이 아님에도 상당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키위프루트를 제외한 레몬과 포도 및 크랜베리 등의 품목은 관세양허가 진행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표6 최근 3년간 對칠레 신선 과일류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불, %

품명(HS코드)	기본세율	특혜세율			2012		2013		2014		합계	
		12	13	14	총수입액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오렌지 (0805100000)	50	50	50	50	4,225	0 (0.0)	3,382	0 (0.0)	2,638	0 (0.0)	10,245	0 (0.0)
레몬 (0805501000)	30	4.8	0	0	2,001	2,001 (100.0)	2,115	2,115 (100.0)	6,841	6,841 (100.0)	10,957	10,957 (100.0)
포도 (0806100000)	45	8.6	4.1	0	117,935	115,438 (97.9)	144,320	130,592 (90.5)	152,107	149,727 (98.4)	414,361	395,756 (95.5)
크랜베리 등 (0810400000)	45	8.7	4.2	0	1,345	1,344 (99.9)	5,484	5,484 (100.0)	10,976	10,976 (100.0)	17,805	17,804 (100.0)
키위프루트 (0810500000)	45	8.7	4.1	0	12,391	12,391 (100.0)	11,998	11,998 (100.0)	7,417	7,417 (100.0)	17,805	17,805 (100.0)

주 : () 내는 총 수입액 대비 FTA적용 수입 비중

미국으로부터의 신선 과일류 수입동향을 확인해 보면 분석대상물품 11가지 중 1천만불 이상 수입된 품목은 칠레와 같이 5개 품목(오렌지, 레몬, 신선 포도, 건포도, 프룬)으로, 오렌지의 경우 연도별로 관세율이 인하되고 있으나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4개 품목은 매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7 최근 3년간 對미 신선 과일류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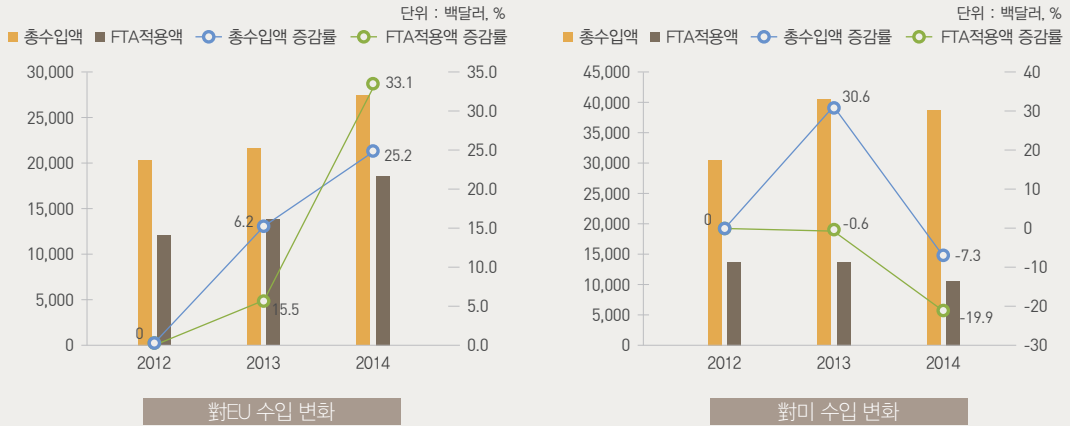
품명(HS코드)	기본세율	특혜세율			2012		2013		2014		합계	
		12	13	14	총수입액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오렌지 (0805100000)	50	30	25	20	210,929	143,027 [67.8]	186,169	157,759 [84.7]	156,281	130,100 [83.2]	553,378	430,886 [77.9]
레몬 (0805501000)	30	0	0	0	14,826	11,970 [80.7]	23,505	23,256 [98.9]	24,750	24,441 [98.8]	63,080	59,667 [94.6]
포도 (0806100000)	45	40.6	39.7	37	15,666	15,526 [99.1]	20,082	19,973 [99.5]	20,441	20,378 [99.7]	56,189	55,887 [99.5]
건포도 (0806200000)	21	0	0	0	11,665	10,369 [88.9]	10,679	10,677 [99.6]	11,958	11,650 [97.4]	34,302	32,696 [95.3]
프룬 (0813200000)	18	9	0	0	3,655	2,981 [81.6]	4,111	4,108 [99.9]	4,694	4,615 [98.3]	12,460	11,704 [93.9]

주 : ()내는 총 수입액 대비 FTA적용 수입 비중

2 잼·과실젤리류

분석대상기간(2012~2014년) 중 잼·과실젤리류는 총 수입액의 52.3%가 미국과 EU로부터 수입되었는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2년을 기준으로 2013년에는 대폭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5 EU 및 미국 잼·과실젤리류 수입 변화 추이



EU로부터의 잼·과실젤리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분석대상물품 2가지 중 감귤류 잼·과실젤리류의 경우 수입액이 2012년에 비해 2013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다시 증가한 반면, 기타 잼·과실젤리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FTA적용 수입의 경우에는 품목에 관계없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 표8 최근 3년간 對EU 잼·과실젤리류 수입동향

단위 : 천불, %

품명(HS코드)	기본세율	특혜세율			2012		2013		2014		합계	
		12	13	14	총 수입액	FTA 적용	총 수입액	FTA 적용	총 수입액	FTA 적용	총 수입액	FTA 적용
감귤류 (2007911000)	30	20	15	10	153	57 (37.2)	137	71 (51.8)	198	124 (62.7)	489	252 (51.5)
기타 (2007991000)	30	22.5	18.7	15	1,922	1,160 (60.4)	2,067	1,336 (64.6)	2,561	1,748 (68.2)	6,550	4,244 (64.8)

주 : () 내는 총 수입액 대비 FTA적용 수입 비중

미국으로부터의 잼·과실젤리류 수입동향의 경우 두 품목 모두 2012년에 비해 2013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다음해 소폭 감소한 반면, FTA적용 수입의 경우 감귤류 잼·과실젤리류는 수입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관세의 인하에 따라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지역)로부터의 잼·과실젤리류 수입에 있어 FTA특혜 적용 수입의 비중이 다른 품목에 비해 극히 낮다는 점은 공통적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 표9 최근 3년간 對미 잼·과실젤리류 수입동향

단위 : 천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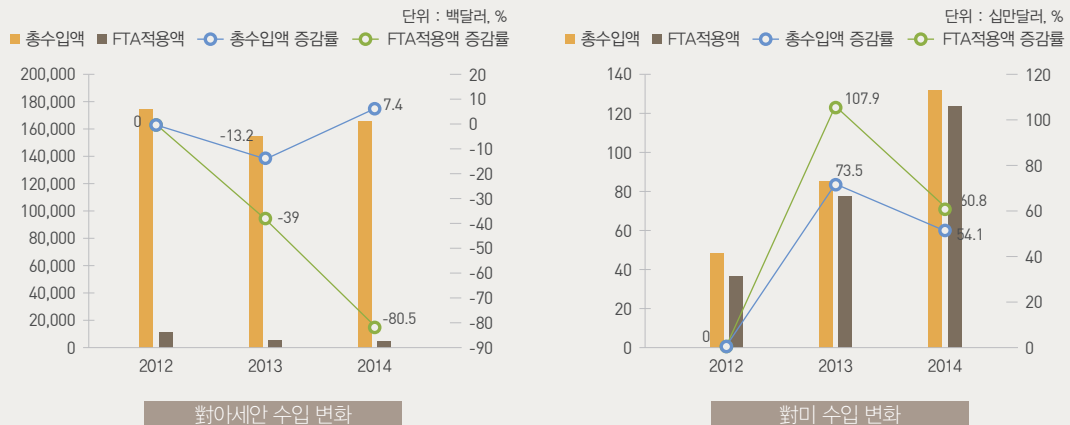
품명(HS코드)	기본세율	특혜세율			2012		2013		2014		합계	
		12	13	14	총 수입액	FTA 적용	총 수입	FTA 적용	총 수입	FTA 적용	총 수입	FTA 적용
감귤류 (2007911000)	30	27	24	21	380	197 (51.8)	389	244 (62.7)	332	228 (68.5)	1,100	252 (60.8)
기타 (2007991000)	30	27	24	21	2,793	1,232 (44.1)	3,754	1,176 (31.3)	3,509	910 (25.9)	10,055	4,244 (33.0)

주 : () 내는 총 수입액 대비 FTA적용 수입 비중

3 조제·저장처리 과실류

분석대상기간(2012~2014년) 중 조제·저장처리 과실류는 총 수입액의 78.6%가 아세안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는데,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은 2012년 이후 증감이 발생하고 있으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FTA적용 수입의 경우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물품은 극히 적은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2년 이후 적용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그림 16 아세안 및 미국 조제·저장처리 과실류 수입 변화 추이



아세안으로부터는 분석대상물품 5가지 중 1백만불 이상 수입된 품목이 2개 품목(파인애플, 복숭아)으로, 이중 파인애플은 최근 3년간 수입된 총량의 98.0%인 48백만불이 아세안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복숭아는 총 수입량의 8.4%인 1.3백만불이 수입되었다.

복숭아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50%인 반면 FTA특혜관세율은 0%로 아세안으로부터 수입된 전체 물량의 100%가 한-아세안 FTA특혜를 적용받아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10 최근 3년간 對아세안 조제·저장처리 과실류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불, %

품명(HS코드)	기본세율	특혜세율			2012		2013		2014		합계	
		12	13	14	총수입액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파인애플 (2008200000)	45	45	45	45	16,827	0 (0.0)	14,897	74 (0.5)	16,489	102 (0.6)	48,212	176 (0.4)
복숭아 (2008701000)	50	0	0	0	859	859 (100.0)	450	450 (100.0)	0	0 (0.0)	1,309	1,309 (100.0)

주 : ()내는 총 수입액 대비 FTA적용 수입 비중

미국으로부터의 조제·저장처리 과실류 수입은 분석대상물품 5가지 중 체리와 크랜베리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체리의 경우 수입액의 등락이 있고 FTA적용 수입액은 분석대상기간 중 평균 86.8% 수준이나 크랜베리 등의 경우에는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FTA특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11 최근 3년간 對미 조제·저장처리 과실류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불, %

품명(HS코드)	기본세율	특혜세율			2012		2013		2014		합계	
		12	13	14	총 수입액	FTA 적용	총 수입	FTA 적용	총 수입	FTA 적용	총 수입	FTA 적용
체리 (2008600000)	45	40.5	36	31.5	3,023	2,229 (73.7)	3,190	2,925 (91.7)	3,009	2,849 (94.7)	9,222	8,003 (86.8)
크랜베리 등 (2008930000)	45	40.5	36	31.5	1,054	1,046 (99.3)	4,668	4,420 (94.7)	9,470	9,468 (100.0)	15,101	14,934 (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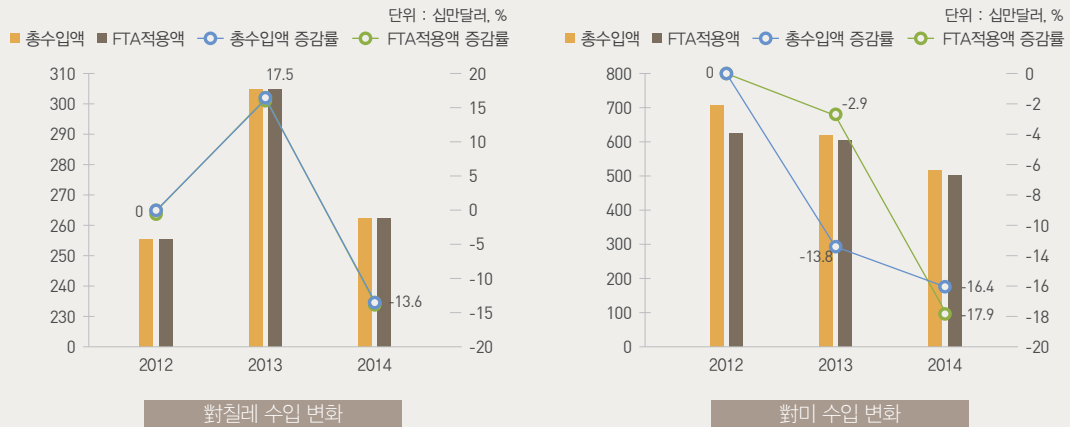
주 : ()내는 총 수입액 대비 FTA적용 수입 비중

4 과실주스류

분석대상기간(2012~2014년) 중 과실주스류는 총 수입액의 57.6%가 미국과 칠레로부터 수입되었는데,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2012년을 기준으로 2013년 대폭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는 다시 2012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입량 감소와 비례하여 FTA적용 수입액의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7 칠레 및 미국 과실주스류 수입 변화 추이



칠레로부터는 분석대상물품 20가지 중 1백만불 이상 수입된 품목은 3개 품목(포도주스 : 기타, 사과주스 : 기타, 기타주스)으로, 3품목 모두 2012년에 비해 2013년 일시적으로 수입액이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는 수입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FTA적용 수입액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수입량이 한-칠레 FTA특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표12 최근 3년간 對칠레 과실주스류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불, %

품명(HS코드)	기본세율	특혜세율			2012		2013		2014		합계	
		12	13	14	총수입액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포도주스 : 기타 (2009690000)	45	0	0	0	19,941	19,940 (100.0)	22,584	22,583 (100.0)	19,798	19,797 (100.0)	63,323	0 (0.0)
사과주스 : 기타 (2009790000)	45	8.6	4.1	0	5,054	5,054 (100.0)	5,996	5,995 (100.0)	5,313	5,313 (100.0)	16,363	(100.0)
기타주스 (2009891090)	50	0	0	0	589	589 (99.9)	1,167	1,166 (100.0)	704	704 (99.9)	2,460	(100.0)

주 : ()내는 총 수입액 대비 FTA적용 수입 비중

미국으로부터의 과실주스류 수입동향을 확인해 보면 분석대상물품 20가지 중 1백만불 이상 수입된 품목이 14개 품목에 달하는데, 특히 오렌지주스(냉동)의 경우 분석대상 4개 FTA협정 체결상대국(지역)으로 수입된 총량의 91.6%가 수입되는 등 과실주스류의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FTA적용 수입액도 최근 3년 대비 수입액의 96.9%에 달하였다.

대비 수입 과실주스류의 특징은 다른 협정들에 비해 FTA적용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인데 최근 3년 누계 1백만불 이상 수입된 과일주스류 14개 품목 중 FTA적용 수입비중이 90% 이상인 품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8개 품목에 이른다.

■ 표13 최근 3년간 대비 과실주스류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불, %

품명(HS코드)	기본세율	특혜세율			2012		2013		2014		합계	
		12	13	14	총수입액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총수입	FTA적용
오렌지주스(냉동한 것) (2009110000)	54	0	0	0	29,624	27,701 (93.5)	22,822	22,717 (99.5)	17,133	17,005 (99.3)	69,579	67,423 (96.9)
오렌지주스(냉동하지 않은 것) : 브릭스값 20 이하 (2009120000)	54	43.2	32.4	21.6	163	0 (0.0)	677	581 (85.9)	1,059	946 (89.3)	1,898	1,527 (80.5)
오렌지주스(냉동하지 않은 것) : 기타 (2009190000)	54	43.2	32.4	10.8	402	59 (14.7)	366	59 (16.0)	276	63 (22.7)	1,043	181 (17.4)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브릭스값 20 이하 (2009210000)	30	27	24	21	54	46 (84.0)	345	345 (100.0)	1,002	1,002 (100.0)	1,402	1,393 (99.4)
그레이프프루트주스 : 기타 (2009290000)	30	27	24	21	404	331 (82.0)	867	867 (100.0)	1,027	1,027 (99.9)	2,298	2,225 (96.8)
레몬주스 : 브릭스값 20 이하 (2009311000)	50	40	30	20	553	512 (92.6)	701	676 (96.5)	911	890 (97.7)	2,164	2,078 (96.0)
포도주스 : 브릭스값 20 이하 (2009610000)	45	0	0	0	861	397 (46.1)	1,130	1,027 (90.9)	657	600 (91.3)	2,648	2,024 (76.4)
포도주스 : 기타 (2009690000)	45	0	0	0	16,965	14,801 (87.2)	17,902	17,847 (99.7)	14,029	14,029 (100.0)	48,895	46,677 (95.5)
사과주스 : 브릭스값 20 이하 (2009710000)	45	40.5	36	31.5	2,899	2,403 (82.9)	3,294	3,294 (100.0)	3,742	3,697 (98.8)	9,936	9,384 (94.4)
사과주스 : 기타 (2009790000)	45	38.6	32.1	25.7	873	412 (47.2)	130	130 (99.6)	140	139 (99.3)	1,143	681 (59.6)
크랜베리주스 등 (2009810000)	50	40	30	20	239	184 (76.7)	641	492 (76.8)	267	252 (94.3)	1,147	928 (80.9)
복숭아주스 (2009891010)	50	45	40	35	439	365 (83.3)	378	378 (100.0)	398	398 (100.0)	1,215	1,141 (93.9)
기타주스 (2009891090)	50	40	30	20	17,051	14,622 (85.8)	11,559	11,396 (98.6)	8,519	8,255 (96.9)	37,128	34,273 (92.3)
혼합주스 : 기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2009901090)	50	45	40	35	1,286	520 (40.4)	1,299	727 (56.0)	2,050	1,175 (57.3)	4,634	2,422 (52.3)

주 : () 내는 총 수입액 대비 FTA적용 수입 비중

영연방 3국과의 FTA와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 개요

우리나라와 영연방 3국간 FTA가 2014년 12월 12일 호주에 이어 금년 1월 1일 캐나다도 발효되었으며 뉴질랜드와는 금년 3월 23일 정부간 정식 서명을 마치고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들 3국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에 비해 넓은 국토를 바탕으로 곡물과 축산업이 발달한 농업 강국이면서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내지 6만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미 FTA에 이어 이들 3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을 비롯한 국내 농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별 FTA의 농업분야 양허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이행 상황을 전망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02 FTA 협정별 주요 내용

1. 한·호주 FTA

호주는 밀과 보리, 수수 등 곡물류 외에 사탕수수와 면화 생산량이 많다. 특히 광범위한 초지에서 연간 4백만 톤 이상의 쇠고기와 2백만 톤을 넘는 닭고기, 그리고 백만 톤 이상의 양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의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은 21억 8천만 달러, 수출은 1억 달러였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쇠고기, 밀, 사탕수수당, 면화, 보리, 낙농품 등이다. 호주는 우리나라 최대의 쇠고기 수입대상국으로 2013~14년 평균 쇠고기 수입액의 절반이 넘는 8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호주와의 FTA에서 40%인 쇠고기 관세는 15년간 철폐되며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현행 관세율 1.8%인 밀은 즉시 철폐 대상이며, 보리는 양허제외 되었으나 맥아와 맥주맥은 관세율 쿼터(TRQ)를 배정하는 조건으로 15년 철폐이며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낙농품 가운데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양허제외하였지만 조제분유와 혼합분유는 각각 13년과 15년 철폐, 그리고 치즈는 TRQ 제공 조건부로 13년에서 20년까지 장기간 철폐한다. 또한 관세율 89%인 버터는 15년간 철폐하는 대신 TRQ를 제공하였다.

2. 한·캐나다 FTA

캐나다의 주요 농산물은 밀과 보리, 대두, 귀리 등 곡물류 외에 생산액 1위인 카놀라유(유채유)의 원료인 평지씨가 연간 천만톤 이상 생산된다. 특히 넓은 초지와 사료작물을 원료로 축산업이 발달하여 쇠고기(연간 약 120만 톤)와 돼지고기(약 2백만 톤), 닭고기(연간 약 백만 톤)가 주요 생산물이다. 낙농가는 감소하고 있으나 우유 생산량은 증가 추세이며 버터와 치즈, 분유 등이 생산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억 2천만 달러, 수출액은 7천만 달러였다. 주요 수입품목은 밀과 돼지고기, 쇠고기, 카놀라유(유채유), 낙농품, 보리 등이다.

캐나다와의 FTA 협정에서 수입액이 가장 많은 밀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보리는 TRQ 제공 조건부로 15년 철폐에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맥아는 TRQ 제공 대신 12년 철폐로 양허하였다. 쇠고기는 호주와 같이 15년 철폐되지만 긴급관세가 부과되며 돼지고기도 13년 동안 철폐되지만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카놀라유(유채유) 관세는 3년에서 7년간 철폐되며 낙농품은 분유와 치즈, 버터 모두 양허 제외되었다. 호주와 달리 천연꿀은 TRQ 조건부 현행세율이 유지되며 인조꿀은 10년 철폐다.

3. 한·뉴질랜드 FTA

뉴질랜드는 축산강국으로서 소 사육두수가 천만 두, 양 사육두수는 3천만 두를 넘는다. 과일은 사과와 키위, 포도가 많이 생산되며 채소류는 양파와 호박, 토마토 등이 생산된다. 식량작물은 감자와 밀, 보리, 옥수수 등이 주로 내수용으로 소비된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는 낙농품 생산은 우유가 약 7백만 톤, 전지분유 90만 톤, 탈지분유 40만 톤, 버터 50만 톤, 그리고 치즈가 약 30만 톤 정도 생산된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농축산물은 치즈를 비롯한 낙농품이 가장 많고 쇠고기와 키위, 기타 축산조제품 등이다. 그 밖에 소시지 가공 원료로 쓰이는 양장과 호박, 녹용도 최근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3월 양국 정부간 정식 서명을 완료한 뉴질랜드와의 FTA 양허안에 따르면 치즈 관세는 TRQ 제공 조건부로 12년에서 15년간 철폐되며, 특히 체다치즈는 TRQ 제공과 7년 철폐될 예정이다. 버터는 TRQ 제공과 10년 철폐 대상이다. 분유 가운데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연유는 TRQ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관세율을 유지하며 조제분유는 TRQ 조건부로 13년에서 15년간 철폐되고 혼합분유는 10년과 15년간 철폐된다. 쇠고기 관세는 호주 및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15년 철폐하되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키위 관세 45%는 6년간 철폐되며 호박은 계절관세로 양허하여 우리나라 수확기에는 현행세율 27%가 유지되지만 다른 기간에는 5년에 걸쳐 철폐된다. 그 밖에 사과, 배 등 과실류와 천연꿀과 인조꿀, 그리고 인삼류 등은 모두 양허 제외되었다.

03 영연방 3국과의 FTA 이행 전망

우리나라는 현재 호주산 쇠고기와 낙농품,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낙농품, 그리고 뉴질랜드산 낙농품과 쇠고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영연방 3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쇠고기 관세는 모두 15년간 철폐하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부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돼지고기는 뉴질랜드와 호주에는 양허(냉동 삼겹살) 하였지만 주요 수출국의 하나인 캐나다에는 13년 철폐와 긴급관세로 양허하여 수입 증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낙농품도 수출경쟁력이 3국 가운데 가장 낮은 캐나다에는 양허 제외하였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대부분 15년 이내에 철폐된다. 특히 낙농강국 뉴질랜드산 치즈와 버터, 분유는 호주보다 짧은 기간에 관세를 철폐하게 되어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3국의 소 사육두수는 약 5천만 두로 우리나라의 15배이며 쇠고기 생산량도 약 15배인 423만 톤에 달한다. 이들 3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생산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163만 톤으로 우리나라 수입량의 6배가 넘는다. 특히 쇠고기 생산비는 우리나라가 호주나 캐나다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영연방 3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될 경우 두가지 효과에 의해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관세 철폐에 따라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기존 쇠고기 수입국에서 가격이 낮아진 이들 3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이다.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한육우 생산이 감소하는 피해가 나타나게 된다. 그동안 쇠고기 국내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최근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한육우 농가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쇠고기 가격 하락의 소비대체효과로 인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들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쇠고기 수입 증가의 파급효과가 다른 품목들의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돼지고기와 낙농품 수입도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통해 국내 축산업은 물론 다른 품목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04 농업부문에의 시사점과 대응방안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육류 및 낙농품 수입이 본격적으로 개방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에도 점진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수입이 늘어났지만 일인당 소비량 증가와 인구 증가에 따라 국내 수요가 더 빠르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쇠고기 수입은 1995년 14만 7천 톤에서 2013년 25만 7천 톤으로 늘어났지만 국내 생산은 15만 5천 톤에서 26만 톤으로 늘어났다.

일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같은 기간 6.7kg에서 10.3kg으로 54%나 증가한데다 전체 인구도 4,509만 명에서 5,022만 명으로 11.4% 늘어났기 때문이다.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입도 각각 증가했지만 국내 생산은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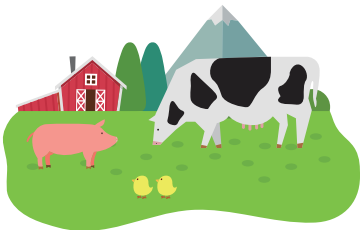
하지만 쇠고기와 돼지고기, 낙농품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영연방 3국과의 FTA 발효에 따라 국내 축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낮은 가격의 육류 및 낙농품 수입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국내 인구 증가 추세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일인당 유제품 소비량도 감소하면서 육류 소비량 증가세도 둔화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우선 기존 FTA 국내대책의 성과 평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FTA 협정이 타결될 때마다 급조되어 시행된 여러 정책들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정 구조개혁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의 운용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절감하면서도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과 농업농촌 체질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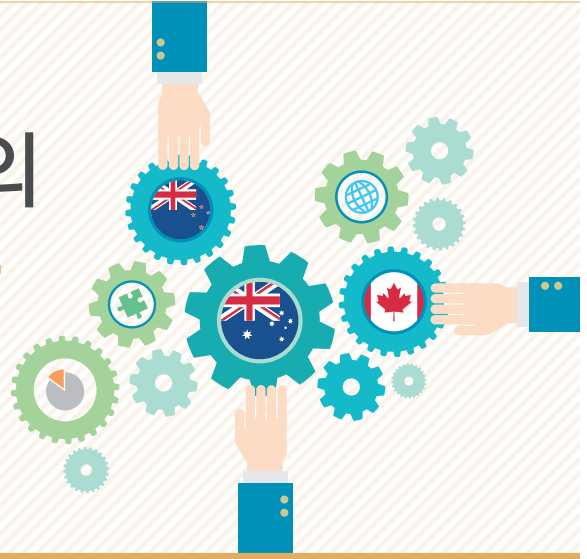
특히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와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그리고 농업부문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수입 농축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맞춤형 미래농업은 건강과 안전성, 환경보전 및 여가와 치유를 지향하는 농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농정 제도 정비와 함께 농촌지역의 창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축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산부문 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부문의 정비도 필요하다. 우선 육류의 품질등급제와 생산이력추적제를 확대 시행 및 정착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확산을 통한 식품안전성 제고가 시급하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시행 강화와 정착을 통해 축산물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품종 개량과 가공기술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주요내용과 시사점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의의와 주요 협상 내용

최근 한국은 수년 간 교착상태에 있던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양자 FTA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먼저 한·호주 FTA는 2010년 5월 제5차 공식협상 후 쇠고기, 낙농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의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단되었다가 2013년 11월 협상이 재개되었고, 2014년 4월 공식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발효되었다. 한·캐나다 FTA는 2008년 3월까지 13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캐나다 측의 쇠고기 관련 WTO 제소로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2013년 11월 제14차 공식협상이 재개되어 2014년 9월 정식서명을 마쳤고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뉴질랜드 FTA는 2010년 5월 제4차 공식협상 후 진전이 없다가 2014년 2월에 제5차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FTA 협상타결을 선언하였고 2015년 3월 정식서명까지 마친 상황이다.

영연방 3개국은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들로,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과의 교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¹⁾

1) 2012년 기준(World Bank) 호주의 1인당 GDP는 6만 7,512달러, 캐나다는 5만 2,413달러, 뉴질랜드는 3만 8,897달러였고,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 4,454달러였음.

즉 양측 간 교역에서 한국은 자동차, 석유제품, 전자제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영연방 3개국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출하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FTA에서 양국은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할 수 있었다.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에서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뉴질랜드 FTA에서도 뉴질랜드는 모든 품목에 대해 7년 이내에, 한국은 대다수 품목에 대해 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FTA 협상에서 한국의 관심품목이 되어왔던 승용차와 쇠고기에 대한 양허내용은 3개 FTA에서 유사한 수준이다. 승용차에 대하여 영연방 3개국은 3년 내 관세철폐를 약속하였고(뉴질랜드에서는 이미 무관세 품목), 쇠고기에 대하여 한국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하고 15년 철폐에 합의하였다.

단위 : %

표 1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구 분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국	호주	한국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즉시철폐	75.2/72.4	90.9/86.3	81.9/87.0	76.4/64.1	76.5/48.3	85.7/92.0
10년 내	94.3/94.6	100/100	97.5/98.4	97.5/98.7	93.9/78.3	100/100
그 외	4.3/5.3	-	0.7/1.2	0.3/1.3	4.3/20.1	-
현행관세 및 양허제외	1.4/0.2	-	1.8/0.5	2.2/0.0	1.8/1.6	-

주 1) (품목 수 비중/수입액 비중) 순으로 작성.

2) 그 외 유형에는 10년 초과, 부분감축, 계절관세가 포함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각 FTA 상세설명자료.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이미 무역자유화 수준이 높은 선진국과의 FTA였던 만큼 서비스 및 투자를 비롯한 비상품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호주 FTA에서 양국은 각각 미국과의 FTA 수준으로 서비스 및 투자시장을 개방하고 ISD 조항을 도입하였으며, 정부조달에 대한 시장접근을 약속하였다.²⁾

2) 호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회원국인바 이번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호주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교역·투자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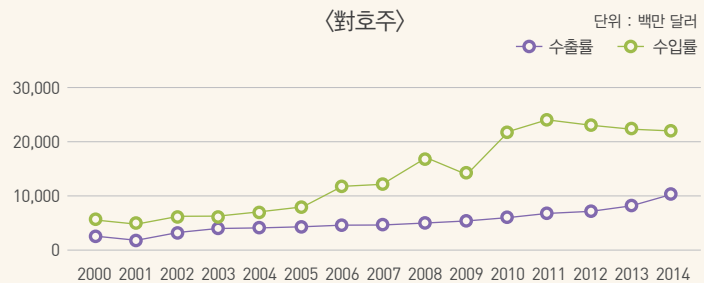
한·캐나다 FTA에서도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 및 투자 규범을 채택하고 ISD를 규정하였으며, 상호간 WTO GPA보다 높은 수준의 중앙정부 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한·뉴질랜드 FTA에서 뉴질랜드는 사전투자심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고,³ 시청각 공동제작 촉진을 위해 양국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FTA 부속서로 포함하였다.

또한 FTA 체결을 계기로 현재 운영 중인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개선하고 별도의 비자쿼터(일시고용입국,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도입하기 위한 합의서한을 교환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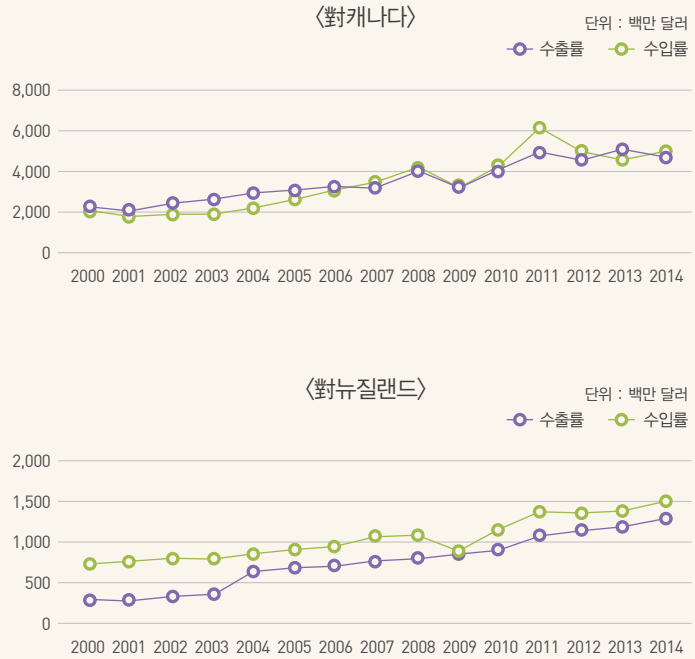
200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한국과 영연방 3개국 간 교역규모는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확대되고 있다.⁵ 수출보다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규모가 큰 관계로 이들 3개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호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이기도 하나 최근 3년간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림 1 한국과 영연방 3개국 간 교역 현황



- 3)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천만 뉴질랜드달러 이하로 설정 하였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5천만 뉴질랜드달러로 상향함.
- 4)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대한 연간 쿼터를 현재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연수·교육 및 고용기간 제한 조건을 완화하였음.
- 5)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각국 수출에서 호주는 11위, 캐나다 24위, 뉴질랜드는 43위였으며, 수입에서는 호주 7위, 캐나다 20위, 뉴질랜드가 40위였음.

그림 1 한국과 영연방 3개국 간 교역 현황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통계

각 국가와의 주요 교역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하여 주로 석유제품과 승용차를, 캐나다에 대해서는 승용차 및 관련 부품, 무선전화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연방 3개국의 높은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한국의 수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출품목도 일부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수입은 3국 공통으로 천연자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호주에서는 가축육류(쇠고기), 뉴질랜드에서 기타 석유화학제품(메틸알코올), 캐나다에서는 펄프의 수입도 많다. 이러한 교역상황에서 한국은 이번 FTA를 통해 영연방 3개국에 대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3개국에 비해 한국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약화될 수 있다.

표 2

한국과 영연방 3개국 간
주요 교역품목 (2014년 기준)

구 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명	비중(%)	품명	비중(%)
대호주	경유	24.0	철광	27.6
	승용차	17.3	유연탄	24.6
	휘발유	8.9	원유	10.6
	철구조물	8.4	가축육류	4.8
	제트유 및 등유	6.9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3.1
대캐나다	승용차	44.0	유연탄	24.5
	무선전화기	6.5	동광	10.5
	자동차부품	5.5	철광	5.3
	타이어	1.9	우라늄	5.1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1.7	펄프	4.7
대뉴질랜드	휘발유	25.4	기타 석유화학제품	22.5
	승용차	16.0	원목	22.4
	경유	15.8	낙농품	9.2
	건설중장비	4.3	가축육류	8.1
	제트유 및 등유	4.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5.9

주 1) 품명은 MTI 4단위 기준.

2) 비중은 2014년 한국의 대각국 전체 수출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통계.

한편, 최근 5년 동안 한국과 영연방 3개국 사이의 투자규모는 미미한 편이었다. 2014년 3개국의 대한민국 투자(IFDI)는 7억 1,28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직접 투자의 3.8% 수준이었고, 한국의 3개국에 대한 투자(OFDI)는 약 24억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6.9%를 차지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호주의 경우 한국의 의약산업, 부동산·임대업,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에 주로 투자하였고 캐나다는 금속산업과 금융·보험업, 뉴질랜드는 건설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에 대한 직접투자는 광업을 중심으로 그 밖에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활발한 편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연방 3개국과의 FTA에서 ISD를 협정문에 명시하고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투자 규범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과 이들 3개국

사이의 투자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투자 분야의 교류 확대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장기적으로 향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단위 : 백만달러, 신고금액 기준

표 3
한국과 영연방
3개국 간 투자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외국인직접투자 (FDI)	518.3 (4.0)	829.8 (6.1)	546.8 (3.4)	438.6 (3.0)	712.8 (3.8)
해외직접투자 (OFDI)	1,734.6 (5.0)	6,077.8 (13.3)	5,308.4 (13.4)	2,610.7 (7.3)	2,404.3 (6.9)

주 : () 한국의 전체 FDI와 OFDI에서 3개국 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시사점

이미 개방수준이 높은 영연방 3개국과의 FTA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한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하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이번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대국 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점유율을 확대·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영연방 3개국의 FTA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호주는 미국, 일본과의 FTA를 발효 중이고 중국과의 FTA도 타결하였다.⁶ 캐나다는 EU와의 FTA를 마무리하였고, 뉴질랜드는 2008년부터 중국과의 FTA를 발효 중이다(표4 참고).

제조업 품목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세 및 비관세 혜택을 누리면서, 영연방 3개국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상태에 있다. 지난 10년 동안 크게 상승한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비교하면 2013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은 각각 4.1%, 1.6%, 4.1%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그림 2 참고).⁷

6) 한·호주 FTA가 2014년 12월 12일에 발효되면서 20일 만에 2년차 감축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2015년 4월 1일에 2년차 감축이 시작되는 일·호주 FTA보다 관세철폐 시기가 3개월 빠르게 됨

7) 2002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수입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0.1%, 4.7%, 8.0%였고, 한국제품의 점유율은 3.7%, 1.4%, 2.4%였음

이에 대응하여 한국기업들은 우선 내부적으로 상대국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도록 수출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품목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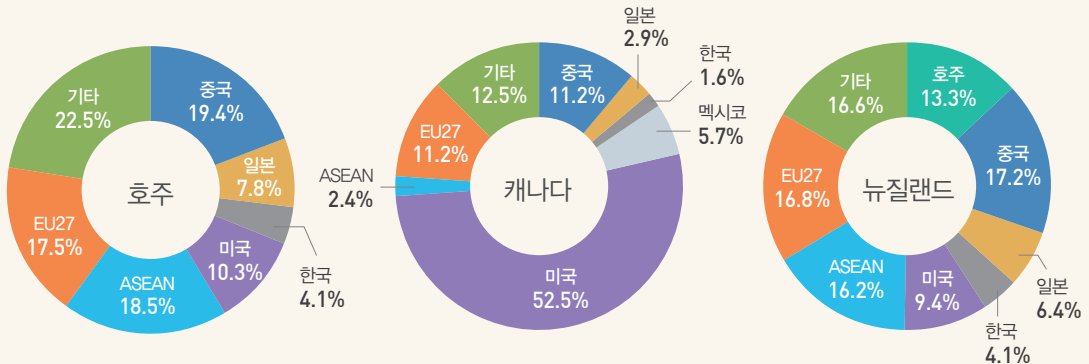
영연방 3개국의 FTA 체결 현황 (2015.6.24 기준)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발효	뉴질랜드('83.1), 싱가포르('03.7), 미국('05.1), 태국('05.1), 칠레('09.3), 뉴질랜드·ASEAN('10.1), 말레이시아('13.1), 한국('14.12), 일본('15.1)	NAFTA('94.1), 이스라엘('97.1), 칠레('97.7), 코스타리카('02.11), EFTA('09.7), 페루('09.8), 콜롬비아('11.8), 요르단('12.10), 파나마('13.4), 온두라스('14.10), 한국('15.1)	호주('83.1), 싱가포르('01.1), 태국('05.7), P4('06.5), 중국('08.10), 호주·ASEAN('10.1), 말레이시아('10.8), 홍콩('11.1)
타결	중국('14.11)	EU('14.8)	GCC('09.10), 한국('14.11)

자료 : 각국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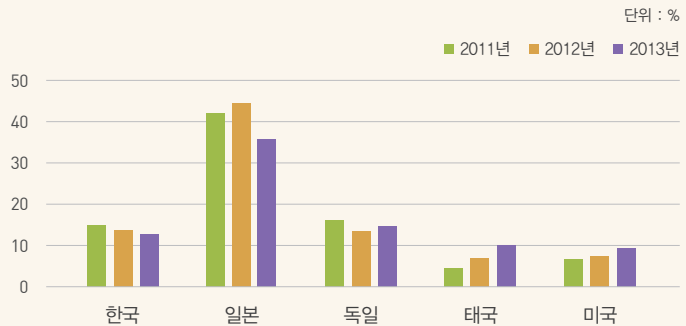
영연방 3개국의 전체 수입에 대한 국가별 시장점유율 비교 (2013년 기준)



자료 : UN Comtrade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또한 우리 기업들은 이번 FTA를 계기로 영연방 3개국 수입시장에서 경쟁국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1~2013년 기간 동안 호주의 수입자동차시장 현황을 보면, 한국산 자동차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 참고).

그림 3 호주 수입자동차시장점유율 현황 (2011~2013)



주 : 여기서 자동차는 SITC 기준.

자료 : 호주 외교통상부, 『Composition of Trade Australia』(2013-14)을 토대로 저자 작성.

이러한 상황에서 한·호주 FTA는 향후 태국산 일본차에 의해 잠식당하던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을 회복하고 우리기업들이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캐나다와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FTA를 체결하였고, 뉴질랜드와의 FTA를 일본과 미국보다 한 발 앞서 타결하였다는 점도 앞으로 한국제품의 시장선점효과 확보·유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번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이행하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3개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인바 향후 제조업 관련 부가 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한국의 대세계 부가가치 교역 증대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연방 3개국 FTA 의미와 전망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영연방 3개국 FTA 추진 동향

2015년 3월 한·뉴질랜드 FTA가 정식서명을 마쳤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호주(2014.12.12.발효), 캐나다(2015.1.1.발효)에 이어 뉴질랜드까지 영연방 3개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으며 현재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위한 국회비준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3건의 FTA는 한때 협상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013년 협상이 재개된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발효 중인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더불어 가장 마지막으로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까지 연내 발효될 경우 3개의 FTA가 협상 재개 2년 만에 타결에서 발효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한·미, 한·EU FTA를 잇는 선진국과의 FTA로서 상품,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이다. 특히 3개국은 우리나라가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의 참여국이자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3개국과의 FTA를 통해 북미와 유럽에 이어 오세아니아까지 FTA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영연방 3개국의
FTA 추진 동향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발효	9건 15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태국, 칠레, 뉴질랜드·ASEAN,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11건 15개국 NAFTA,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EFTA,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파나마, 온두라스, 한국	9건 14개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P4(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중국, 호주·ASEAN,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타결	1건 1개국 중국	1건 28개국 EU	2건 7개국 한국, GCC

영연방 3개국 경제의 특징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현황

영연방 3개국 중 인구규모가 가장 큰 캐나다의 경우, 총 인구는 약 3,550만 명으로 우리나라(5,040만 명)보다 작은 규모이며,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1/11 수준인 450만 명에 그친다. 비록 인구규모는 크지 않지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모두 구매력이 높은 안정적인 시장으로 IMF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호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1천 달러에 달하며, 3개국 모두 4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다.

즉, 생활수준과 소비여력이 높은 전형적인 선진국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전통적으로 영연방 3개국은 미국, 영국 등 유럽권 국가의 영향력이 컸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과 물적, 인적 교류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기대되는 국가이다.

표 2

영연방 3개국의 경제현황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명목 GDP(십억 달러)	1,444	1,789	198	1,417
1인당 GDP(달러)	61,219	50,398	43,837	28,101
인구(백만 명)	23.6	35.5	4.5	50.4

자료 : IMF WEO(2015.4월)

수출규모면에서 살펴볼 때 영연방 3개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2014년 기준으로 수출규모가 가장 큰 호주의 경우 우리의 11위 수출국이며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각각 24위, 43위에 랭크되었다.

이처럼 수출비중이 작은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연방 3개국과의 FTA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원자재를 보유한 자원

부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3개국과의 교역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와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로는 호주로부터 철광, 유연탄, 원유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유연탄과 펄프, 뉴질랜드는 원목의 주요 공급처로서 우리나라는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등에 필요한 원자재를 3개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영연방 3개국 중에서도 자원 수입규모가 가장 큰 호주에 대해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 중이다.

단위 : 억 달러, %

표 3
우리나라의 對영연방
3개국 교역현황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014	2015.1~5	2014	2015.1~5	2014	2015.1~5	
수출	금액	102.8	49.7	49.2	19.9	17.3	5.4
	(증가율)	7.5	22.8	-5.5	-9.7	16.1	-30.3
	순위	11	10	24	23	43	49
수입	금액	204.1	70.6	54.4	18.3	15.3	5.6
	(증가율)	-1.8	-20.2	15.4	-17.0	9.4	-14.4
	순위	7	7	20	24	40	37
무역	금액	307.0	120.3	103.6	38.2	32.6	11.0
	(증가율)	1.1	-6.7	4.4	-13.3	12.8	-23.1
	순위	7	8	23	25	40	42
수지	금액	-101.3	-20.9	-5.3	1.5	2.0	-0.2
	순위	243	242	220	38	57	207

자료 :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FTA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한편 영연방 3개국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농산품의 경우 수입 관세율이 3.0%(평균 MFN 실행관세율) 미만이다. 특히 뉴질랜드는 평균 MFN 실행세율이 2.0%로 13.3%인 우리나라에 비해 관세 장벽이 낮고 대부분의 수출 주력 상품에 대해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FTA로 인한 즉각적인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

표 4

영연방 3개국의 평균 실행
관세율(simple average
MFN applied) 비교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농산품	1.2	15.9	1.4	52.7
공산품	3.0	2.3	2.2	6.8
전품목	2.7	4.2	2.0	13.3

자료 : WTO

다만,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FTA를 통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측은 자동차에 대해 FTA 발효 즉시 또는 3년 내에 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여 이미 2014년 12월 발효 당시 중소형 가솔린 자동차를 포함한 주력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그 외에도 디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이 2016년부터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므로 향후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호주의 시장 환경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포드, GM,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2016~2017년에 호주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는 곧 호주의 자동차 수요가 수입 중심체제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FTA의 관세인하효과에 따른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캐나다 역시 승용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캐나다 국내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수입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에는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인 크라이슬러, 포드, GM은 물론 일본 자동차 메이커인 혼다, 토요타의 생산기지가 있으나, 인건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전기료 인상 등으로 생산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승용차의 6.1% 관세 철폐시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는 상위 10대 교역국이 미국과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시아 국가일 정도로 아시아와의 교역비중이 높다. 2013년 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보수야당이 들어서 이후 FTA 추진을 본격화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과의 FTA도 완료한 상태이다.

호주는 철광, 유연탄, 원유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자 농축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이다. 반면 공산품에 대한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주로 이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99.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발효 후 10년 이내에 94.3%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을 포함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 수단을 확보하였다. 우리나라의 對호주 수출은 주로 석유제품과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다. 석유제품은 기존 무관세 품목으로 FTA의 영향은 없지만 자동차의 경우 5%의 관세가 철폐되어 FTA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호주가 EU와의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최근 호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철강재 구조물, 튜빙 등 금속제품과 기계, 가전제품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실제로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2015.1~4월 기준)로 수입의 절반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에서 미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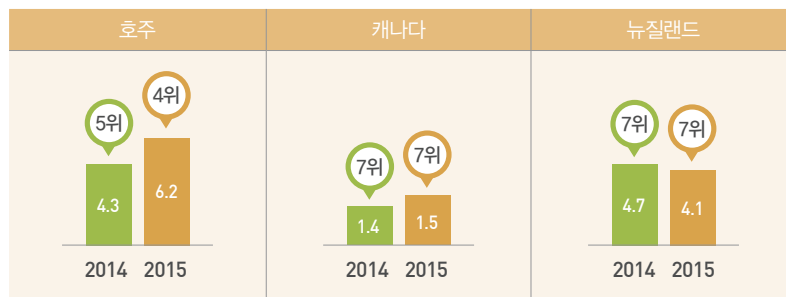
HS코드 2단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송기계(HS 87), 기계(HS 84), 광물·연료(HS 27), 전기전자(HS 85), 플라스틱제품(HS 39), 귀금속·주화(HS 71), 광학제품(HS 90), 의약품(HS 30), 철강제품(HS 73), 가구류(HS 94) 등 상위 10개 품목 모두에서 미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캐나다 수입시장 내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5%를 기록하며 미국(53.8%), 중국(11.8%), 멕시코(5.6%), 독일(3.1%), 일본(2.9%), 영국(1.8%) 등에 이어 2009년부터 꾸준히 7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가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수출 상위 20개 품목(HS 10단위 기준, 무세품목 제외) 대부분이 3년 이내 철폐된다. FTA를 통해 NAFTA 국가들과 관세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캐나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캐나다로서는 한·캐나다 FTA가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인 만큼 중국, 일본에 비해 유리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표 5

우리나라의 영연방
3개국 수입시장 점유율



주1 : 순위는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순위

주2 : 2015년은 2015.1~4월의 누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Global Trade Atlas,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반면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1차 산업에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촬영지로 농축산업 뿐 아니라 영화산업과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굴뚝이 없는 국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양국 간의 FTA는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두 나라의 교역을 보다 확대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뉴질랜드 FTA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한국 수출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에 뉴질랜드 수출품의 96.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뉴질랜드 내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공작기계, 지게차 등의 건설용 중장비와 냉장고 등 전자기기 품목에 부과되는 5%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의 지진 재건 사업과 뉴질랜드 내의 도로 등의 인프라, 주택건설로 인한 뉴질랜드의 건설 수요 확대는 건설 자재와 설비 수출 전망을 밝게 한다. 한·뉴질랜드 FTA는 관세철폐를 통한 상품 분야의 수출 확대 뿐 아니라 포괄적인 FTA 추진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인력교류, 농림수산분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시청각 공동제작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뉴질랜드와의 경제협력이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영연방 3개국 이 공산품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관세율이 낮아 FTA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를 비추어 볼 때 기존 수출 품목의 수출 증대 외에도 새로운 상품이 수출되고, 거래기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FTA는 관세 인하 외에도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기업들은 FTA를 토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따라서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통해서도 품목다변화와 수출기업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이러한 효과가 가시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입측면에서 보면, 영연방 3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낙농품·육류·과실에 대한 관세인하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품목의 가격 인하와 다양화가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에서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하는 반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관세가 인하되고 있었다. 쇠고기 시장은 수입산끼리 경쟁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한·호주, 한·캐나다 FTA를 통한 관세인하는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낙농품의 경우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 수입시장에서 미국과의 점유율 확대 경쟁으로 낙농품의 가격 인하가 예상되며 다양한 제품이 공급되어 소비자 후생 증가가 예상된다.

이처럼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의 이점을 살리면서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로 평가된다. 다만 3개국이 모두 선진국 시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구조, 비즈니스 문화, 소비자 성향 등이 상이한 만큼 각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FTA를 활용할 때 시장 진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연방 3개국은 전통적으로 영국 등 유럽국과와 미국의 영향력을 컸던 시장이지만 최근 아시아와의 교류가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FTA가 체결되었다. 앞으로는 이들과의 FTA를 디딤돌로 삼아 양국의 무역구조가 다변화되고 비즈니스가 다양화되기를 기대해본다.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제20류 주 규정 해설



오수교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위원

1. 개요

이 글은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¹ 제20류 주(Note) 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고 또한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관세율표 제20류는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이 제2001호부터 제2009호까지 총 9개 호가 다음 표1과 같은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제품의 주재료가 되는 신선 상품의 대부분은 채소(제7류)와 과실·견과류(제8류)가 차지하며, '식물의 그 밖의 부분'에는 돼지감자와 고구마(제0714호), 감귤류·멜론의 껍질(제0814호), 향신료(예 : 제0910호의 생강, 감자가루(제1105호), 채두류나 과실·견과류의 가루(제1106호), 땅콩(제1202호)이나 해바라기 씨(제1206호), 의료용 식물(제1211호의 안젤리카) 등이 포함된다.

1) 한-미 FTA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말한다.

2) 종전 '저장'이란 용어를 2013년도 관세율표 개정에서는 '보존'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춰 표기한다. 참고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각종 FTA협정과 관세율표의 용어 표현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저자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사용하는 관세율표에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현행법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모든 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관세율표가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 맞춰 다음 표2도 현행 관세율표의 표기 내용에 맞췄다.

즉, 제20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²처리한 상품이 포함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상품이 해당하는 류(Chapter)나 호(Heading)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에 한정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³

제20류의 9개 호 중에서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제20류 주 규정의 적용에 직접 관련되거나 쟁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1 관세율표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의 분류체계	
번호	품명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상품은 제외한다)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상품은 제외한다)
2006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é)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가목에 따르면 제7류·제8류·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는 제20류에서 제외한다.

2. 채소(제7류)나 과실과 견과류(제8류)에 허용되는 조제나 보존 처리 방법

주 규정의 해석에 앞서 제20류 조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채소(제7류)나 과실과 견과류(제8류)에서 허용되는 조제나 보존 처리 방법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과 다르게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경우에는 주로 제20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은 '냉장한 것'과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냉장한 것

상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상품(예 : 감자)은 그 온도가 영상 10℃ 정도로 강하여 유지될 때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냉동한 것

상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 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

③ 건조한 것

상품의 내부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여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햇빛에 의하여 직접 건조하거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탈수·증발·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④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이산화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보존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것(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위 ④항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0711호로, 과실과 견과류는 제0812호로 각각 분류한다. 이들 호로 분류되는 상품은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염수와 같은 보존 용액에 담겨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큰 통(cask)이나 배럴(barrel) 또는 트레이(tray)나 오픈형 용기(open-lath type container)에 포장⁴되어 있으며, 주로 가공용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20류로 분류된다.



▲ 큰 통(cask)



▲ 배럴(barrel)

4) 일반적으로 직접 식용에 적합한 상품은 밀폐형의 작은 유리병이나 캔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어 있어 구분할 수 있다.

3.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제20류 주 규정 해설

이 협정 제20류 상품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은 주 규정과 해당 호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2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Chapter)이 적용된다.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신선 상품을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품목별원산지 기준에서 요구하는 세번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 류에서 규정한 주에 해당하면 2단위 류(Chapter)가 변경되었더라도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므로 이 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제20류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2 관세율표 제20류의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 부분의 조제품
주	냉동하거나, 물·간수(염수) 또는 천연 주스에 넣어 포장(캔에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건조 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냉동·포장 또는 복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제2001호부터 제2008호까지에 해당하는 과실·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더욱이, 복숭아·배 또는 살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과실과 혼합되어 포함되어 있는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상품으로 취급된다.
2001-20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과 제0701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⁵⁾)에서 제2001호부터 제200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⁶⁾
20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제1202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008.19호부터 제2008.99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2008.19-2008.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008.19호부터 제2008.99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2009.11-2009.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제0805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009.11호부터 제2009.39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2009.41-2009.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에서 제2009.41호부터 제2009.80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5) '제0701호[감자(신선하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 협정 품목별원산지기준 제1부 일반주해 제1조다목에 따라서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세번(예 : 제0701호)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6) 이 협정 품목별원산지기준 제1부 일반주해 제1조나목에 따라서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한다.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 부분의 조제품
2009.90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에서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에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제20류 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상품(제2009.11호부터 제2009.39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제2009.80호에 해당하는 크랜베리 주를 제외한다)에서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크랜베리 주스 혼합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상품에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제20류 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상품에서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하나의 비당사국의 단일 주스 성분 또는 주스 성분들이 원액으로 그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6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p>

이 주 규정에 따라 2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Chapter)을 적용하지 않는 조제나 저장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냉동한 것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채소나 과실과 견과류를 냉동한 것을 제7류나 제8류에서 허용하는 조제나 보존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신선한 채소(제7류)나 과실과 견과류(제8류)를 냉동하였다하여 류(Chapter)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향신료, 감자가루(제1105호)나 과실과 견과류의 가루(제1106호) 또는 제12류(예 : 제1202호의 땅콩이나 제1211호⁷⁾의 특정 상품이 냉동한 것을 조건으로 제20류로 변경되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⁸⁾ 이런 경우에는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제2004호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것은 단순히 냉동한 상품이 아니라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2005호로 분류되기 위한 조제나 보존 처리를 한 후에 추가적으로 냉동한 것이므로 다음의 (2)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 조건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7)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호의 용어에서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냉동하여 제1211호로 분류할 수 없다면 이 경우는 주로 제2008호로 분류한다.

8) 이 글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선 상품을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물·간수(염수) 또는 천연주스에 넣어 포장(캔 포장을 포함한다)한 것



▲ 염수에 넣은 올리브



▲ 사워크라우트

이 주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2005호와 제2008호로 분류되는 일부 상품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2005호에서 직접 관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올리브

소다용액(soda solution)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장기간 침지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올리브를 단순히 일시적으로 염수에 보존 처리한 것은 제0711호로 분류한다)

② 사워크라우트(sauerkraut)

양배추를 작게 절단하여 염(소금)에 절여서 일부를 발효시켜 제조한 것

이 규정에 따라 채소인 올리브(신선한 올리브는 제0709호에 해당한다)를 소다용액과 같은 화학물질이나 시럽 또는 알코올과 같은 용액에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것이 제20류로 변경되면 원산지 상품이 된다.

그러나 물·간수(염수) 또는 천연주스에 넣어 포장 한 것은 비록 그러한 조제나 보존 처리에 따라 제20류로 변경되더라도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제2005호의 올리브의 경우에는 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한 것⁹⁾은 원산지 상품으로, 염수에만 침지한 것은 비원산지 상품이 된다.

다만, 사워크라우트와 같이 염(소금)에 절여서 일부 발효된 것까지도 이 주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우선 염(salt)에 절인 것은 염수(brine)에 넣은 것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발효도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김치와 유사한 상품이라 생각하면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또한 사워크라우트는 발효 중에 주로 향신료로 사용되는 캐러웨이 열매·후추열매·노간주나무열매 등을 첨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9) 신선한 올리브는 맛이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염수나 식초, 기름, 물, 소다용액(알칼리용액)에 수개월 저장하여 쓰고 짠맛을 뺀 후에 식용한다.

참고적으로 채소나 과실과 견과류 등을 물에만 보존하여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양파나 파는 매운 맛을 빼거나 또는 도라지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껍질을 벗긴 사과나 밤은 변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에 담그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제나 보존 방법이 제7류나 제8류 또는 제12류 등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방법이라 하여 제20류로 변경되었다더라도 이 경우에는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이 된다.

다음으로 제2008호에는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보존 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과 종자를 포함한다)'과 같은 상품이 분류된다.

이 사례도 앞에서 설명한 제2005호의 채소와 같으며, 시럽·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과 종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HS 해설서에서도 제2008호에 분류되는 보존 처리방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예시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주의 규정을 정한 것은 물·간수(염수) 또는 천연주스에 넣어 포장(캔 포장을 포함한다)한 것에만 한정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제7류나 제8류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조제나 보존 처리된 것은 이를 밀폐용기나 캔에 포장하였다하여 제20류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는 HS 해설서 제7류와 제8류의 총설에서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설령 포장만으로 세번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원산지 상품이 되지 않는다.

(3) 건조 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HS 해설서 제2008호에 열거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상품이 이 특례 규정을 이해 하는데 좋은 사례라 여겨진다.

- ① 아몬드·땅콩·빈랑나무(areca)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함유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 ② 볶은 땅콩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트로 구성된 “땅콩버터”(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볶은 아몬드

즉 제8류나 다른 류(예 : 제11류·제12류 등)에 해당하는 식용에 적합한 견과류 등과 같은 상품을 건조 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것은 비록 이러한 공정에 따라 제20류로 변경되더라도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 볶은 땅콩

이 주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볶는 중이나 볶은 후에 '식염·향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예 : 설탕이나 꿀)을 함유하거나 입힌 것'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라 할 수 있다.

물론 품목분류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볶은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질을 첨가하거나 입힌 것도 모두 제2008호로 분류된다. 그러나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이 부분은 분리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 꿀 시럽과 소금을 입힌 볶은 땅콩

즉, 볶은 것에 식물성 기름을 첨가하거나 입힌 경우에는 이 주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 외의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입힌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물론 그 양의 많고 적음이나 실질적 변형 여부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으나, 첨가하거나 입힌 것이 관능검사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이나 조제나 보존 처리된 상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소금을 입힌 볶은 마카다미아

같은 의견에 따라 위 ②항이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페이스트로 만든 “땅콩버터”는 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원산지상품이 된다. 이 경우도 분쇄라는 추가적인 공정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1항부터 3항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추가적으로 ‘냉동·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거친 상품이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꿀 시럽을 입힌 볶은 마카다미아

4. 결론

이와 같이 해석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미 FTA 협정은 다른 FTA 협정과 달리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부 일반주해 제1항사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불인정 공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¹⁰

이 일반주해 제1항사목이란 '제1류부터 제40류까지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제1류부터 제40류까지의 상품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류나 호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하나의 예를 들면 비료(제31류)는 4단위 호(Heading)의 변경기준(CTH)이 적용되는데, 질소비료(제3102호)를 단순히 용기 한 개의 총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제3105호)한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이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포장하면 제3102호에서 제3105호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 주 규정이 예외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법'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면, 예외법은 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일반적인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외례(예외규정)를 정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구별하는 실익은 '예외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예외규정을 임의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 이 주 규정은 문맥에서 언급하는 것에 따라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예외법을 확대해석하는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의 기본 취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양당사국의 상품교역을 촉진한다는 한-미 FTA 협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 주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또 다른 실질적인 변형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면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될 소지가 분명하고 적용 기준의 명확화를 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FTA 협정의 목적으로 보아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끝으로 제20류 주의 규정이나 품목별원산지기준에 관하여 이 글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예에 따라 해석하면 적용에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10) 한-미 FTA 협상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번변경이 발생했다라도 상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에서 배제된다는 '불인정공정'을 도입하려는 반면에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양 당사국간에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불인정공정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해석의 단초를 찾을 수 있는데 다음에 설명하는 비료(제31류)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참고하면 이해가 되리라 여겨진다.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관세청은 2009년부터 발굴한 FTA활용 사례들에서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하여 수출증대로 연결한 사례 등 유의미한 내용을 그룹화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발간하였으며, 동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FTA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벤치마킹하여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별로 활용사례도 같이 수록하였다.

01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리 모델 (한-EU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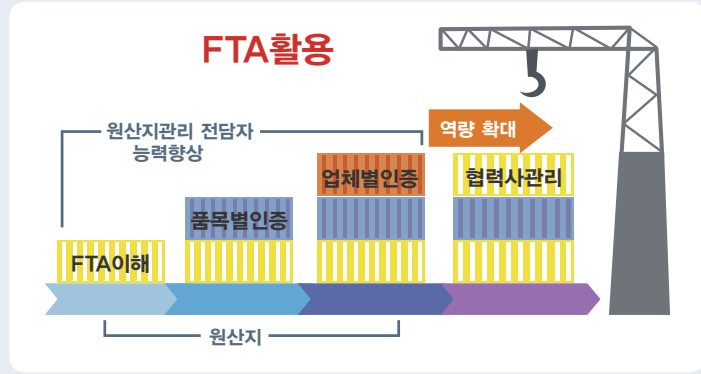
개요

- 생산자부터 수출자까지 원산지관리에 대한 '학습전략'을 수립하고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관리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FTA 활용기업으로 성장하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

- 'FTA에 대한 이해 ▶ 품목별 인증수출자 ▶ 업체별 인증수출자 ▶ 원산지관리 역량 협력사 확산'으로 이어지는 원산지관리 학습모델
- 수출자 뿐만 아니라 구매·생산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단계에 걸친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
- 원산지검증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신규협정 발효와 동시에 FTA 특혜를 활용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리 모델



활용 및 확산분야

- 협력사가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 특히 한-EU FTA를 활용시에는 필수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리 모델 활용사례 01

생체분해성 합성봉합원사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

기업 및 제품소개

- D사는 치과용, 정형외과용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하여 세계 80여개 국가에 수출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설립년월	매출액('13)	수출액('13)	종업원수	주요 생산물품
1999.03	337억원	315억원	약 200여명	치과용 충전재 수술용 봉합원사

- 제품소개 : 생체분해성(흡수성) 합성 봉합원사(HS 제3006.10호)
 - 수술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체에 무해하게 체내에서 분해되는 수술용 실
 - 국내시장규모 약 330억원, 세계시장규모 22,606억원에 달하는 생체분해성 합성 봉합원사는 제품화가 어렵고 개발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세계 7개 기업만이 생산·판매가 가능하고, 주로 EU, 인도 등으로 수출함

■ 국가별 수출현황

기준 : '13년, 단위 : 억원

수출국가	EU	중국	미국	인도	터키	기타	계
수출금액 (비중 %)	52 (17)	47 (15)	34 (11)	24 (7)	13 (4)	145 (46)	315 (100)

FTA 활용전 상황

- (활용계기) 첫걸음이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다!

FTA설명회, 인증수출자 교육 등 각종 FTA교육 기회가 주어지다

(M사) 우리회사 누구도 관심없는 FTA, 인도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세관) 봉합사는 수출시 상대국에서 관세율 혜택 가능합니다. 한-미 FTA 활용시에는 물품취급수수료도 면제되는데요.

(M사) FTA 꽤 괜찮은데? 한번 해보재! 우선, 세관 설명회부터 참석해볼까? ('11. 3)

장애 요소

- 총체적 난국을 접하다.

환경분석	세부 분석내용
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체결국 수출 증가, 해외 바이어의 원산지증명 요구, 중국 경쟁 업체 진출로 인한 기업경쟁력 강화 필요 등 FTA활용이 절실 ➔ 그러나, 의료용품의 관세율이 0%로 FTA에 미온적 대응
누가, 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3역(개발, 생산, 마케팅) 중소기업으로 원산지관리 전문가 부재 ● 수출은 계속 되는데 언제 해야 하는건지?

환경분석	세부 분석내용
무엇을 어떻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원산지관리시스템이 꼭 필요한지, 혜택을 받으려면? ➡ 해외영업팀장(C팀장)의 걱정과 한숨만 증가

극복 방안

1. (극복과정) 원산지관리 능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FTA적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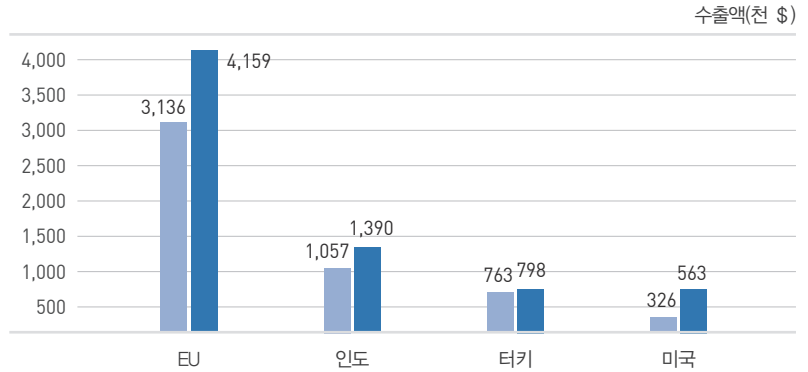
- **STEP1 (초급)** 나는 대한민국 '품목별 인증수출자'대!
 - 관세청의 중소기업 대상 'FTA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11.04)
- **STEP2 (중급)** 나는 대한민국 '업체별 인증수출자'대!
- **STEP3 (중급)** FTA 알수록 알차대!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되대!
 - 부서장급 직원이 솔선수범하여 어렵고 복잡한 원산지기준, 인증수출자 제도 등 각종 교육과 설명회에 참가하여 전문지식 습득
- **STEP4 (고급)** 원산지검증도 두렵지 않다
 - FTA-PASS를 이용한 원자재코드생성 등 정확한 원산지 관리 및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로 검증에 대한 두려움 해소
 - ▶ 지속적인 FTA교육, 원산지검증 대비 컨설팅 실시, 부서간 협업시스템 구축
- **STEP5 (고급)** 이제는 새로운 FTA발효가 기다려진다
 - 멕시코, 중국과 FTA 체결 즉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활용 효과

- (FTA-PASS 활용) FTA-PASS를 ERP 대응으로 활용, 체계적인 제품관리 기반 마련 및 부서별 BOM 통일로 정확한 원산지 관리 가능
 - * 향후 ERP 도입 시 FTA-PASS와의 연동 예정
- (수출증대) FTA 활용으로 봉합원사에 4~8%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별 수출실적이 FTA활용 전 대비 32~73% 증가

국가별 수출증가 현황(통합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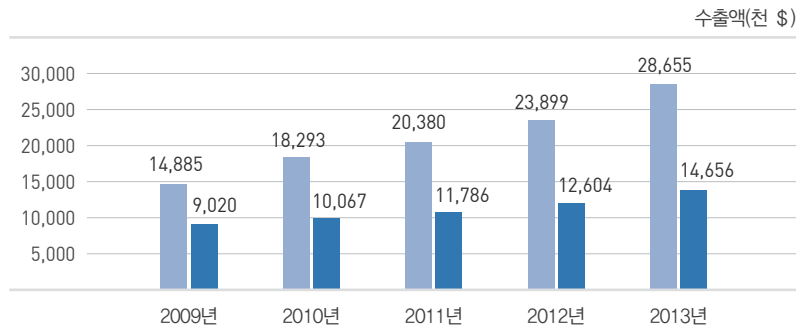
■ 활용 전
■ 활용 후



* EU : 32%, 인도 : 31%, 터키 : 4%, 미국 : 73% 증가

전체 및 통합원사 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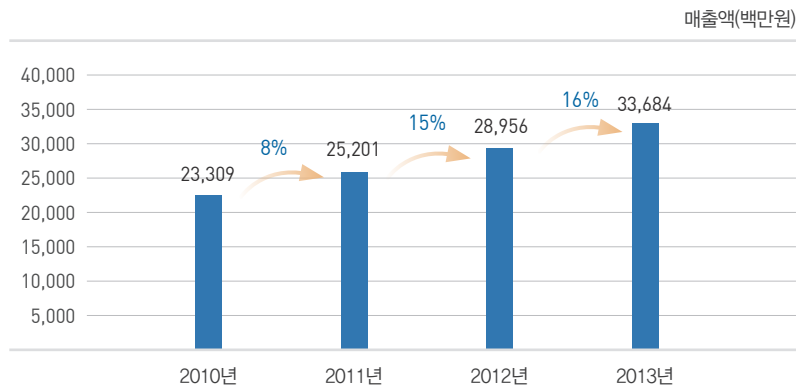
■ 전체
■ 통합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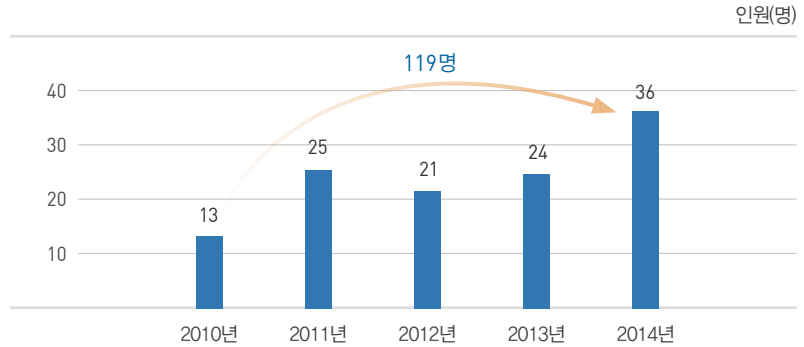
* 연평균 전체 수출 14%, 통합원사 수출 10% 증가

- (고용창출) 수출의 호조는 기업 매출액 증가, 인력채용으로 이어져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9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現정부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용창출에 기여

M사 매출현황



연도별 신규 채용 인원



시사점

인증수출자 인증기회는 원산지 관리에 대한 자신감 획득 가능

-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 FTA 체결국 확대 및 생산물품 다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품목별 인증수출자에서 업체별 인증수출자로의 선제적 전환
- (관리자주도의 FTA활용) 부장급 관리자들을 원산지 관리전담자로 지정하여 FTA교육 수료, 원산지 사후관리 등 원산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하여 사내 전체의 FTA 활용에 대한 관심제고

* 향후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시험 지원 예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리 모델 활용사례 02

중견기업의 롤 모델, 원산지 인증수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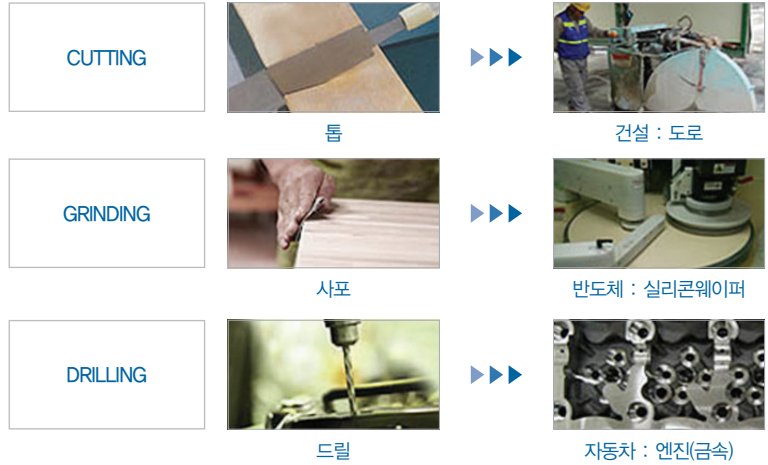
기업 및 제품소개

- E사는 다이아몬드공구만을 38년간 전문 연구제조하여 80여개국으로 수출하는 중견기업으로서 적극적인 FTA활용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공구전문 기업으로 지속 성장

* 특허 : 242건(해외 : 123건), 신규 등록중 : 103건

다이아몬드공구 사용분야

- 제품소개 : 다이아몬드 공구 (제6804.21호)
 - 반도체, 태양광, 자동차, 전기, 항공기, 건설 산업 등 피삭재 가공에 필수적인 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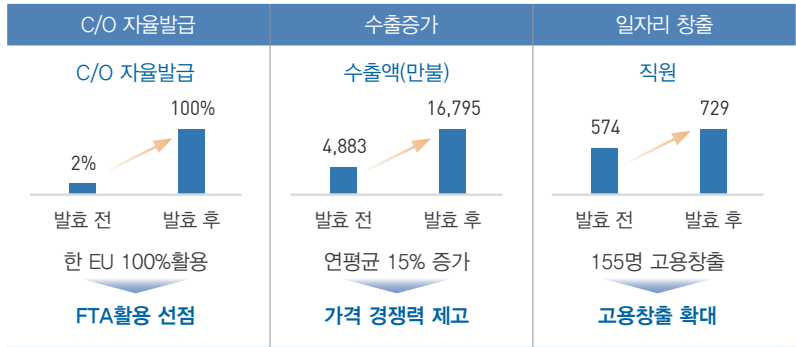
장애 요소

- (가격경쟁력 약화) 다이아몬드공구는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전략 품목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들어 저가의 중국제품이 EU 등 주요 시장에서 밀려들면서 가격경쟁이 격화되는 현상
- (한-EFTA 검증) 한-EFTA 검증완료 후 본격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FTA협정문 및 인증수출자 규정 학습

극복 방안

- ①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 자체적인 FTA관리시스템 개발 완료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 ② 협력업체까지 관리하는 SYSTEM化 완료
 - FTA전담관리자 운용으로 사내 및 협력사 등과 업무협조
 생산, 영업 외 전문 관리부서를 두는 것이 어려운 중견기업의 형편이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15년 이상 수출입통관실무를 담당한 사내 경력직원을 FTA전담관리자로 지정하여 사내 및 협력사 관리

활용 효과



시사점

-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수출입통관 경력이 오랜 직원을 FTA 전담관리자로 지정하여 전문가로 육성 ▶ 효과적인 사내 및 협력사 FTA전문가로 활동
- 협력사에 원산지관리업무 지원 및 FTA 교육 실시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견기업으로서의 모범사례임

02

합리적 의심 사전차단 원산지검증 회피 모델 (한-EU FTA)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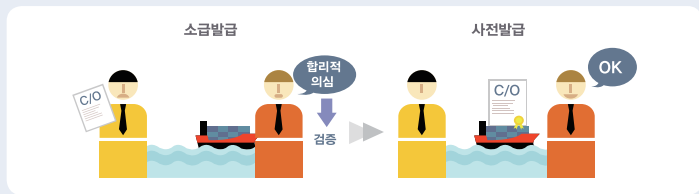
- 원산지 증명서의 높은 사후발급률은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를 사전발급하여 원산지 검증을 회피하는 모델
- ※ 원산지 증명서는 사전 발급이 원칙적이며 예외적으로 사후발급 허용

비즈니스 모델

-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란 물품의 생산과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출 이후 일정 기간 내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함

-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나,
 - 이미 제조·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수입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소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reasonable doubts)'을 제기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보다 사전발급을 활용하여, 원산지 검증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핵심
- ※ 특히 한-EU FTA는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에 합리적 의심 경향 강함

합리적 의심 사전차단 모델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 한-아세안, 한-인도 및 한-EU FTA에 유용

합리적 의심 사전차단 원산지검증 회피 모델 활용사례 01

사전발급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다

기업 및 제품소개

- A사는 주로 TV 모니터의 프레임, 지지대를 수출하는 업체
 - EU 수출금액 14억불(2013)에 달하며, 주요 수출국가는 슬로바키아(51% 이상), 협정관세 대상물품 수출금액은 1.8억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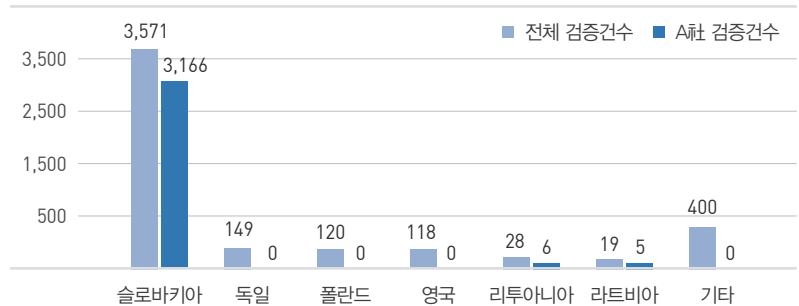
- 제품소개 : TV의 측면커버 사이드프레임(COVER SIDE FRAME)과 지지대



장애 요소

1. FTA 특혜적용 수출물품의 특정국가(슬로바키아) 검증요청 과다

- A사의 對 슬로바키아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요청 건수는 총 78회, 3,166건 ('12~'14.6월)으로서 EU국가 전체 검증요청건의 89%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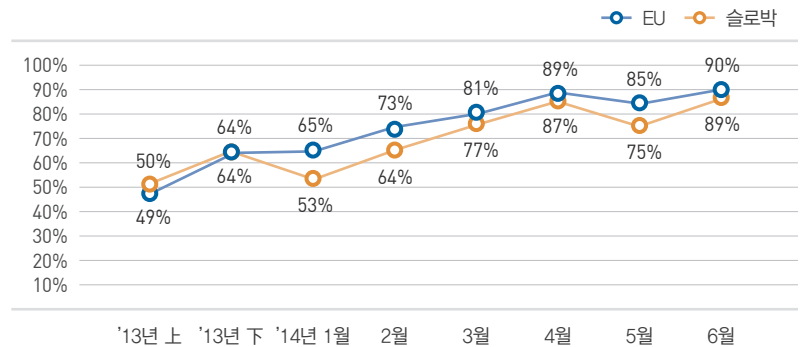
극복 방안

- 수출물품에 대한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 지연으로 슬로바키아 통관 후에 FTA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원인
 - ① A사가 수출하는 협정적용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신고서(C/O) 사전 발급율을 향상 도모
 - ② 슬로바키아 세관의 검증요청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부 차원 대응 실시

활용 효과

1. 원산지 신고서 사전발급율 향상

- 對 슬로바키아 협정적용 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고서 사전발급율이 '13년 50%에서 '14년 89%로 향상



2. 슬로바키아 세관의 검증요청 감소

- 슬로바키아 세관이 A社の 협정관세 사후신청건 수품목에 대한 무차별 검증에서 신규품목에 대한 검증 요청으로 개선
 - '13년도 2,225건 ▶ '14.8월 현재 854건으로 58%로 검증요청건 감소

시사점

- 원산지증명서 사전 발급의 중요성 인식 계기
- 원산지 검증 소요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됨

03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 모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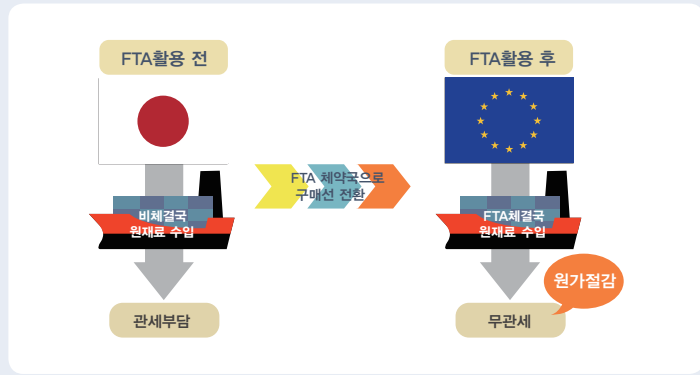
- 국내에 대체 원재료가 없거나 생산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해야하는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

- 비체약국에서 수입하던 원재료(관세有)를 FTA 체결국 재료(관세無)로 구매선을 전환
 - FTA 체약국에서 수입할 경우, 협정세율 적용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곧 판매가격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FTA 체약국산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한국산 재료로 간주하는 누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보다 용이해짐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 모델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 (유의사항) 원재료를 FTA 체약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운송비 등)과 협정관세 혜택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 모델 ▶ 활용사례 01

FTA활용, Step by Step

기업 및 제품소개

- K사는 터치패널과 차단기,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같은 산업용 자동 제어장치와 인버터, 서보드라이브, 모션 컨트롤러, 로봇으로 이루어진 산업용 모터 구동장치를 개발·생산하는 기업
- 제품소개

SERVO	INVERTER
	
<p>시간과 거리가 변화 또는 정밀하게 회전수 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며 주로 공장 자동화 장비에 사용</p>	<p>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 (역변환장치)</p>

FTA 활용전 상황

- 동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으로 對美 수출금액은 전체 수출금액의 약 70% 수준이며, 수출물품의 실행세율은 2.7%이나 한·미 FTA 발효 후 협정

세율 0%가 적용되어 상대국 수입자의 관세절감 효과가 연간 426백만원('11년 기준) 상당으로 FTA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장애 요인

1.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맡을 것인가?

- 각 부서에서는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FTA와 관련 있는 부서인 구매, 총무, 영업 중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업무를 진행할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힘

2. FTA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

- FTA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 예를 들어, 원산지관리는 무엇이며, 'MADE IN KOREA'는 한국산이지, 역내는 무엇이고, 역외는 무엇인지?

3. FTA 굳이 왜 해야 하는가...?

- 다른 중소기업에서는 FTA 단어의 뜻도 모르는 곳이 많은데 서둘러 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때 움직이지 지금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분위기가 회사 내에 지배적임

4. 사후에 검증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극복 방법

- 세관의 컨설팅으로 원산지관리에 대한 이해 증진
-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활용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 수출검증에 대비하여 평택세관을 통한 사후관리 컨설팅 완료
- 비체약국 수입원재료에서 체약국 원재료로 변경 검토

수출증대 및 관세절감 예상액

FTA활용 효과

- 수출증대 및 관세절감 효과

년도	수출(예상)금액	실행세율	협정세율	관세절감예상액
2011년도	208억원	협정 미 발효		
2012년도	297억원	2.7%	0%	8억원
2013년도	425억원	"	"	11.5억원
2014년도	608억원	"	"	16.5억원

※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할 경우 '12년부터 3년간 총 1,330억원 상당의 對美수출이 예상되며,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2.7%에서 협정세율 0%로 적용되어 3년간 약 36억 원의 상대국 수입관세 절감 효과 기대(수출예상금액은 '10년 대비 '11년 對美 수출 증가률인 143% 적용)

시사점

- 원자재의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을 통해 FTA 협정관세 적용시 매년 1억원 정도의 수입관세 절감 효과 기대
 - 관세철폐 및 원가절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FTA 활용과 변화

기업 및 제품소개

- L사는 1956년 국내 최초 자동차용 타이어를 생산한 이래 70여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 현재보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 제품소개
 - 승용차용 타이어(HS 제4011.10호), 버스용 및 화물차용 타이어(HS 제4011.20호)

'11년~현재, 단위 : 건, 백만불

FTA별 수출개요

FTA	건수	금액		비고
		금액	비중(%)	
한·미	7,469	488	47.3	최대 수출시장
한·EU	2,389	178	17.2	영국(743), 독일(599), 벨기에(214) 등
한·아세안	685	26	2.5	태국(235), 싱가포르(173), 말레이시아(144) 등
한·인도	40	1	0.09	-
한·EFTA	96	9	0.87	스위스(63), 노르웨이(33)
기타	3,586	326	31.6	호주(695), UAE(445), 일본(226) 등

FTA 활용전 상황

- 거대수출시장인 미국과 EU FTA 발효 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음
 - 미국 수출이 수출물량의 약 47%를 점하고 있어 한·미 FTA발효로 상당한 혜택(한·미 FTA 발효로 관세율이 4% ▶ 3.2% ▶ (5년 후) 0%로 철폐되는데 발효 후 첫해에만 3천9백만불 상당의 관세혜택이 예상)을 볼 수 있으나 자율증명 원산지증명방식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
 - EU 수출이 수출물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EU FTA 발효로 상대국 바이어가 관세 혜택(한·EU FTA 발효로 관세율이 4.5% ▶ 3.3% ▶ 0%(3년 후)로 철폐되는데 발효 후 첫해에만 2백1십만불 상당의 관세 혜택이 예상)을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수

- FTA를 활용하기 위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없고, 업체 내 FTA 활용 분위기 또한 조성되어 있지 않음

극복 방법

- 세관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FTA 활용

- 주요 수출물품(HS 제4011호)에 대한 원재료 소요내역 및 가공공정을 확인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안내
- 품목별인증을 받을 타이어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CTH)에 해당되어, 완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세번의 4단위가 바뀌지 않을 경우 국내산을 증명하기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실무상 거래명세서 징구)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
-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FTA-PASS 안내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여 2010년 초반부터 인증수출자격 취득을 위한 BOM 정비 및 수입원재료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정보의 확인을 위한 추가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정확한 DATA 체계 완비
 - ▶ 2010년 11월 3개 협정(한·EU, 한·아세안, 한·EFTA) 2개 품목(HS 제4011.10호, 제4011.20호)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활용 효과

- (정량적 성과) 한·EU 및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실질적인 매출액 증가(FTA 발효 직후부터 100% 활용)

단위 : 천불

한·EU FTA

	기간	전체 매출액	유럽	매출액 대비 비중
발효 전	'11년 1월	55,092	10,494	19%
	'11년 2월	43,445	7,847	18%
	'11년 3월	57,612	10,079	17%
	'11년 4월	58,960	10,543	18%
	'11년 5월	53,205	11,112	21%
	'11년 6월	59,920	13,940	23%

기간		전체 매출액	유럽	매출액 대비 비중
발효 후	'11년 7월	47,629	14,547	31%
	'11년 8월	59,106	17,996	30%
	'11년 9월	53,486	13,373	25%
	'11년 10월	59,849	12,507	21%
	'11년 11월	64,558	15,282	24%
	'11년 12월	60,073	10,763	18%

단위 : 천불

기간		전체 매출액	미국	매출액 대비 비중
발효 전	'11년 12월	60,073	26,674	44%
	'12년 1월	58,858	27,872	47%
	'12년 2월	64,196	32,636	51%
발효 후	'12년 3월	66,625	32,902	49%
	'12년 4월	66,900	36,774	55%
	'12년 5월	76,363	39,656	52%

- (정성적 성과) FTA로 인한 수출물량 증대에 따른 국내 제2공장 준공 및 운영
 - ▶ **타이어 A공장(2년간 5,500억원을 투자하여 '12. 03. 시험가동 시작. 자동차/부품/타이어를 통틀어 국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타이어 업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생산 공장 중 하나)

시사점

(모델화 의견)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구매선 전환

- (수입) 설비 및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EU 및 미국보다 5~10% 가량 저렴한 FTA 미체결국인 일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FTA 체결로 인하여 수입관세분 8%가 상쇄되어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
- (수출) 가격 경쟁력 강화 : FTA협정세율을 적용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로 생산비용 절감은 곧바로 판매가격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미국, 유럽 및 여러 FTA 체결국에서의 매출증대와 함께 향후 중국과의 FTA 협정체결을 대비한 중국 공장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상호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증가, 매출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04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임가공 전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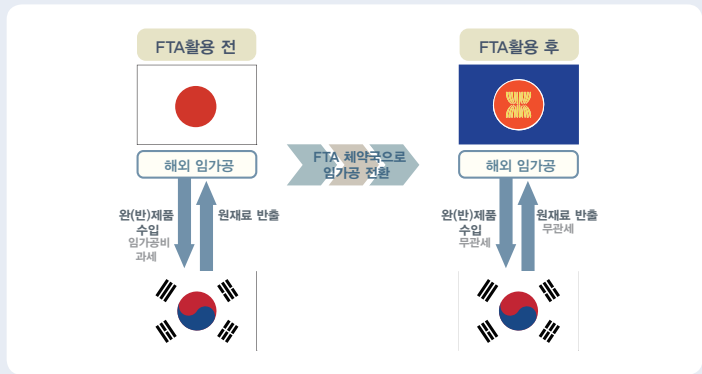
개 요

- 비체약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가공을 FTA체약국으로 이전하여 원재료 수출시, 완(반)제품 수입시 모두 FTA 활용 모델
- ※ 해외에 임가공 공장을 설립하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임가공을 수행하고 있는 아국기업 상당수가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비즈니스 모델

- 인건비 등으로 해외에서 임가공 후 완(반)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FTA를 활용하게 되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완(반)제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
- ※ 관세법 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 시에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만 면세
 - 원부자재 뿐만 아니라 왕복운임 및 임가공비를 포함한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협정관세가 적용되므로 원가절감이 가능
 - 원부자재 수출시, 완(반)제품 수입시 양방향 FTA활용 가능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임가공 전환 모델



활용 및 확산분야

- 종전 임가공국과 수출 대상 임가공국의 임금 등 여건이 유사한 경우 활용 유리

한-아세안 FTA, 해외임가공에도 도움이 되요

기업 및 제품소개

- M사는 산업용 안전화(HS 제6403.40호)의 국산 부자재(갑피 등)를 해외 임가공을 거쳐 완성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

FTA 활용전 상황

- 국내산 원부자재를 중국 청도 등 임가공을 통한 신발 갑피(HS 제6406.10호)를 제조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안창·밑창 및 법랑 코팅처리한 스틸TOE를 삽입 안전화 완제품(제6403.40호)을 제조·생산 후 국내납품 및 일부 수출
- FTA는 수출 완제품에 대해서만 활용

장애 요인

- 중국 임가공시 매년 인건비 상승, 임가공비 30%이상 인상 및 관세부담
- 국산 원부자재 공급업체의 품목분류 등 원산지 관리능력 열악

극복 방법

- 세관에 통관애로 신청
 - 국내 소규모 영세 원부자재 생산 납품업체 15개사의 24여종 상품
- 세관 지원팀 기업현장 방문 1차 FTA 활용 지원
 - 수출자 및 15개 납품업체(24개품목)가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지원을 위해 기업현장 방문 합동 컨설팅 실시
 - ▶ 가죽, 원단, 실 등 일부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재검토

- 원산지결정을 위한 제2차 품목분류 지원
 - 세관, 분석실 및 수출자 합동 개별원부자재 품목분류 최종 확정
- 既 수출건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완료
 - 원부자재 납품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으로 기 선적건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 완료(11개 업체)

FTA활용 효과

- 동사는 사양산업인 신발(안전화)을 제조하면서 자체 기술개발 및 중국 해외 임가공을 통한 인건비 등 원가절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 중국 인건비(인건비 상승 연 20%) 및 관세부담 등으로 해외임가공을 FTA 체결국인 인도네시아로 이전함으로써 연 20%이상 원가절감 효과 시현
- 정량적 성과 : 전체 수출금액 20%이상 증가
 -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300%증가('12년 상반기)
 - ※ '12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전면 철수시 수출실적 추가 증가

시사점

- (특징) 국산 원부자재를 사용 해외임가공을 거쳐 신발(안전화) 완성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기존 해외임가공을 중국에서 FTA체결국(인도네시아)으로 이전하여 인건비 및 관세특혜로 원가절감 등을 통한 수출 및 이윤 증대
 - 국내 영세 원부자재 생산업체(15개업체)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수출입 동시에 한-아세안 FTA활용을 극대화
- (시사점) 수출업체의 매출증가는 국내 영세 원부자재 납품업체의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로 이어져 1+15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모델로 해외 임가공 비중이 높은 기업에 확산 가능

05

FTA활용을 위한 생산시설 국내 유턴 모델

개요

- FTA 비체결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이 한국에 유턴(U-turn)하여 미국, EU 등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 국가에 직접 수출 모델

비즈니스 모델

- 한국이 미국, EU 등 다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FTA허브국가가 됨으로써, 생산비 감축 등의 이유로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게 될 경우 FTA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효과 향유 가능*

* 최근 해외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인건비 및 생산비 상승 등에 따라 국내로 유턴(U-turn)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증가

생산시설 국내 유턴 모델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 (참고사항) 의류산업의 경우 對미 수출시 6~32%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국내 회귀를 통한 對미 수출 전략 수립 가능

국내 유턴을 통해 옛 영광을 재현하다

기업 및 제품소개

- N사는 국내 제품 생산은 물론 베트남에 소재하는 자체 공장이 있으며, 일부 품목은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지의 협력공장에서 하청 생산하는 등 연간 약 400만 켤레 이상 신발을 생산·수출하는 글로벌 신발 업체



스포츠화

등산화

FTA 활용전 상황

-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내수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거대 경제권인 EU, 미국 등으로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최근 발효된 한-EU·한-미 FTA로 낮아진 관세 혜택 효과를 누리기 위한 FTA 활용과 중국 인건비 상승, 원부자재 상승 등으로 중국 공장의 국내 유턴을 통한 국내 첨단생산시설 확충이 현안과제

장애 요인

- 신발산업에서 'Made in Korea'의 브랜드 가치가 중국산보다 훨씬 높는데다 최근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한국을 떠났던 글로벌 신발업체들이 기술력과 관세혜택을 가진 한국으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싼 인건비 등으로 생산기반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많이 넘어가 국내 제조기반이 열악해져 있어 주문을 소화해내기 어렵고,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돌아오기 힘든 상황

극복 방법

- ‘신발 집적화단지’ 유치를 통한 국내 유턴 기반 조성
 - 한국신발산업협회를 중심으로 1년간에 걸쳐 관계기관인 부산시,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진해 경제자유 구역청, 도시공사 등에 신발산업의 환경무해성을 입증·주장하여, 산업변경단지 계획 변경 승인
 - U턴 기업의 경우 입주를 위한 부지 및 인력 확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최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10만㎡ 규모의 새로운 신발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이 확정
- ▶ 신발산업 집적화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학산은 중국으로 진출한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공장을 정리하고 이 단지로 이전

FTA활용 효과

- 제품 경쟁력 및 국내 생산량 증가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향후 5년간 예상 재무제표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 16% 지속 성장을 예상 (순이익 6억원 ▶18억원으로 3배 증가)
 - 국내에 신규 생산라인 증설시 현재 月25,000족의 국내 생산규모가 月75,000족으로 확장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공장운영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고용창출 효과
 - 국내 U턴(생산라인 2개 증설)으로 인해 기존 국내 직원 97명의 3배에 해당하는 235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



시사점

- 생산공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고용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FTA... “생산물량을 국내로 U턴 시키다”

기업 및 제품소개

- O사는 국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드레스와 바지 등의 여성용 니트 의류를 만들어 90% 가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DKNY, 빅토리아 시크릿 등 유명 패션 브랜드가 주요 고객임
- 제품소개

물품	사진	주요수출국	기본세율	협정세율	세제혜택
PULLOVER (제6110.30호)		미국 97.55%	최저 6% ~ 최고 32%	즉시철폐	최고 32%
DRESS (제6104.44호)		미국 94.11%	14.9%	즉시철폐	14.9%

FTA 활용전 상황

- 국내 생산라인 부족으로 한-미 FTA효과 미비
 - '07년 가격채산성 문제로 해외공장으로 이전. 미국으로 직수출

생산국가	생산라인	생산비율	공장
Vietnam	85 lines	68%	○○ 외 2곳
Indonesia	26 lines	20%	△△ 외 1곳
Phipippines	10 lines	8%	▲▲, ○○
Korea	4 lines	3%	A사, B사, C사

- 국내 생산비율은 총 생산의 3%로 FTA 효과 미미
- 밀려드는 미국 Buyer
 - 높은 세제혜택으로 인한 미국 바이어의 문의 쇄도
 - 관세혜택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극복 가능

국내생산물량 증가 계획

활용과정

- 국내공장으로 생산물량 U턴 결정
 -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공장 생산 고급 의류제품 일부 국내 생산 결정
 - 국내 생산량 증가 계획 수립('13년까지 '11년 물량의 5배 생산)
- ▶ 협력업체 생산라인 증가

년도	국내생산금액	증가율	국내협력업체 생산라인 증가
2011	800만 달러	-	예) ○○섬유
2012	2,000만 달러	250%	
2013	4,000만 달러 (*'11년 매출의 1/3)	500%	

- 한-미 FTA맞춤형 제품 개발 박차
 - 제품과 원단별로 관세혜택이 큰 품목을 조합해 BUYER에게 제안
 - 높은 관세로 시도하지 않은 울, 레이온 등의 다양한 소재개발 진행

FTA활용 효과

- 높은 관세혜택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 및 인건비 부담완화
* 제6104.43호 (원피스) - '12년도 2,279천불 × 14.9% = 339천불 절감
- FTA 활용으로 수출자 및 수입자 동반 혜택(win-win)
-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이전으로 국내 의류산업 활성화에 기여
 - 생산라인 증설 및 고용확대로 침체된 국내 의류업체에 활력

시사점

- 국내 인건비 부담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공장으로 생산을 돌렸던 의류산업이 한-미 FTA 발효로 인건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국내 생산공장으로 생산라인을 전환함으로써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모두가 FTA 열매를 향유
- 가격경쟁력이 높은 원사 및 직물을 개발하여 의류 산업 전체의 활성화

FTA로 주얼리 연합의 새로운 꿈을 꾀다!

기업 및 제품소개

- P사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신변장식용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호주, 아시아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최고 품질의 국산 주얼리를 제조·수출하고 있는 업체
- 주얼리 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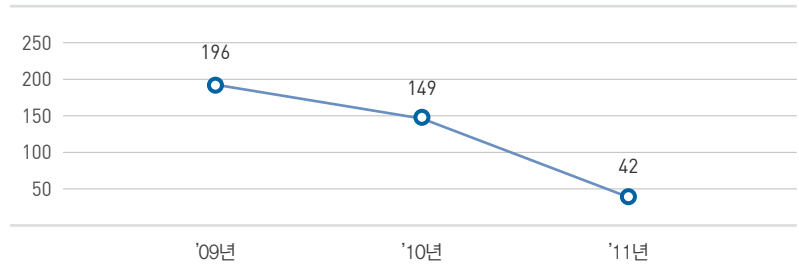
시기	산업현황
~ '90.중	(호황) '70(미국), '80(일본), '90(한국)시장 활성화
~ '00.초	(공장이전) 한국업체들의 본격적인 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 '05	(마지막 호황) '05년까지 수출 호조
'06~현재	(불황) 미국 불경기('06), 유럽발 경기침체('11)

FTA 활용전 상황

- 정직한 기업의 꿈! 실패를 맞보다
 - 정직한 기업의 건설을 꿈꾸며 진출한 중국에서 인건비 급상승, 전문인력 부재, 낮은 생산성, 생산비용 급증, 중국의 디자인 도용, 외국인투자자 차별 등 경영환경 악화
 -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미국 수출 급감
 - 누적되는 경영적자로 중국 공장 매각을 결정하고 한국으로 철수
- 주얼리 사업의 꿈을 다시 키우다
 -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협력업체 발굴
 - 타 제품과의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
 - 뛰어난 품질로 저가의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성
 - 중국 노동자에 비해 3배 높은 생산성
 -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문생산을 통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

-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다
 - 미국과 EU를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실시
 - 유로존 경제악화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품질로 매출 증가
 - 의욕적으로 진출한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매출급감

'09년~'11년 미국 수출실적



장애 요인

- 한-미 FTA를 준비하다
 - 한-미 FTA활용시 관세 3.9%~13.5%가 즉시철폐
 - FTA 특혜관세로 중국산 제품의 장점인 가격경쟁력 무력화 기회
- 한-미 FTA 난관에 봉착하다
 - FTA활용 경험 부족, 복잡한 원산지 규정, 영세 협력업체의 비협조
 - 정보의 부족으로 의지만 앞설 뿐 모든 것이 부족한 현실

극복 방법

- 서울세관 FTA 컨설팅을 신청하다
 -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에서 제작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작
 - 원재료 생산과정을 확인하여 원산지결정기준 CTH 충족 확인
- 협력업체의 관심을 유도하다
 - FTA 활용의 기본인 원산지증빙서류의 확보 및 보관
 - 협력업체 CEO를 설득하고 서울세관의 협력업체 교육지원 등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

- 꿈을 향한 작지만 커다란 주얼리 연합을 결성하다
 - 개별 업체로서는 중국 기업과의 가격경쟁력을 추월하기 어려움
 - 영세 기업으로 국내에 공장 증설, 새로운 사업의 확대는 불가능
 - 포스테크노 126개 업체 연합회 대표로 당선된 것을 기회로 상인연합의 단결을 통한 주얼리 연합의 꿈을 키우다
 - “MADE IN KOREA” Center 육성 Project 가동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뛰어난 품질, 높은 생산성, 정확한 납품, FTA 특혜 관세로 가격경쟁력을 확보 제2의 주얼리 전성기를 구가

FTA활용 효과

-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로 빼앗겼던 미국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
- 한-미 FTA활용으로 '12년 5월까지 수출실적이 '11년 전체 수출실적을 추월하였으며, 지속적인 매출증가로 연말 '11년 대비 350% 매출 달성
-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와의 FTA를 준비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였고, 한-캐나다 FTA 체결·발효시 수출증가에 큰 효과 발생 예상

시사점

- FTA를 활용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국내로의 회귀를 통해 FTA를 활용함으로써 재도약한 사례
- 아울러 영세중소기업들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합을 결성하고 제품개발, 원산지, 증빙서류관리의 효율성 확보

06

수출입 쌍방향 FTA 활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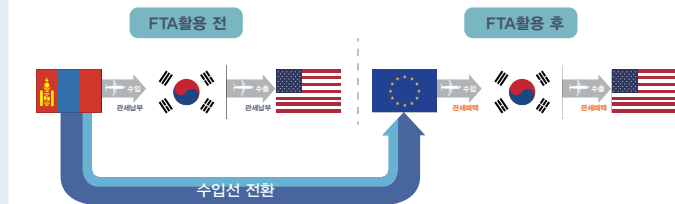
개요

-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수출기업 중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선 전환이 용이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

- FTA 비체약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원자재를 FTA체약국으로 전환하여 수입시 관세혜택 적용 ▶ 원가절감 ▶ 제품 가격경쟁력 상승
-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FTA 비체약국으로만 수출하던 제품을 FTA 체약국으로 다변화·집중하여 수출시 관세혜택 적용
- 모든 산업 및 FTA
 - 원자재 품질 저하 및 기업의 이익 손실 없이 원가절감 가능
 - 원가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증대 및 수출 다변화 가능
 - 수출입 쌍방향 관세혜택으로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이익창출 가능

수출입 쌍방향 FTA 활용 모델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FTA를 통해 수출입 쌍방향 관세혜택을 얻다

기업 및 제품소개

- D사는 국내 동 특수합금업계의 선도기업으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동 특수합금 소재를 생산·수출
- 제품소개

주요 수출품	HS CODE	제품사진
Round bar of refined copper	7407.10	

활용 전 상황

- 동제품의 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영국, 벨기에 등 EU 지역에서 수입하고, 동제품 가공품을 EU 및 미국 등으로 수출
- EU 지역에서 수입하는 크롬 동은 관세 5%를 수입 당시 부담하여야 하며,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 환급이 가능하나 이를 위한 추가 비용 및 수출입관련 시간 등 소요

장애 요인

- 한·EU MC 50% 충족을 위해서는 주 원재료인 전기동 국산 사용이 필요
- MC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국내거래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관련 제도 및 요건구비를 위한 설득 필요

극복 방법

- 수출물품 HS(제7407.10호)의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MC 50%) 동시충족을 위한 방문 컨설팅 실시
- 서울세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FTA 활용 지원으로 동사를 품목별인증 수출자로 지정('11.06.07.)
-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시 확인한 수출물품 원재료의 HS 4단위변경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한·미 FTA 활용

HS CODE	협정	기준세율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7407.10	한·미 FTA	3%	0%	CTH(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활용 효과

- 영국, 벨기에로부터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원재료를 수입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받아 수출량 증가
* 수출액 \$764,436('11.1/4분기) ▶ \$1,398,708('12년1/4분기) 83% 증가
- 한·미 FTA 발효 즉시 자율증명서발급으로 협정세율 혜택
* 발효 후 1달 관세효과 인하액 : 892천불(8억9천만원) × 3% = 2,700만원
* 연간 관세효과 예상액 2,700만원 × 12 = 3억2,400만원
- 한·EU FTA 활용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미 FTA 체결 직후 즉시 자율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음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83% 수출실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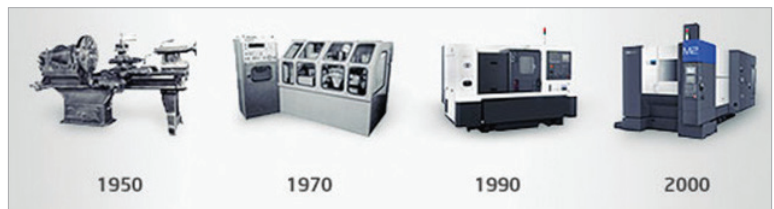
시사점

- FTA 발효시기에 맞춰 활용방법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에 FTA 활용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사전 준비를 통한 수출입 쌍방향 FTA 활용

기업 및 제품소개

- E사는 1952년 설립된 이래 60여년간 머시닝센터, 선반 등 금형 공작기계에만 집중,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



활용 전 상황

- 국내 3대 제조회사로 꼽히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전세계 30여개국 수출, 매출의 20% 이상을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음
- 한·EU FTA가 발효되면 EU측 현행 관세율 2.7%가 즉시 철폐되어 FTA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에 대비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을 위해 부분품의 HS코드 분류 작업을 시작

장애 요인

- FTA 활용을 위해서는 재료를 HS코드별로 관리하는 새로운 재료명세서가 필요했으며, 6백여개의 부품 HS코드를 일일이 분류하는 준비과정이 FTA 활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작업

극복 방법

- 20여개 부품 공급사와 협력하여 세관 교육도 함께 받고 부품의 HS코드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머시닝센터, NC선반 등 2개 주력 수출품목에 대하여 품목별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한·EU FTA 협정 혜택을 받음
- 한·EU FTA 발효 후 독일에서 40만불 상당의 부품을 수입하면서 협정세율이 아닌 실행세율로 통관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요청
- 한·미 FTA의 높은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액의 부품들도 원산지, 공급단가 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급업체 담당자 교육 및 ERP시스템과 원산지확인서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활용 효과

- 원자재 수입의 한·EU FTA협정 적용으로 관세 4천여만원 절감
- 한·EU FTA 발효 후 1년 동안 EU 수출시 약 6억원 상당의 원가절감으로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수출물량도 발효 전 1년과 비교하여 70% 증가하는 FTA 효과 발생
- 한·미 FTA 발효 초기부터 4.4%의 관세철폐 혜택과 물품취급수수료 면제의 혜택으로 對미 수출액이 205%나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어 한 해 약 10억원 상당의 원가를 절감

시사점

- FTA 발효시기에 맞춰 활용방법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에 FTA 활용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07

FTA로 인한 가격인하 활용 모델

개요

- 중국 및 동남아산 제품에 비해 높은 제조경비와 인건비로 가격경쟁력이 낮아 시장 확보(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

- FTA 특혜관세 혜택은 바이어에게 즉각적인 가격인하 효과로 작용하여 가격 경쟁력 강화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어 거래유지는 물론 신규거래 창출 가능
 - 저렴한 단가가 핵심경쟁력인 중소기업에 있어 FTA 활용은 가격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어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 창출 효과 발생
 - 바이어의 가격인하 압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FTA로 인한 가격인하 활용 모델



※ 바이어의 가격인하 압박에 대해 FTA 활용시 관세상 혜택을 협상카드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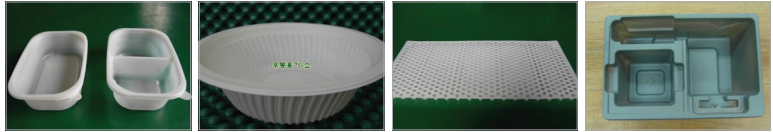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 특히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인하가 어려운 중소기업 적극 활용

가격인하 압박, FTA로 가뿐하게 날려 버리다

기업 및 제품소개

- F사는 1997년 설립 이후 가정용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에서 신규 제품라인을 구축하여 북미 시장에 진출한 플라스틱 사출성형 전문기업
- 제품소개(HS 제3924.90호)



FTA 활용전 상황

- 가정용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주로 생산해 오던 중 북미 최대의 도어제품 생산업체인 m사에 도어 프레임 부분품을 수출하게 되면서 전환기를 맞음
- 북미 지역 도어제품 생산기업인 m사에 도어프레임 부분품을 수출하게 되면서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북미 지역으로 진출하였으나,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에 직면

장애 요소

- 가격인하 압박으로 한-미 FTA에 눈을 돌리다!
 - 세계적 경제 불황과 미국 주택 경기 침체로 바이어로부터 수출가격 10% 인하 압박을 받음
 - 회사존립의 돌파구로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이 필수적인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F사와 같은 중소기업의 여건상 생산직을 제외한 사원은 단 한 명뿐인 어려운 여건

극복 방법

- 세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활용하여 한-미 FTA 발효 즉시 특혜 활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바이어에게 협정 활용을 위한 수시 정보제공 등을 통해 가격협상에 유리한 고지 점령

활용 효과

- 한-미 FTA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나, 향후 전망은 밝음
 - 현재까지 F사의 FTA 활용효과는 거래유지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신규거래선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되어 수출금액 수직 상승 기대

시사점

- 기술개발 등을 통한 가격인하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FTA 특혜관세 혜택을 협상카드로 선택하여 위기 극복 가능
 - 미국 바이어의 10%대의 가격인하 압박에 대해 FTA 활용시 관세상 혜택을 협상카드로 제시하는 슬기로운 대처로, 가격인하 없이 협상을 성공시키는 상생(win-win)기반 마련

FTA로 인한 가격인하 활용 모델 활용사례 02

FTA 특혜관세, 가격경쟁력 확보의 기본!

기업 및 제품소개

- G사는 자동차용 영상기기 전문기업으로 차량용DVD, 내비게이션, 차량용 디지털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 주요 수출제품인 천장형 모니터는 차량 운행 시, 동승자에게 즐거움을 전달하는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제품



FTA 활용전 상황

-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제품은 큰 인기를 유지해 오고 있었지만, 세계적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으로써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저가제품과의 경쟁도 치열해 지는 상황
- 저가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본 제조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FTA활용을 통한 특혜관세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

장애 요소

- FTA 활용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기본지식 부족으로 20여 개국에 이르는 다양한 수출시장에 대한 개별 국가별 FTA 활용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

극복 방법

- 컨설팅(FTA 설명회) 참가 및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등을 활용한 FTA 활용 방법 학습을 통해 주력 수출시장을 파악하고 철저한 활용전략 수립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세관 및 관세사와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활용 효과

- 관세인하 폭이 큰 한-아세안 FTA 비즈니스 초기 단계부터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20%의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수출실적(11% ▲) 지속 증가

구분	한-아세안	한-EU	한-미
MFN 세율	20%	14%	0%
FTA 세율	0%	11.6%	0%

시사점

- FTA 특혜활용은 지속적 원가 상승 속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며, 세율차가 클수록 가격경쟁력 확보 효과도 UP!!

원산지 관리사 수석합격자 수기



이번호에서는 원산지 관리사 수석합격자 제11회 류기식씨와 12회 이서연씨의 합격수기 및 공부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수석합격자의 합격 비법에 나만의 비결을 덧붙여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11회 류기식

FTA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11회 수석합격자 류기식입니다.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하게 된 계기는 취업준비생 시절 관세사인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세사들도 FTA 관련 업무진행과 컨설팅을 위해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 수출입을 하는 기업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격시험이라는 내용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단순하였지만 자격취득 이후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고 현재의 직장에서 FTA 업무와 관세환급 등 무역관련 업무를 하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FTA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자,
무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자.

원산지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무역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었고 관련 자격증도 전무했습니다. 때문에 이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단순히 60점만 넘겨서 자격을 취득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FTA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자, 무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11회 시험에서 수석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FTA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또는 FTA 관련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차후 업무 진행 시 보다 정합성 높은 FTA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목별로 보면 수출입 통관실무의 경우 기본무역 관련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각 개념을 이해하는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무역학과, 기타 무역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시면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FTA 협정 및 원산지 결정기준은 암기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 대륙별로 비슷한 FTA 협정 유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여 암기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40점만 넘기자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는 품목 분류실무 입니다. 저도 시작을 할 땐 막막했습니다. 이 많은 HS CODE를 언제 다 외우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모든 것을 외울 수 없었기에 이 과목은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기출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류들에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었지만 중요 류들을 집중해서 공부한 결과 실제시험에서는 네 과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관리사라는 자격증이 FTA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도와주는 자격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이 FTA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업에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격시험에 활용되는 이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자신이 속한 기업, 더 나아가 그 산업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FTA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접 수출입을 진행하는 기업 이외에 1차, 2차 제조사들의 경우 FTA를 통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FTA업무는 단순한 페이지워크, 의미 없는 일이라 인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FTA의 활용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간접적인 가격경쟁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FTA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또는 FTA 관련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차후 업무 진행 시 보다 정합성 높은 FTA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2회 이서연

기본서 정독과 서브노트가 합격의 비결

안녕하세요. 저는 12회 수석합격자 이서연입니다.

원산지관리사는 제가 2014년 7월에 관세사 시험을 치고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하고 알아보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시험에서 합격과 동시에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건 아마도 제가 관세사 시험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원산지관리사를 실질적으로 공부한 기간은 한달 정도이며, 시험기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계획표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크게 1주 [원산지관리사 4과목 기본서 정독 - 과목의 큰 흐름 파악] → 2주 [기본서 꼼꼼히 보면서 필요한 과목(원산지결정기준)은 서브노트 작성] → 3주 [만든 서브노트 암기, 기출문제를 풀기, 기출문제 오답 해설, 암기] → 4주 [서브, 기출문제에서 오답이었던 부분을 보완해가며 암기하고 마지막 정리] 계획을 잡고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각 과목 특징에 맞게 공부하였습니다.

FTA협정은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나 FTA 체결국간 체결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표를 만들어서 협정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크해 가면서 공부를 하니 효율적으로 암기가 잘 되었습니다.

수출입통관실무는 따로 서브를 만들지는 않고 원산지정보원에서 나오는 기본서로만 학습하였으며,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이해를 하였고 그 다음에는 기산일과 기간, 기한 등 날짜를 중심으로 암기하였습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사 시험 과목 중 하나로 관세사 시험 공부할 때 공부를 이미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비해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통칙을 가장 먼저 이해하는데 집중했고 그 다음은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부→류→호) 범위를 좁혀가면서 체계를 잡아가며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큰 맥락으로나마 FTA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실무에서 FTA를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원산지관리사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 암기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목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을 이해하고 응용하여 답을 찾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 암기한 후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시 암기를 하니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FTA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따로 공부를 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큰 맥락으로나마 FTA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실무에서 FTA를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활용하기 쉬운 FTA PASS

교육용 FTA PASS

관세청원산지관리시스템

기능 추가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관세청이 보급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는 FTA-PASS 교육용 시스템이 지난 7월 13일부터 제공되고 있다.(<http://edu.ftapass.or.kr/index.do>)

교육용 FTA-PASS는 기업실무자의 실무활용 능력을 위해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생이나 일반인에게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관리 시스템이다.

기존 FTA-PASS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회원가입이 불가능했다. 새로 개발된 교육용 FTA-PASS는 가입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일반인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상의 기업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원산지 관리자, 특성화고 학생, 대학생 등 추후 FTA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FTA-PASS를 활용해 원산지관리기법을 사전학습 할 수 있다.

이번에 보급되는 교육용 FTA-PASS 시스템이 가진 특징은 원산지 관리자 실무 학습을 위한 시스템 필수기능 및 학습예제가 제공되고, 단체학습시 강의실 개설, 수강신청 등 교육관리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교육용 FTA-PASS는 기업에서 사용중인 FTA-PASS를 이용하기 전 활용능력을 갖추기 위한 선수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 주요업종별 원산지 관리 예시를 통해 가상의 기초자료 입력부터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역시 실습할 수 있다. 금번호에서는 교육용 FTA-PASS의 주요 기능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예제 다운로드

교육용 FTA-PASS에서는 학습을 위한 엑셀 보기양식을 제공한다. 샘플은 7대업종의 중소기업 주요 수출물품 중 대표품목 1개로 조미김, 잉크,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등이다. 활용예제는 메인화면 배너클릭을 통해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 01 예제 다운로드 배너클릭
- ▼
- 파일 저장



- 02 엑셀 입력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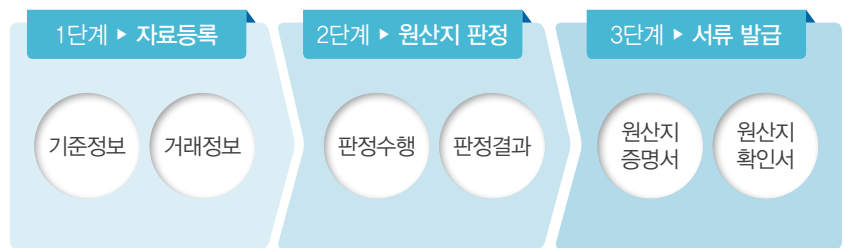
※ 업종별 대표 1개 품목이 FTA-PASS 엑셀입력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공 통	기본형	재고관리형
거래처	구매단가	자재명세서
물품정보	자재명세서	구매원장(물품별)
HS코드	판매단가	매출원장(물품별)
거래처 물품번호	-	수불부(재료)
근거서류(원산지확인서)	-	수불부(제품)

FTA-PASS 활용

교육용 FTA-PASS 활용 기능은 자료등록, 원산지 판정, 서류발급의 3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자료등록에서는 기준정보와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원산지 판정단계는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급(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한다. 매출처가 국내 거래처인 경우 모든 협정에 대해 해외 거래처인 경우 해당협정으로만 판정을 수행한다.

마지막 3번째 단계에서는 원산지판정 결과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와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교육관리 기능

교육용 FTA-PASS에서 특화된 기능은 교육관리 기능으로 FTA-PASS 사용 주체에 따라 학습 관리가 가능하다. 사용주체에 따라 기능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사용자가 강사인 경우 해당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사용주체	① 실무자, 학생	② 강사	③ 기관
	수강관리(수강신청)	교육기관 관리(강사 승인요청)	강사관리(강사승인)
기능	-	강의관리(강의실 개설)	-
	-	수강생 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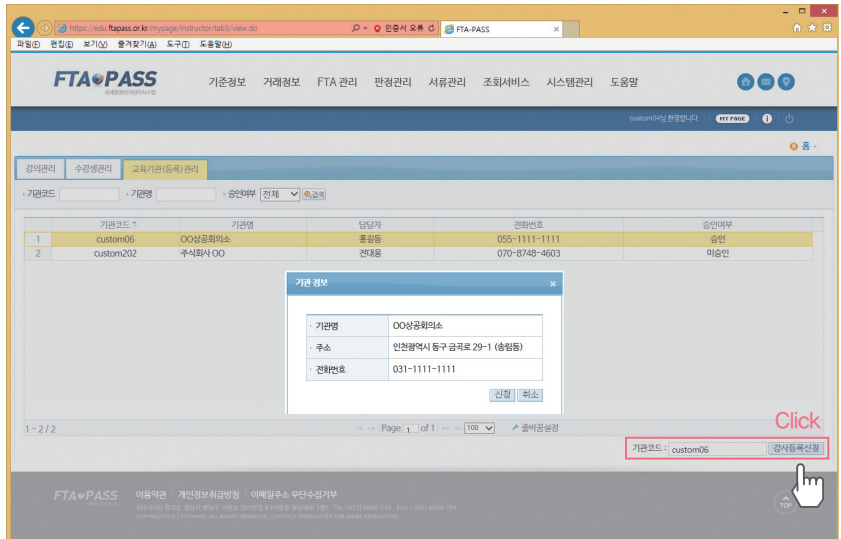
사용자가 강사일때는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한데, 기관담당자에게 강사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완료 후에 강의실 개설이 가능하다.

각각의 단계를 보면, 로그인을 통해 오른쪽 위의 MY PAGE 항목을 선택하면, 기관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기관담당자가 강사승인 처리 후에는, 강의 커리큘럼 정보 입력이 가능하다. 등록 후 버튼을 클릭하면 강의실이 개설되고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FTA-PASS 강의를 모두 마친 후에는 학생의 수료여부도 관리할 수 있다.

01 로그인
 우측상단의
 MYPAGE
 항목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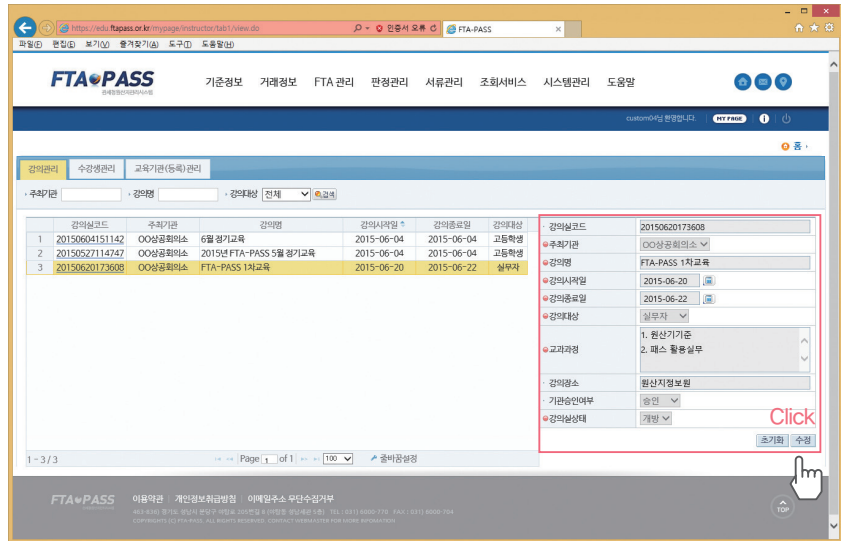
02 기관코드 입력
 [강사등록신청]
 버튼 클릭



03

강의 커리큘럼 정보입력

[등록]
버튼 클릭
(강의실개설)



04

수강신청 학생 승인처리

수료여부 결정



추가정보나 FTA-PASS 활용과정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교육용 FTA-PASS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콜센터(031-600-0770)를 통해 질의할 수 있으며, 이메일(ita-pass@origin.or.kr)을 통해서도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움말> 동영상강좌를 통해 간편발급 서비스, 거래처 관리, 자재명세서 관리 등 10개 항목에 대한 사용법을 볼 수 있다. 간편발급 서비스(15분 소요)이외는 3분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 동영상을 보거나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차시	강좌명	시간
1	간편발급 서비스	15분
2	거래처 관리	3분
3	물품·재료 관리	3분
4	자재명세서(BOM) 관리	3분
5	원가(원재료 구매단가)관리	3분
6	원산지근거서류 관리	3분
7	완제품가격(판매단가) 관리	3분
8	원산지판정	3분
9	한-미 자율원산지증명서 발급	3분
10	원산지확인서 발급	3분

FTA 100%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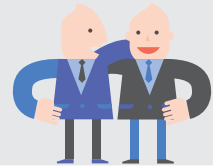
호주 통관환경 동향 및 FTA 활용방안



이지원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과장

01

한국-호주 이상적인 교역파트너



호주는 남한의 약 80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토지에 방대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농업, 광업 그리고 서비스업(관광, 교육 등)이 발달한 국가이다. 반면 2천 3백만 정도의 적은 인구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힘들다는 점과 지리적 한계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및 고임금 구조는 호주의 제조업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작은 면적의 국토에 천연자원도 부족하지만 우수한 인적 자원과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에게 호주는 가장 이상적인 상호보완적 교역파트너라 할 수 있겠다. 한국은 호주로부터 전략 자원을 비롯한 철강, 자동차, 에너지 등 주요 수출품의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호주에 자동차와 첨단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이상적인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상호 보완적인 교역파트너, 한국-호주 양 국가간의 FTA가 2014년 12월 12일 정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제 7위 교역파트너(2014년 기준 수출 11위, 수입 6위) 호주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호주의 통관환경을 이해하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02

호주의 통관행정 조직



호주의 통관 절차에는 많은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구가 연계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수출입통관 관할 기구는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ACBPS)로 우리나라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CBPS는 국경을 출입하는 각종 운송수단, 승객 및 화물을 감독 관리하고,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해상구역의 관할, 국경 보호를 위한 감시 기구를 운영한다.

2013~2014년 ACBPS 보고서에 따르면 26,170건의 수출 절차(Export entry)와 69,987건의 수입절차(Import entry)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조세 수익은 2억 6천 4백만불 가량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ACBPS는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DIBP)에 통합될 예정이다. 호주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타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질병에 취약하고, 오세아니아 대륙만의 동식물 고유종이 많아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까닭에 호주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검역검사가 까다롭고 철저한 편이다. 이러한 검역검사를 관할하는 기관은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이다. AQIS는 호주를 통과하는 동식물, 사람에 대한 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물수입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에 따라 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이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에 따라 수입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호주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동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03

호주의 통관 관련 법률



호주의 통관에 있어 근간이 되는 법률은 관세법 (Customs Act 1901)으로, 통관 절차, 세관검사 및 보안, 상품의 수출입, 관세부과, 금지/제한 품목, 관세양허, 반덤핑 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4개 Volume 17개 Part로 구분하고 있다. 한-호주 FTA 체결에 따라 2014년 10월 21일 관세법이 개정 (Customs Amendment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14) 되었으며, 이에 따른 양국간 수출입업자에 대하여 FTA 체결에 대한 쌍방적 특혜 원산지 제도 역시 동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¹⁾

이 밖에도 통상법(Commerce (Trade Descriptions) Act), 관세행정법(Customs Administration Act 1985), 검역법(Quarantine Act 1908), 수입식품통제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신부가가치법(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등 통관과 밀접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다.

04

호주의 통관 제도



호주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한국이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방식을 채택한 것과 달리, 수출항까지의 선적 운임을 포함한 FOB(Free On Boar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로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 가격이 산정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이를 어길시 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출 기업의 경우 과세 가격 변동시 지체없이 세관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주는 2013년 기준 평균 관세율 2.7%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개방형 무역 국가이다. 농업분야 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1.2%의 낮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밖의 품목에 대해서도 3%의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의류 및 섬유에 가장 높은 평균 관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죽 및 신발, 운송기기, 전기제품, 음료 및 담배 순으로 높은 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호주 관세율 현황

구분	기준연도	전체품목	농산물	농산품외 품목
관세율(단순평균) MFN 적용	2013	2.7	1.2	3.0
관세율(가중평균)	3.9	2.6	4.2	6.8
수입액 (billion US\$)	2012	243	11.6	231.5

출처 : WTO (www.wto.org)

1) Customs Act 1901 Part VIII-The duties, Division 1J- Korean originating goods

이처럼 호주는 전체적으로 낮은 관세율과 간단한 수출입신고 절차로 자유무역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덤핑, 상계관세 제도, 까다로운 검역 절차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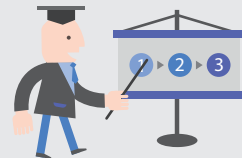
호주 정부는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구성하여 수입제품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으로부터 자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례를 조사하고 상계관세를 매기고 있다.

2015년 현재, 28개 상품에 대하여 조치가 발행중에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 기업에 해당된 품목은 알루미늄도금 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철강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후판(Hot Rolled Plate Steel), 열연코일(Hot Rolled Coil Steel), 열연구조용철강파이프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PVC필름 (Polyvinyl Chloride Resin), 철근 (Steel Reinforcing Bar), 풍력타워 (Wind Towers), 아연도금강판 (Zinc Coated (Galvanised) Steel)로 총 9개 품목이다.

반덤핑 제소 뿐만아니라 까다로운 검역 기준도 호주 통관시 주요 무역장벽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 식품은 까다로운 검역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호주 검역당국은 수입식품이 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 및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 Council (ANZFS)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면 유입을 허용한다. 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입통관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어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식품 수출기업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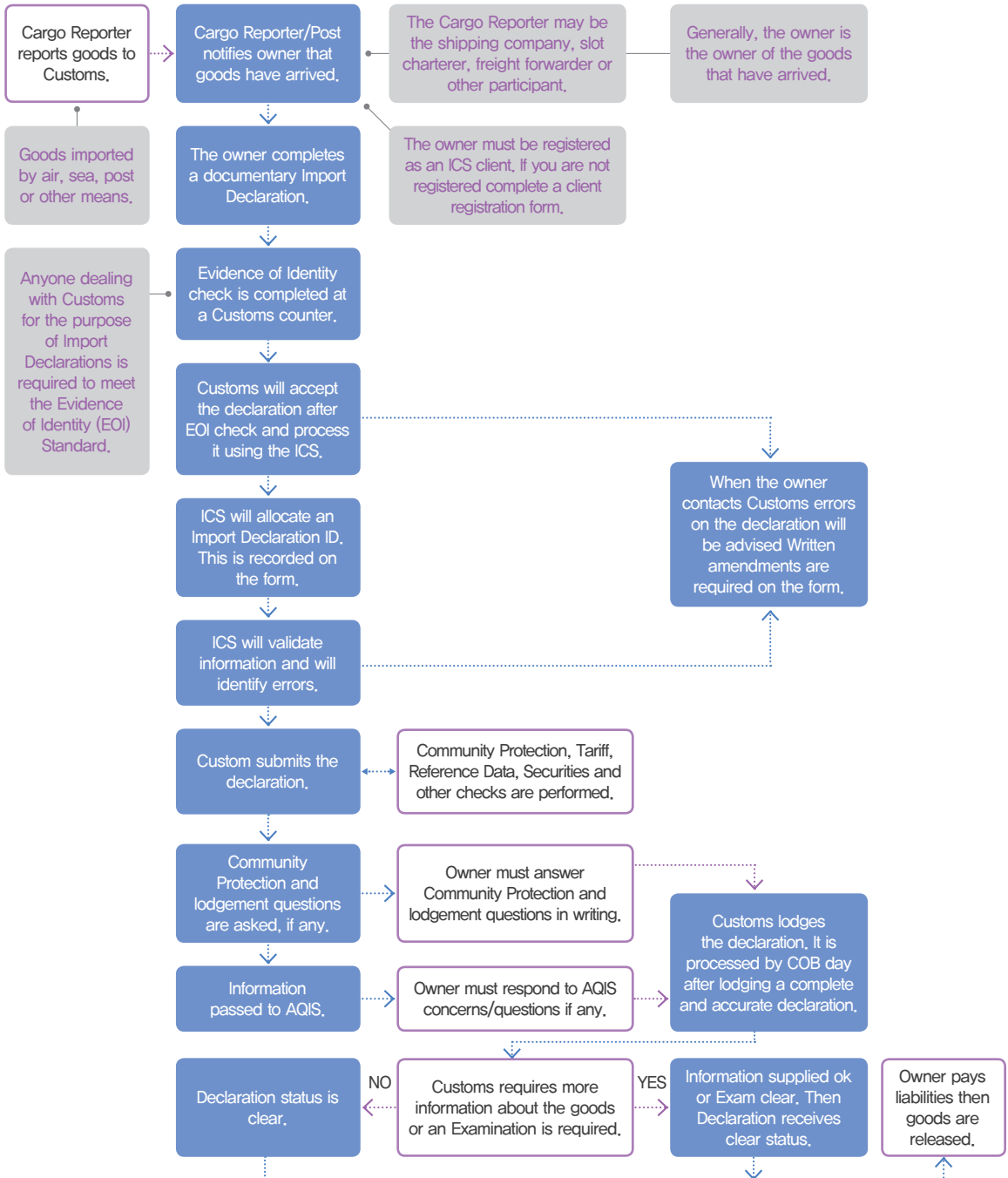
호주의 통관 절차



호주 대다수의 수입업자(수입신고 대리인)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수입신고가 전산화 되어있고 수입업자의 자율적인 판단 및 신고에 맡겨져 있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동시에 높은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말한다. 즉, 수입업자의 자율적 신고라는 점에서 편의성 및 효율성은 높지만 잘못된 정보 제공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에 따른다는 것이다. 호주의 수입통관 신고는 수입물품의 목적에 따라 수입신고서 Nature10(가계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Nature 20(수입시 창고로 보내지는 물품), Nature30(창고에 보관중이던 물품을 국내 소비를 위해 이송하는 경우)를 통해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수입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추후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수입 절차 이행 이후에도 5년 정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 경우 AQIS에 검역신고서 및 검사신고서 등 서류심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뒤 수입통관을 마무리 할 수 있다.

그림 1 호주 수입신고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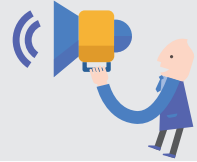
Figure 21 : Import Declaration Process



출처 :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ACBPS), 2013

06

한-호주 FTA 발효에 따른 통관 유의사항



현재까지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 9개국(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미국, 칠레, ASEAN,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이들 FTA 체결국과의 교역은 호주 총교역의 42%에 달한다. 또한 호주는 중국과의 FTA를 지난 6월 15일 정식 서명하였다. 이처럼 호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적극적인 무역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른 체결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수출업자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2014년 12월 12일 한국-호주 FTA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나라는 94.6%, 호주는 100%,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4.3%, 호주는 100%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하도록 결정 되었다. 우리나라는 FTA의 체결로 특혜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14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FTA 협정문을 준용하여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하도록 되었다. 한-호주 FTA 협정의 원산지 증명과 검증 절차를 살펴보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발급의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호주는 기관증명의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기재하거나 권고서식을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원산지 검증의 경우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수출국 세관에 검증 지원 요청(간접검증)하거나 현지 직접 검증하는 방식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원산지 기준은 대부분의 기계류, 전자기기 등에 대해 세번 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기준을 도입하였다.

07

맺음말



호주는 GDP 1조 5000억달러, 1인당 GDP 6만 5천달러의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한국과의 교역, 투자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한-호주 FTA 발효로 8년내 현재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가 이루어져 현재 300억 달러 수준의 교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호주로부터 철광, 유연탄, 원유, 알루미늄, 동광 등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 전자제품, 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 건축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제품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략적 무역 상대국으로써 호주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시점에 우리 수출기업들은 호주의 통관 제도 및 절차, 까다로운 검역 시스템, 라벨링 조건 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비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FTA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지도로 보는 2013 대비 2014 특혜 수출입실적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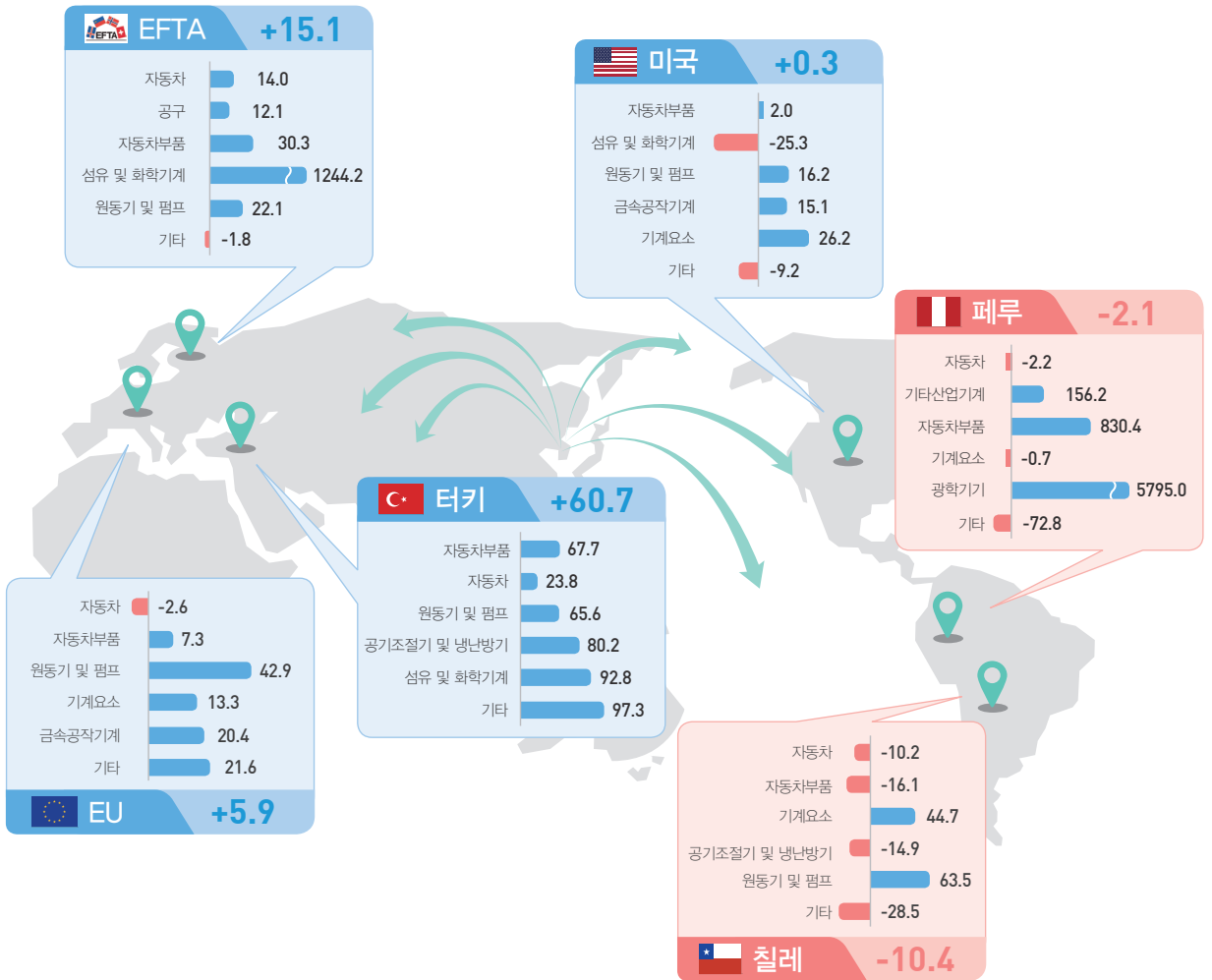
※ 대상협정 : 발효 2년차 이상 협정(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제외)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분류는 HS 품목분류 체계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품목분류 체계로 이번호에서는 FTA국가에서의 산업변화(MTI 1단위)와 상위 품목(MTI 3단위)의 2013년 대비 2014년 증감률을 알아보았다.

※ 증감률 계산 공식 = $\frac{(2014년\ 특혜\ 수출입금액 - 2013년\ 특혜\ 수출입금액)}{2013년\ 특혜\ 수출입금액}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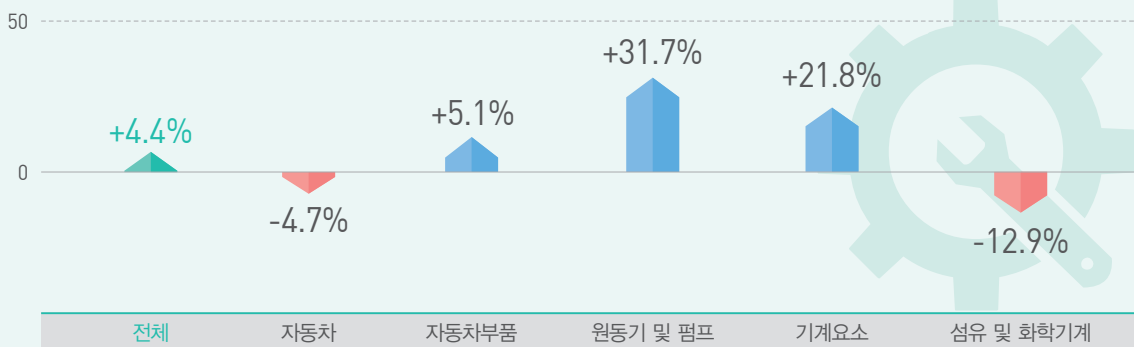
※ MTI 1단위(수출 상위순) :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광산물,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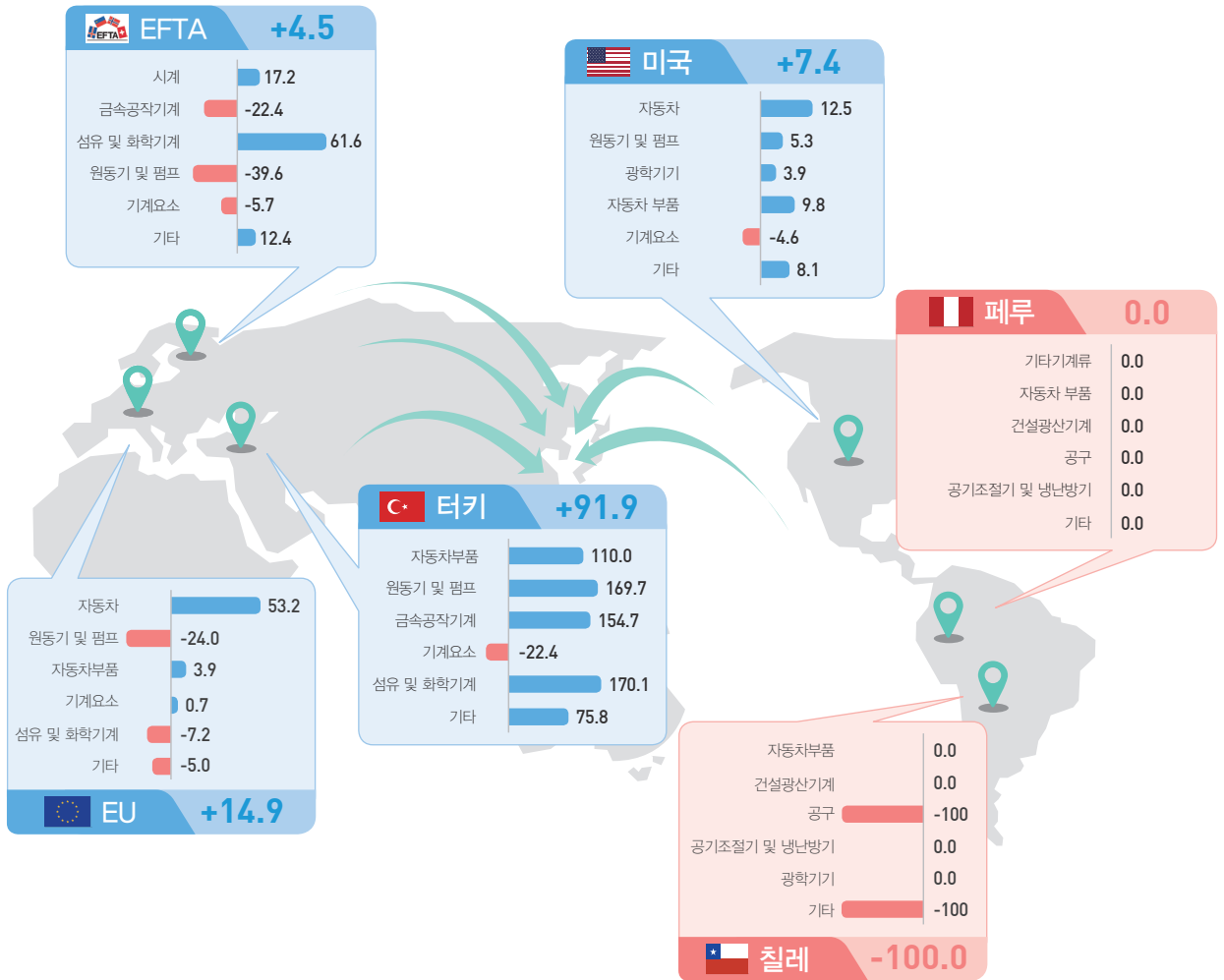


 : 협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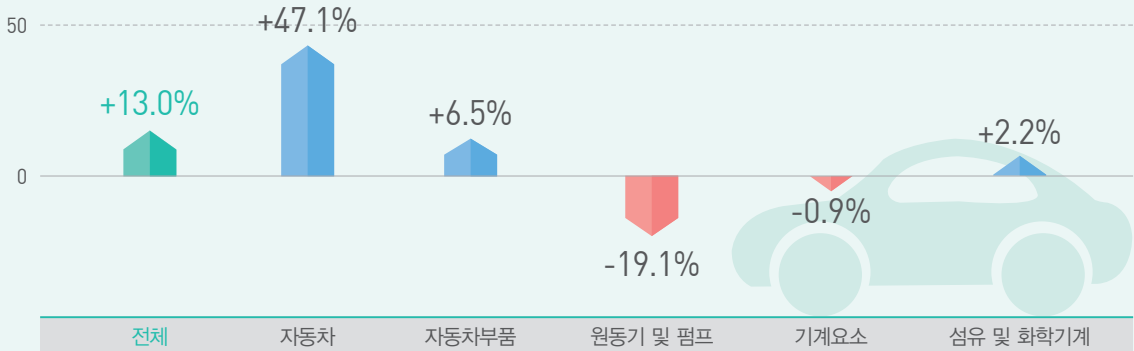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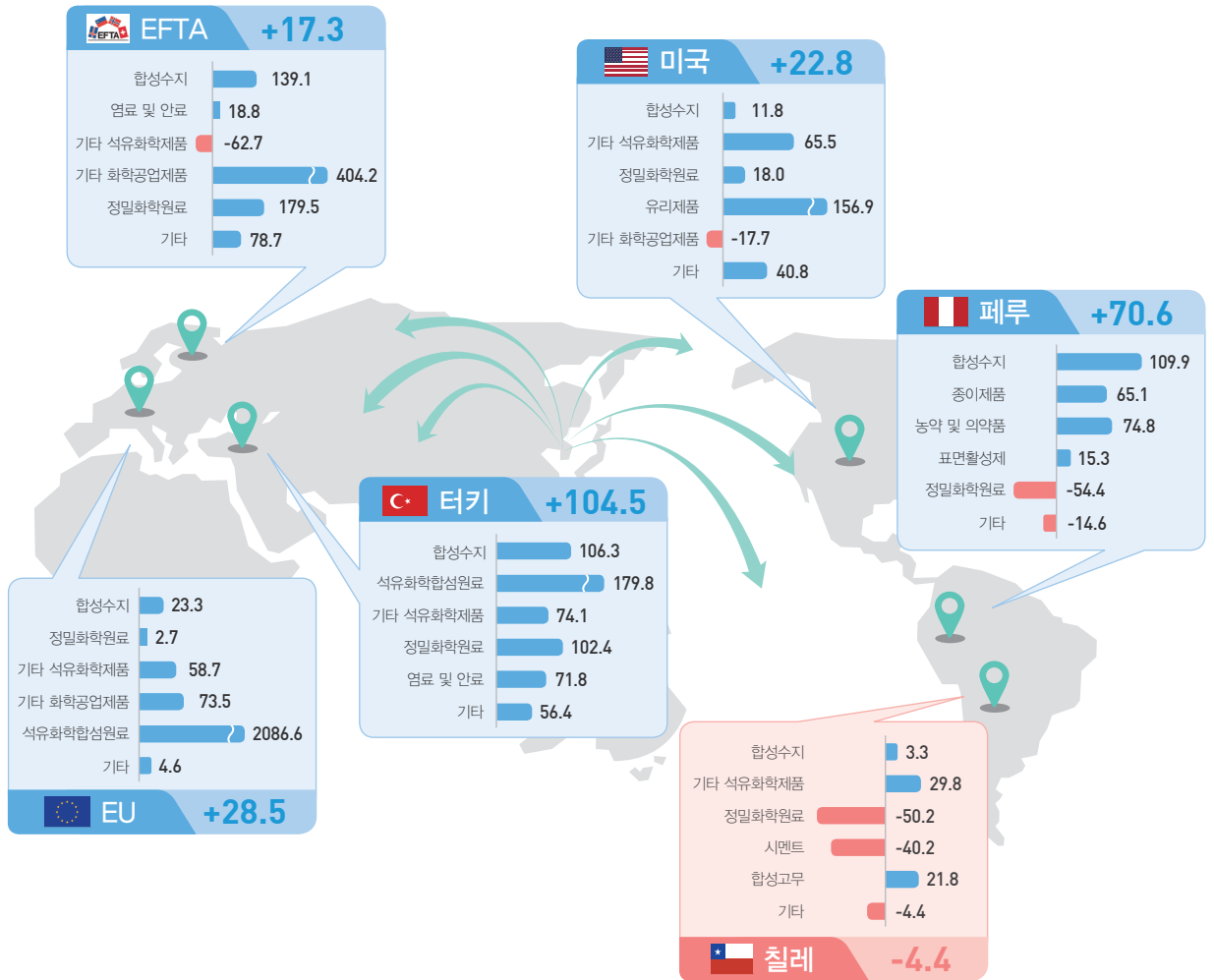


합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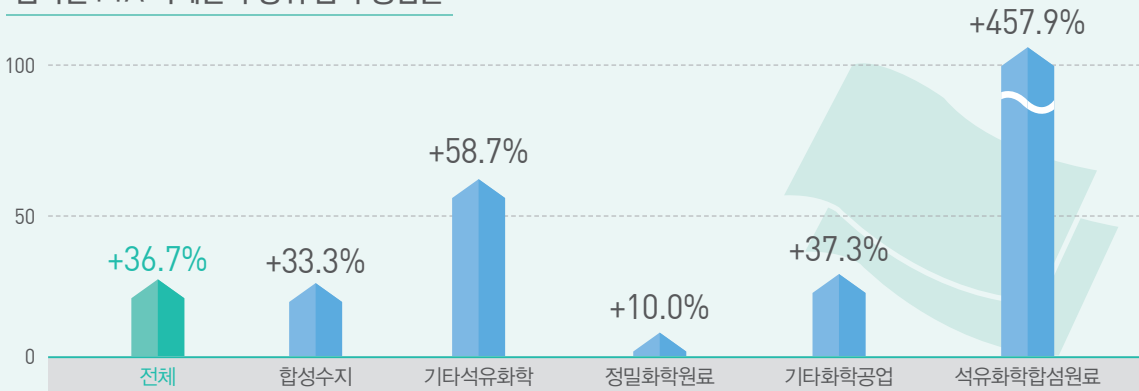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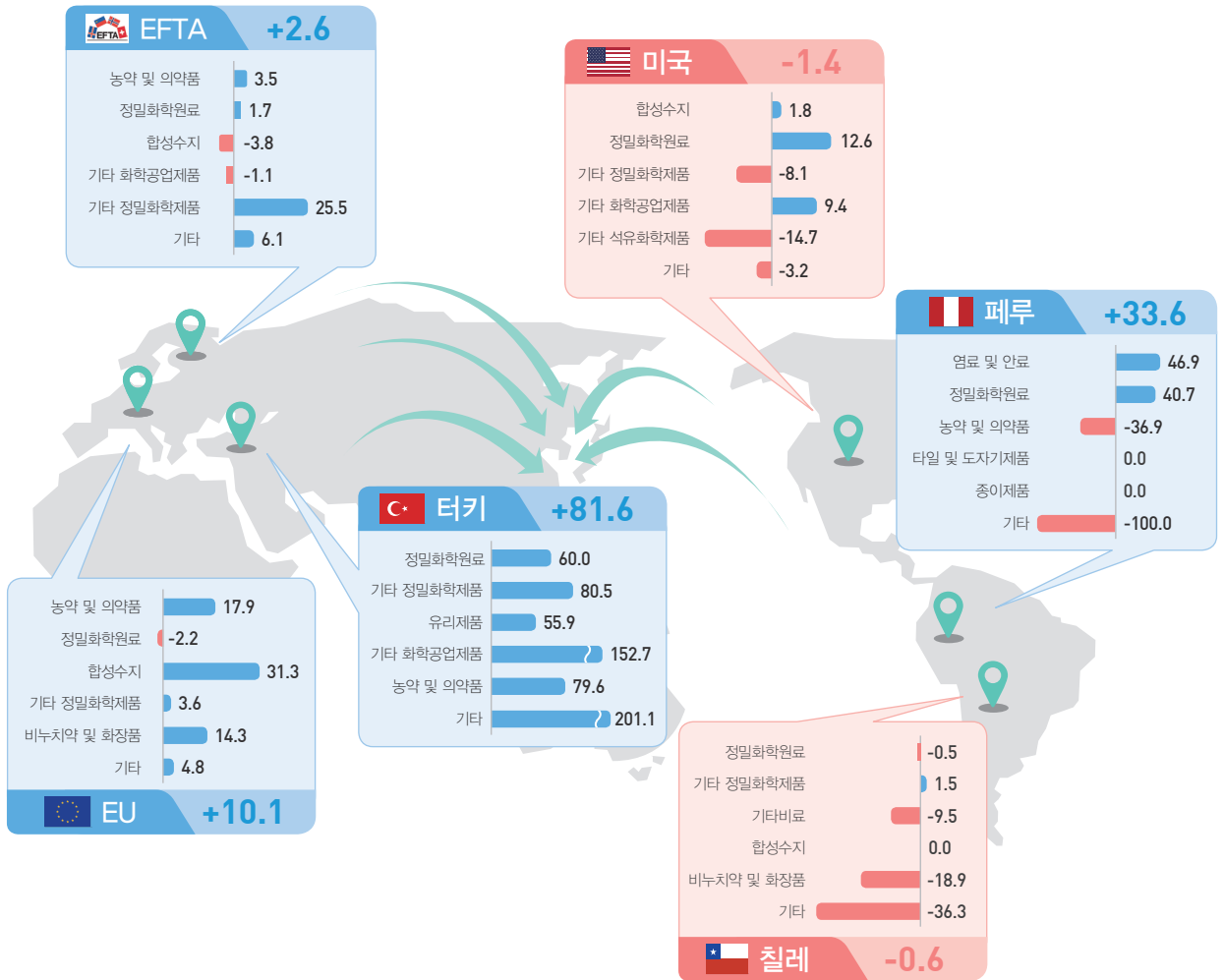


☰ : 협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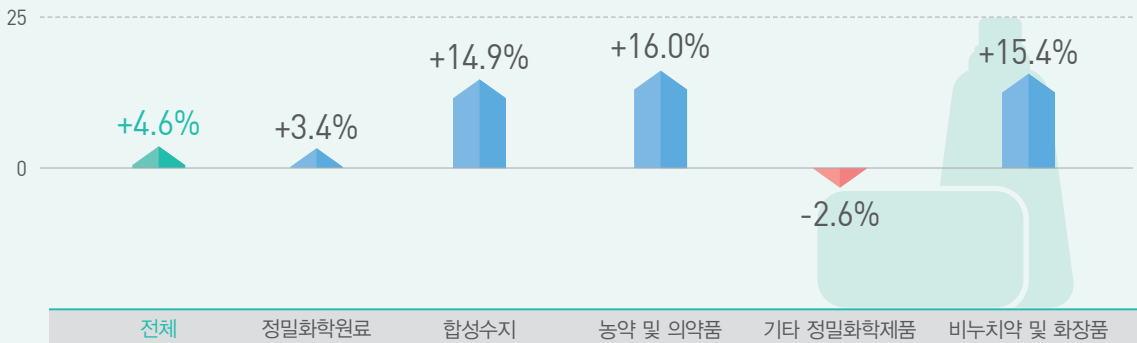




합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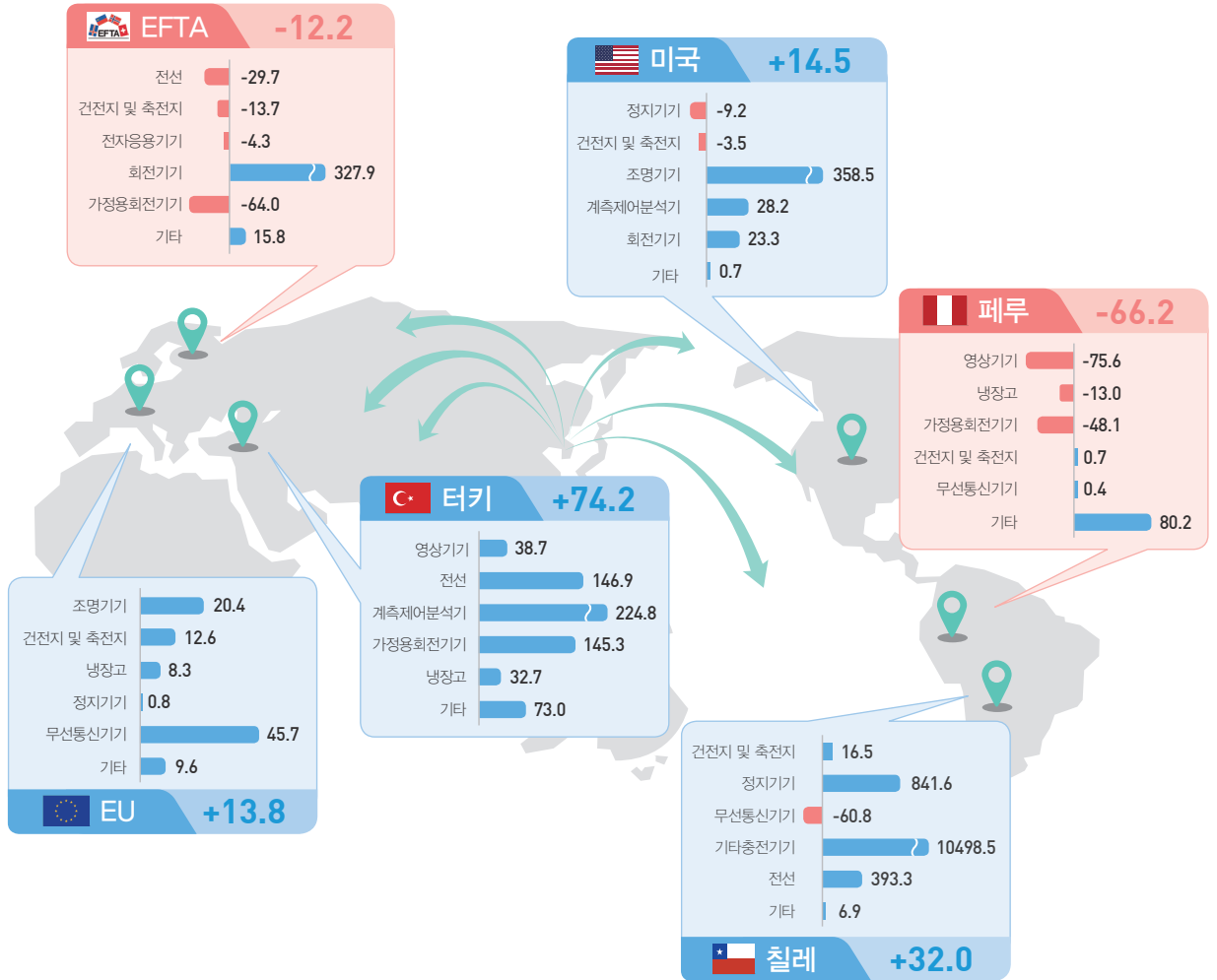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03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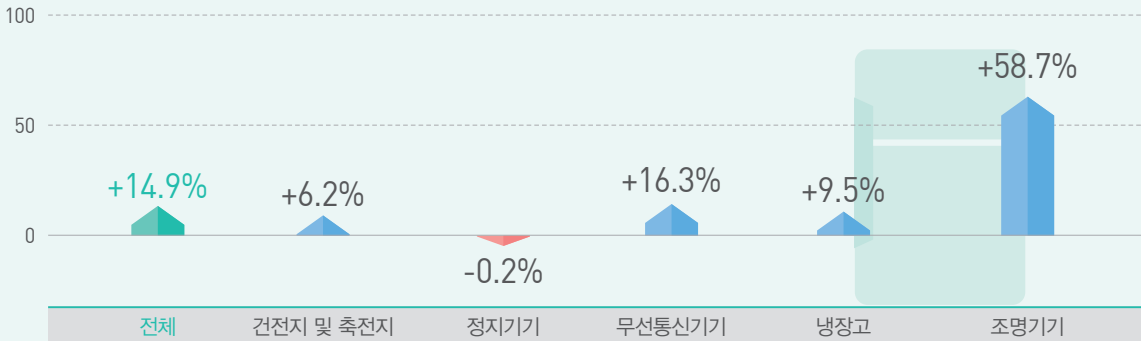
전기전자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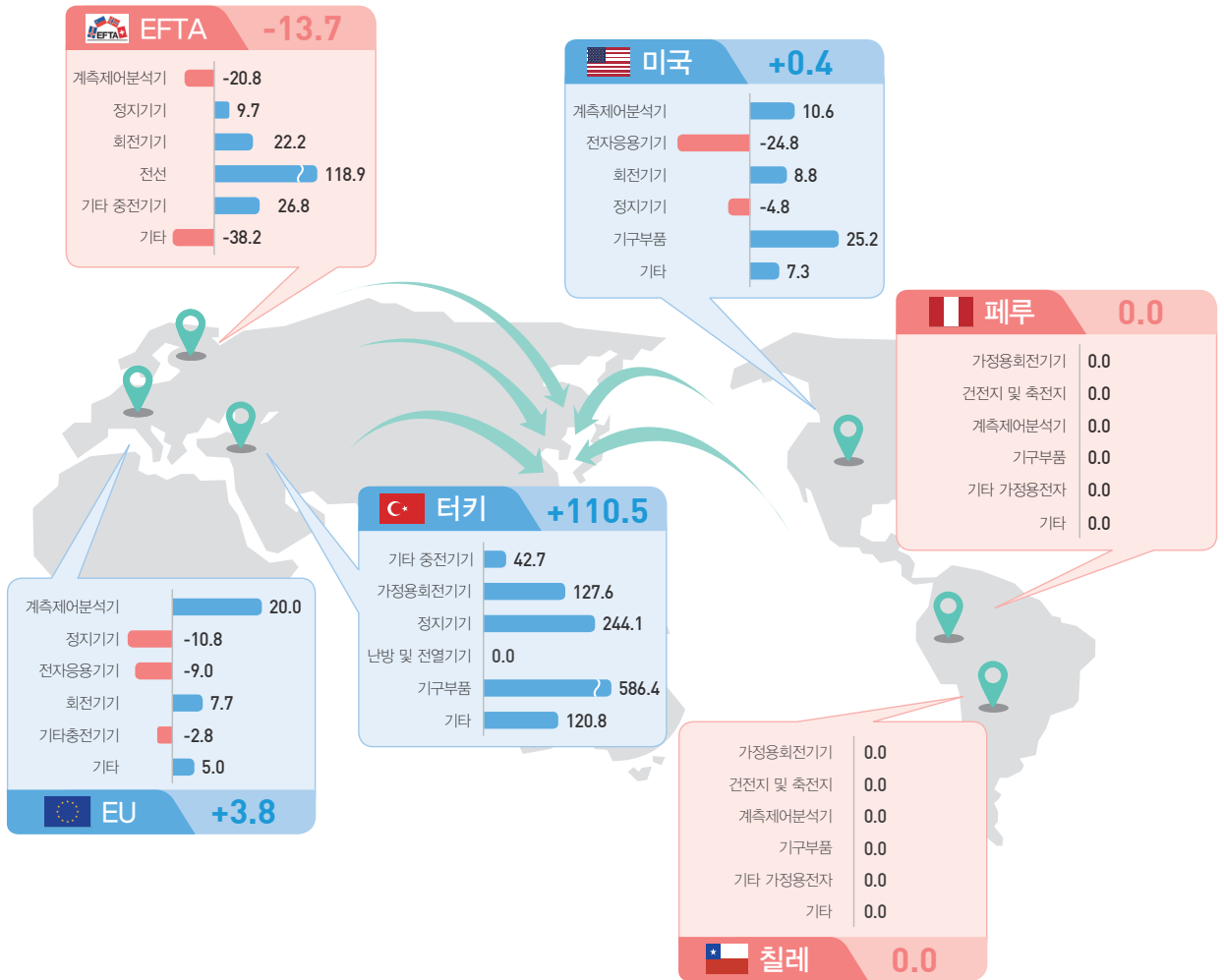


합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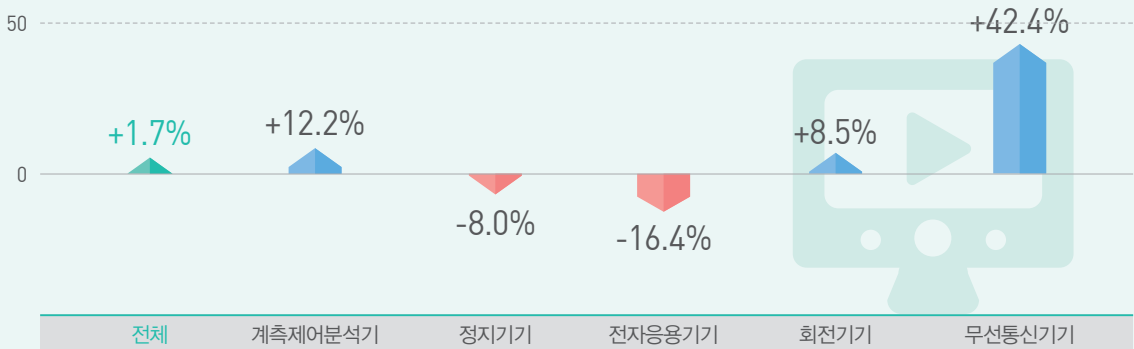




합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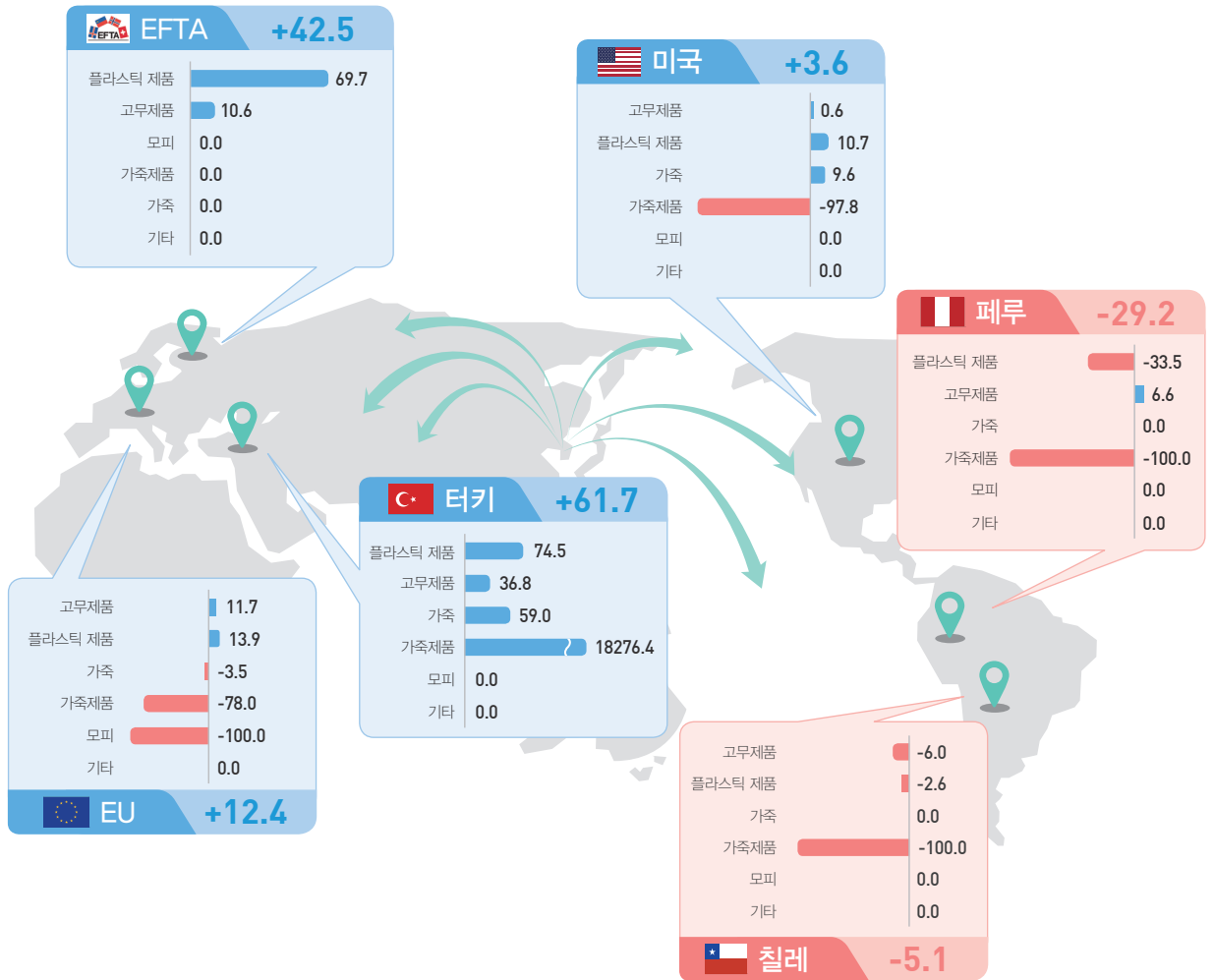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04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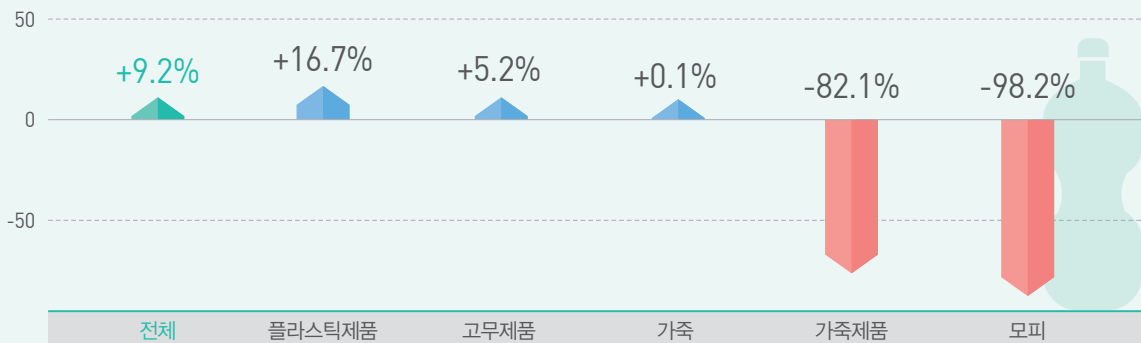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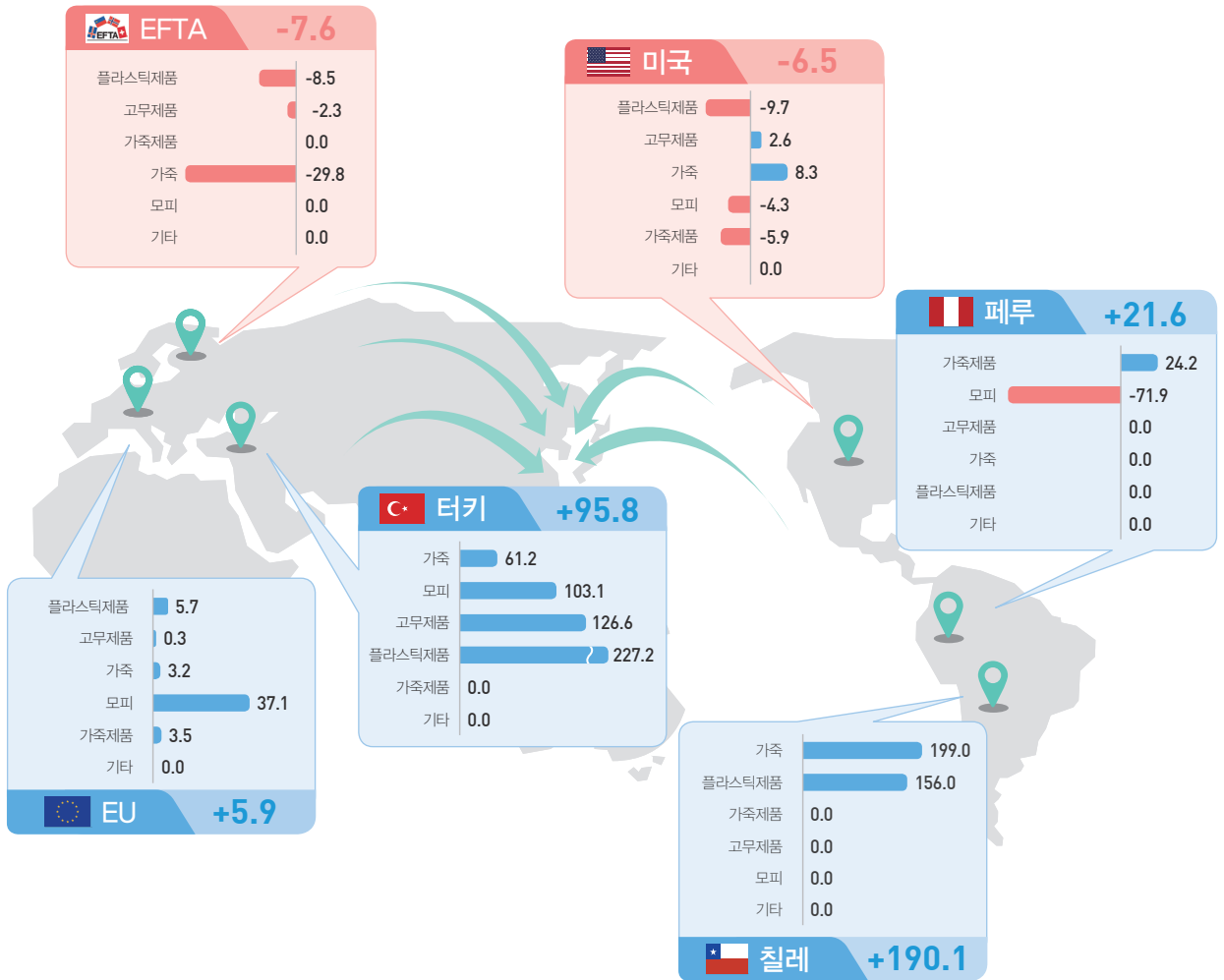


합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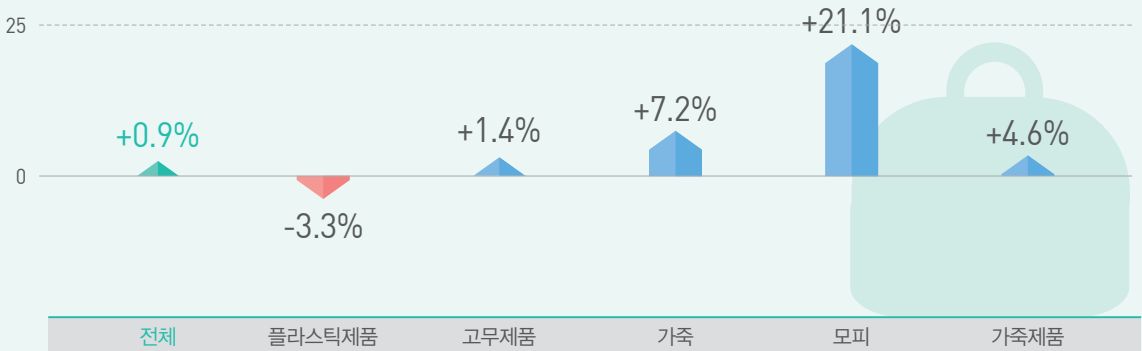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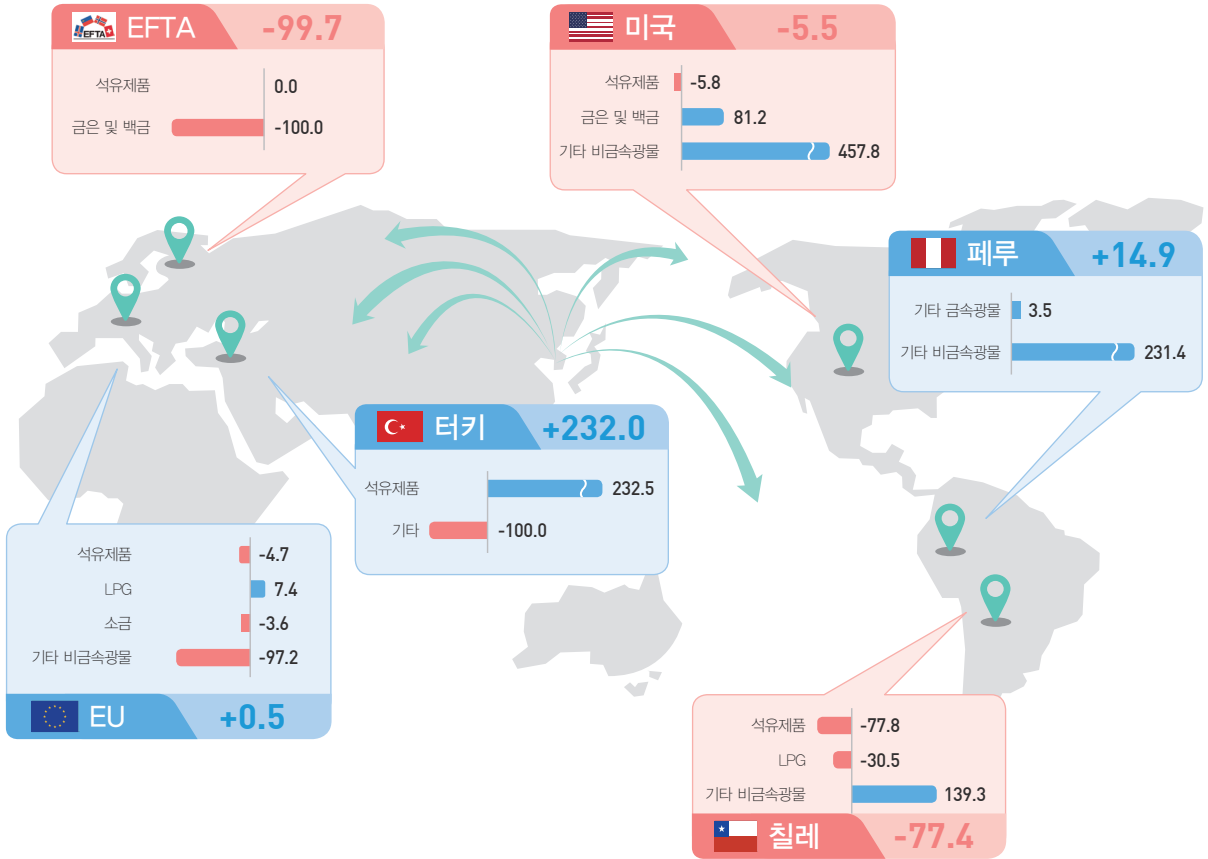


합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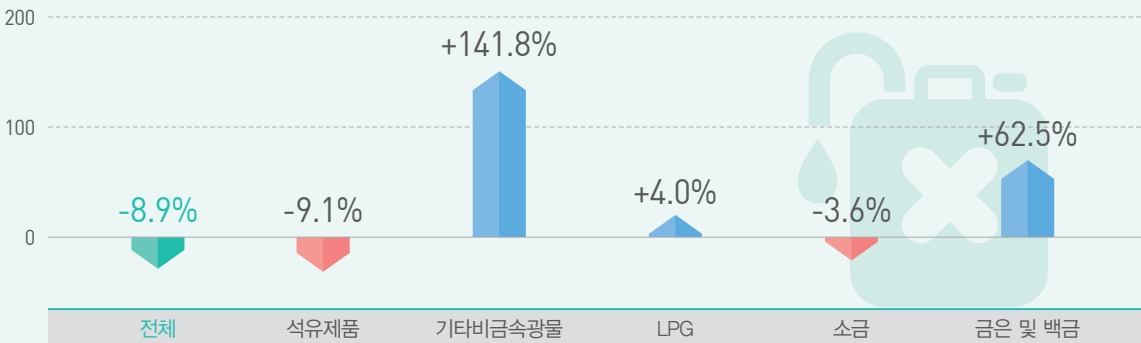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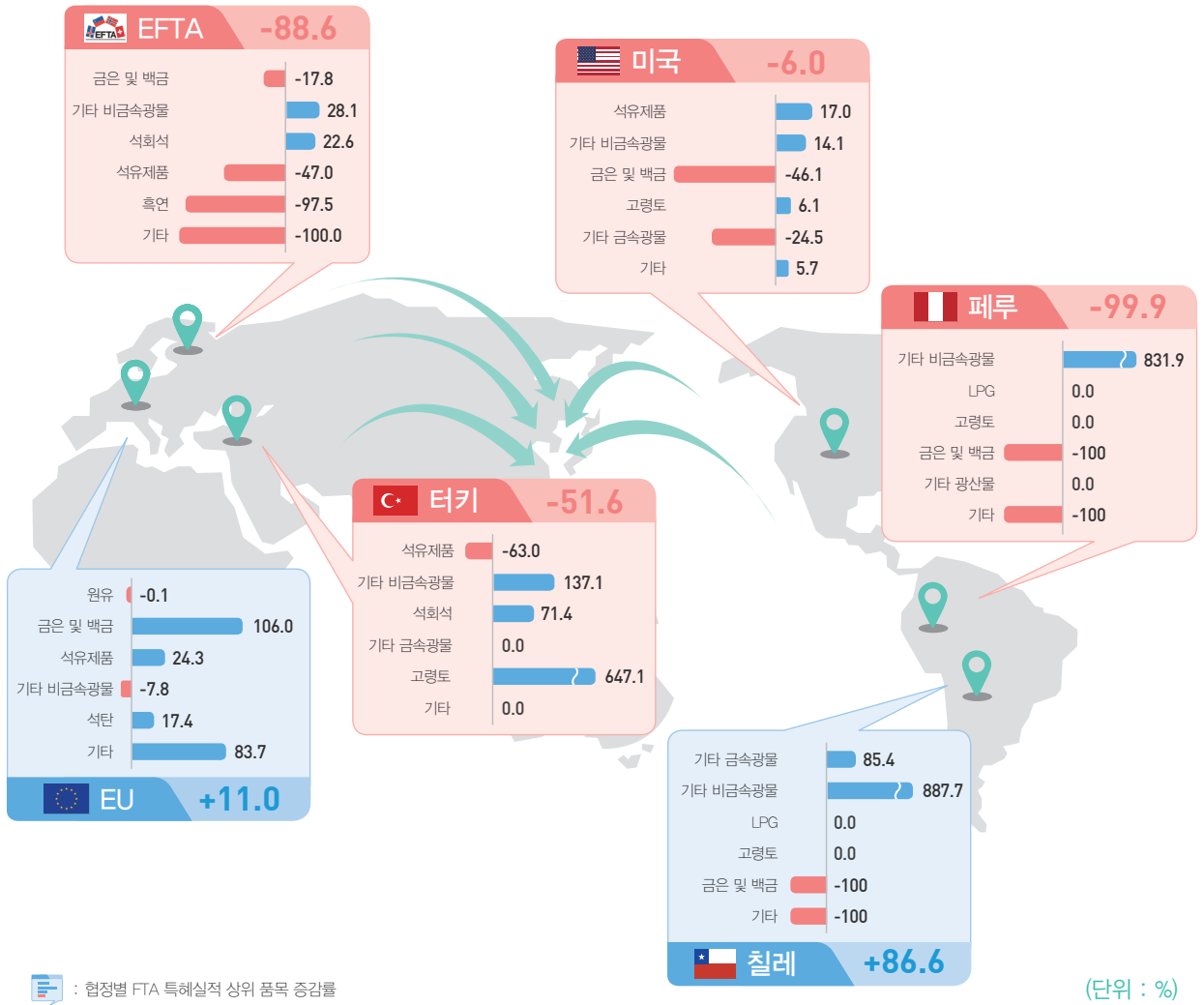


 : 협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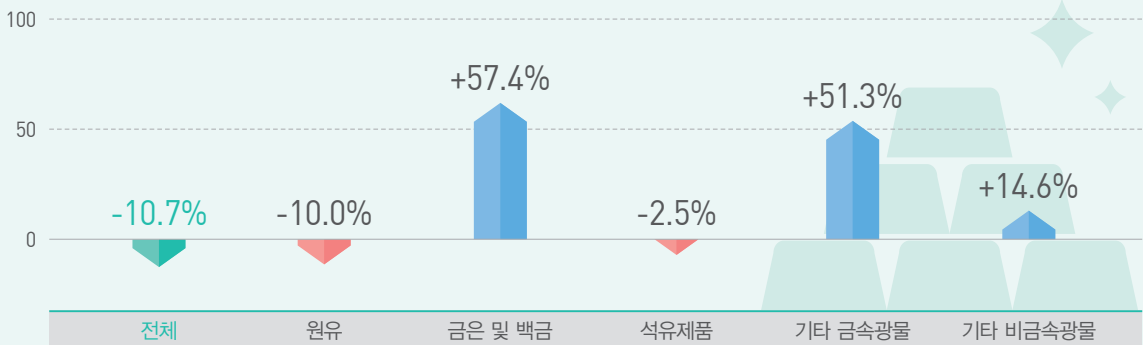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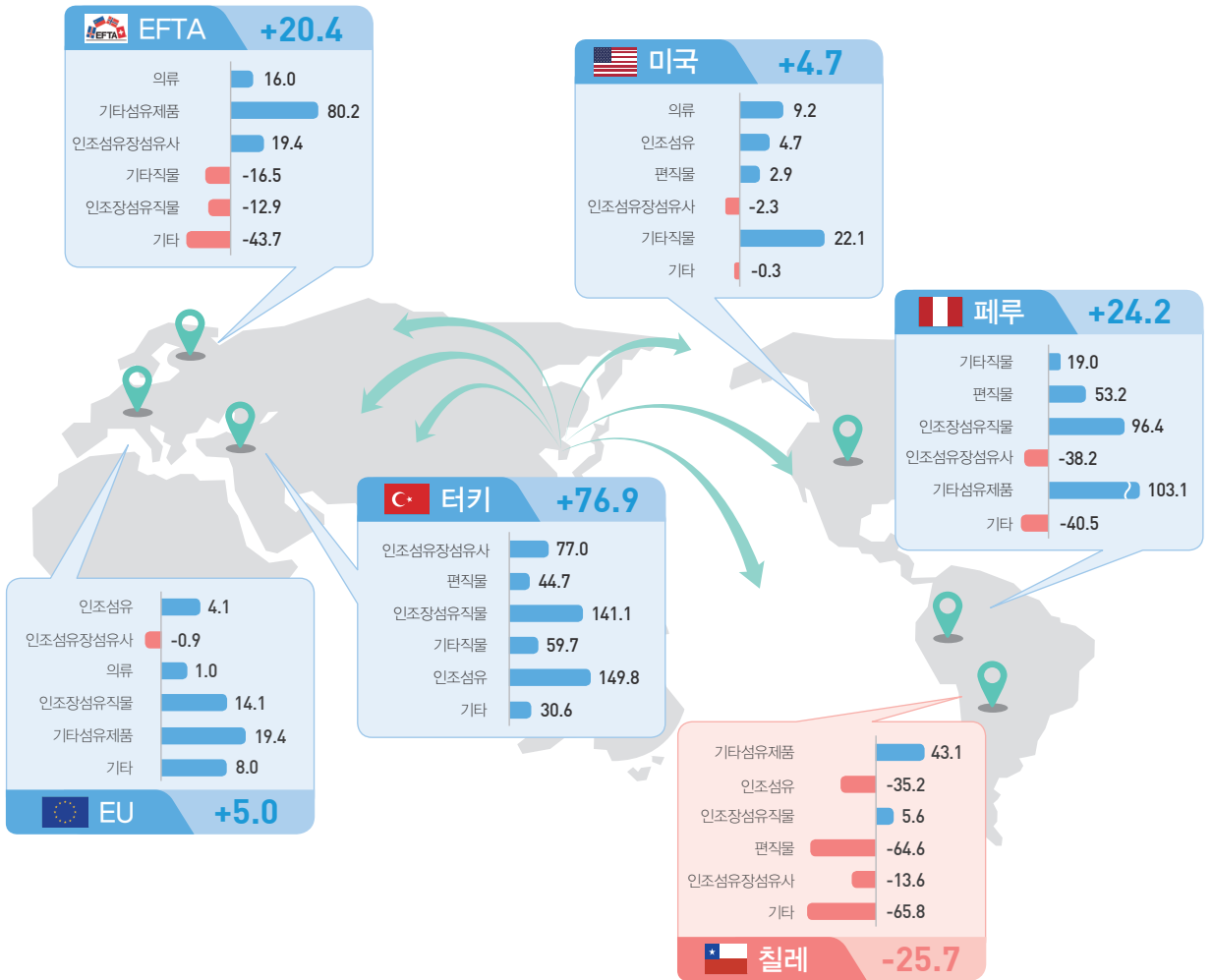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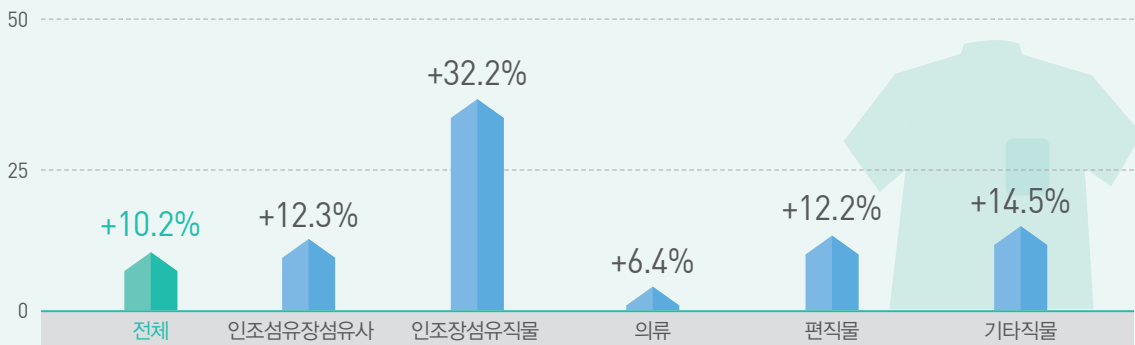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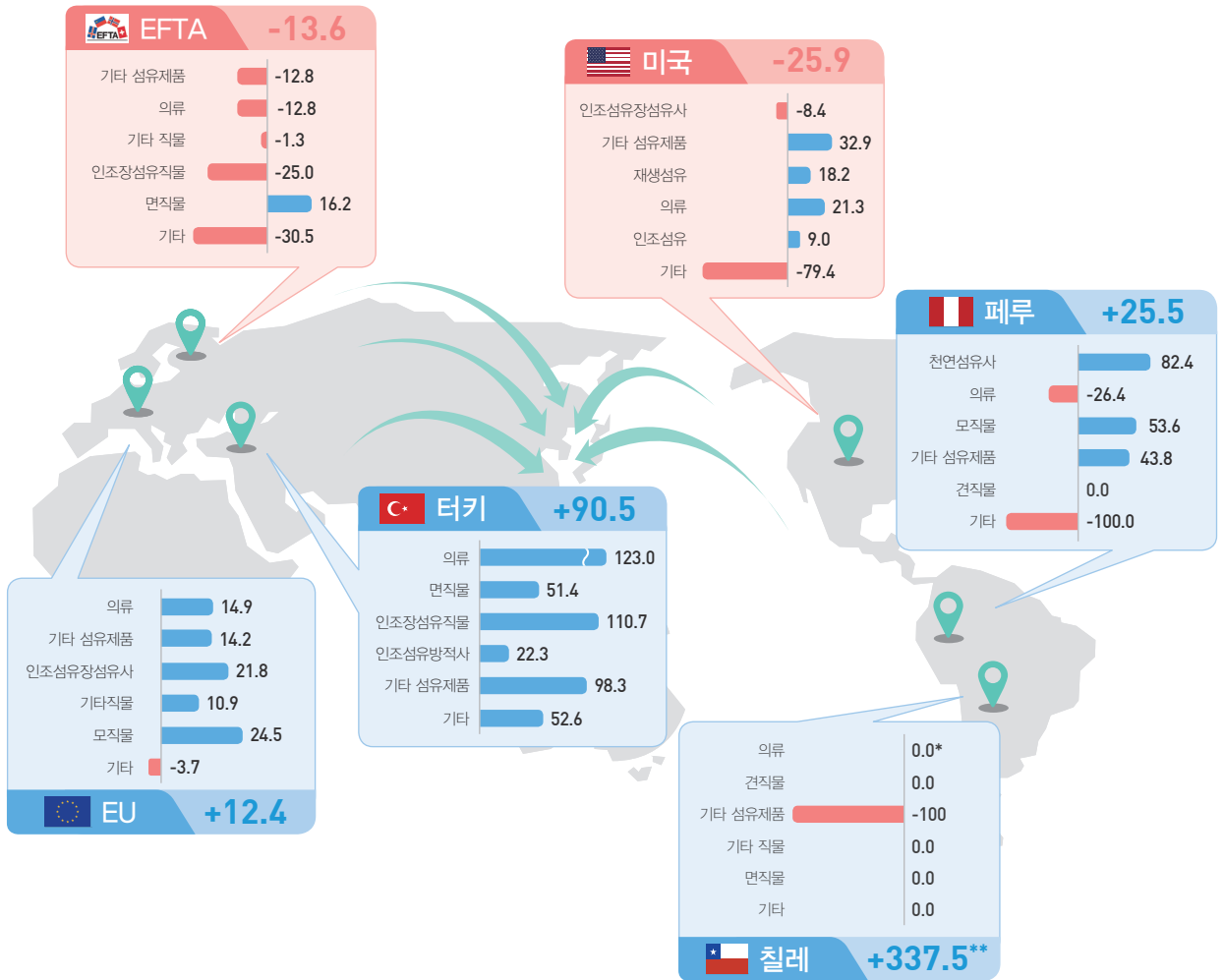


합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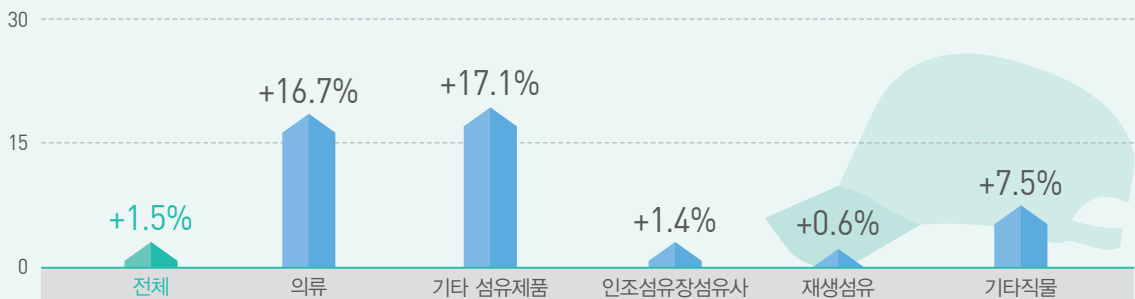




 : 협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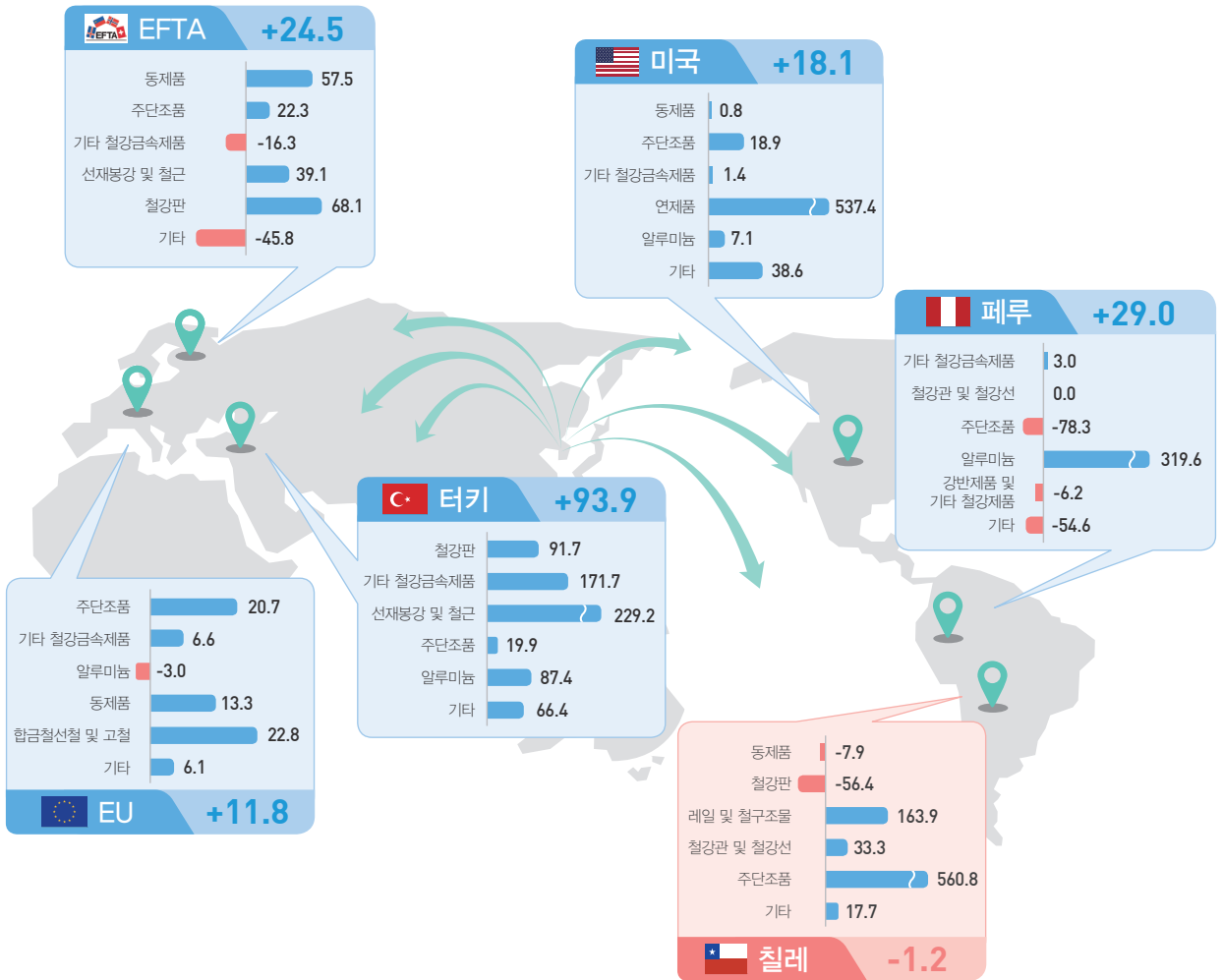


* 증감률 계산 공식에 따라 2014년 FTA특혜수입실적과는 별개로 2013년 FTA특혜수입실적이 없을 경우 '증감률'은 0%로 도출됨

** 2014년 섬유류 중 의류의 FTA특혜수입실적 증가로 섬유류 전체의 FTA특혜수입 증감률이 대폭 증가함

07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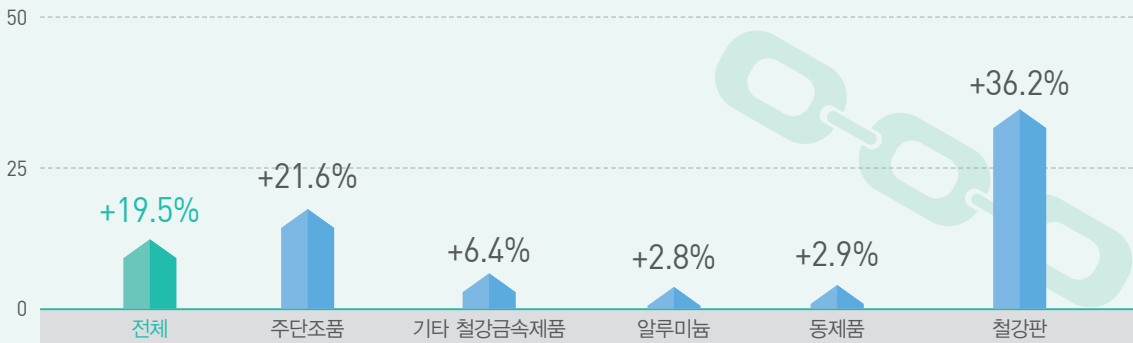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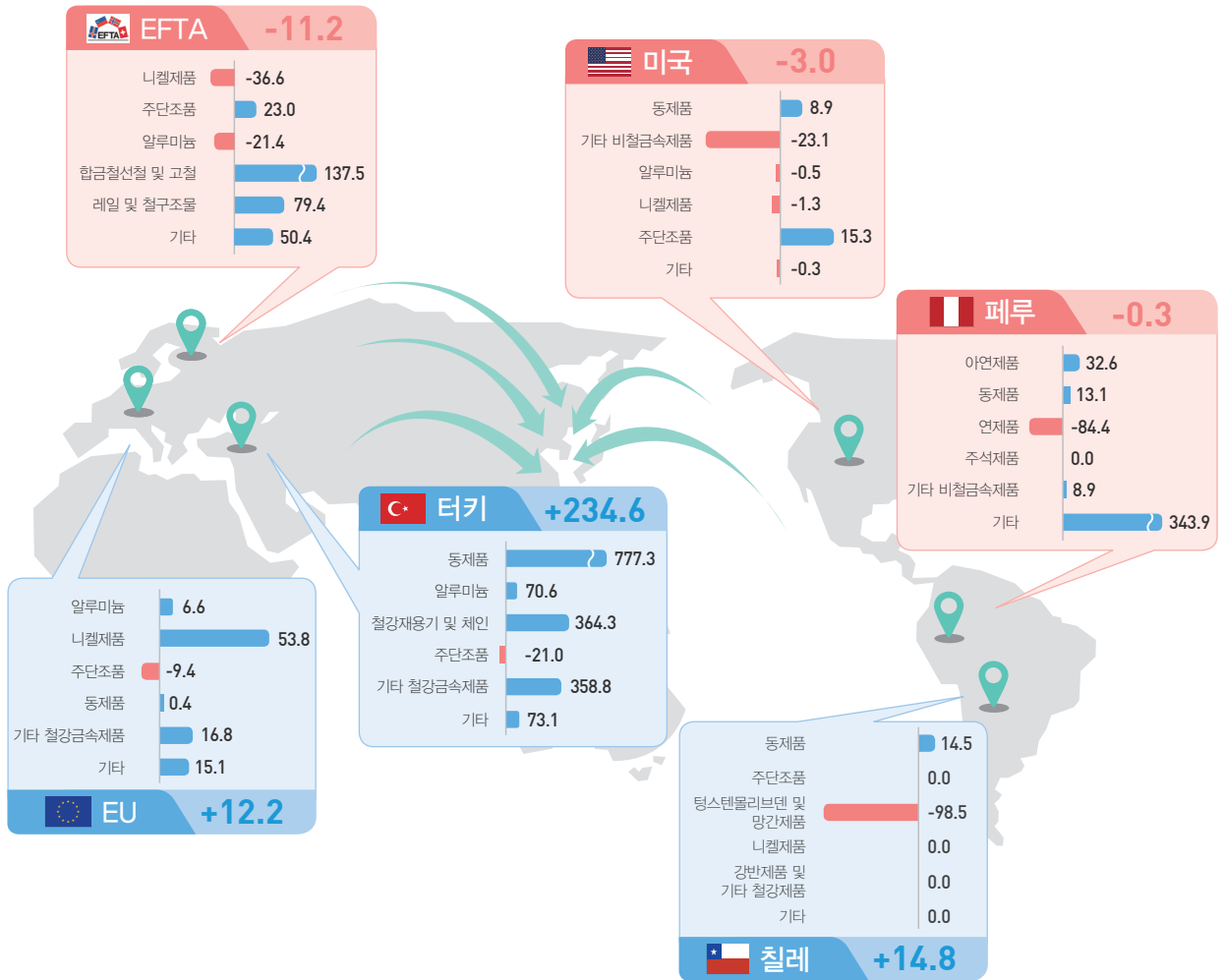


합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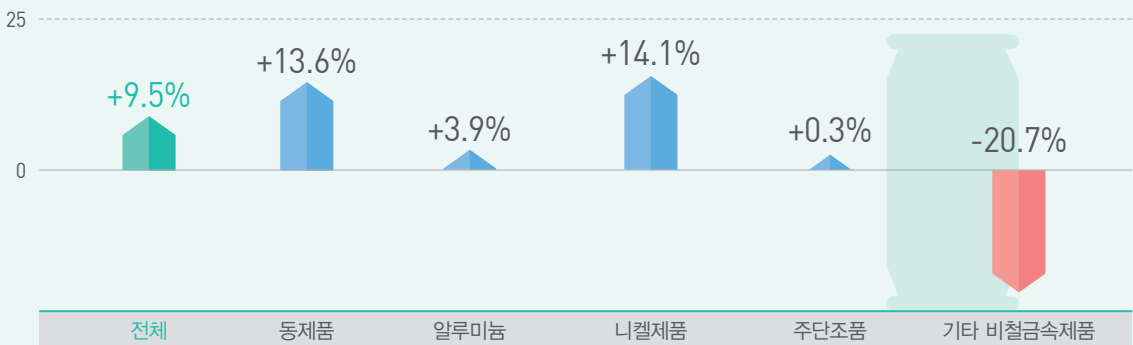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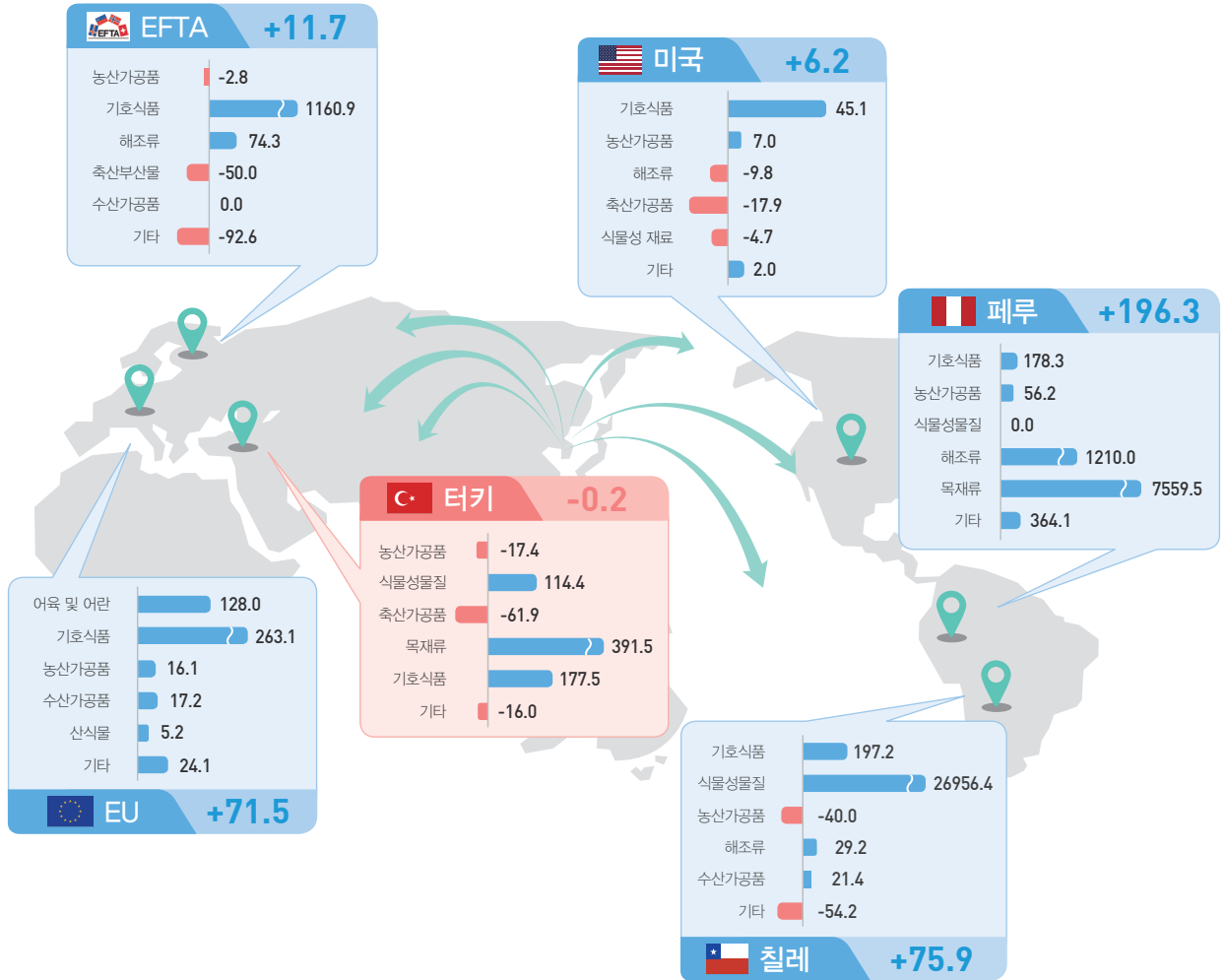


합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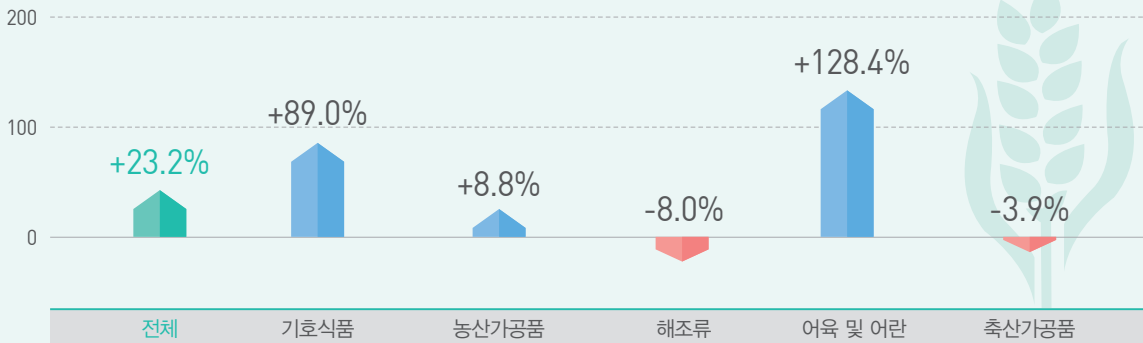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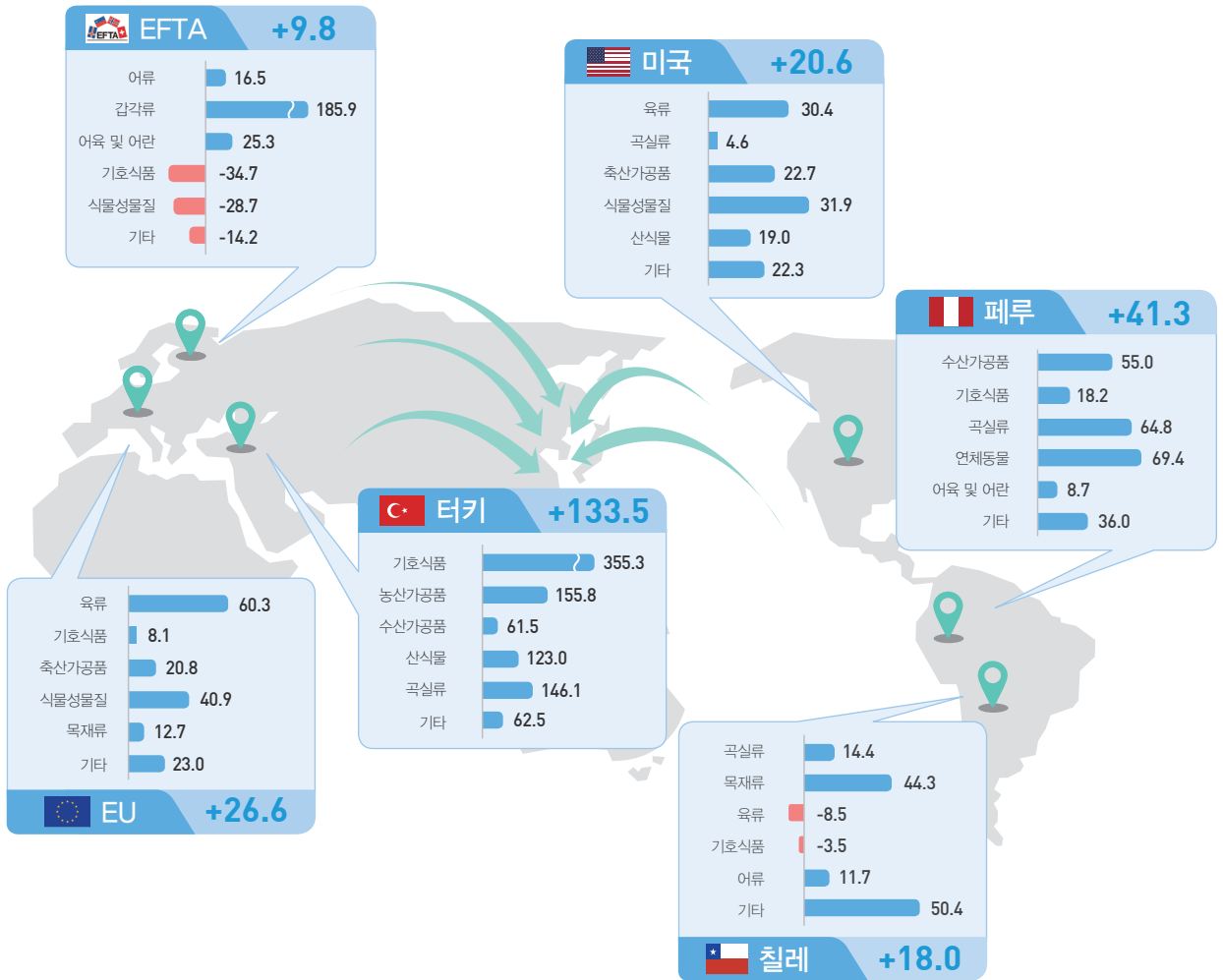


: 협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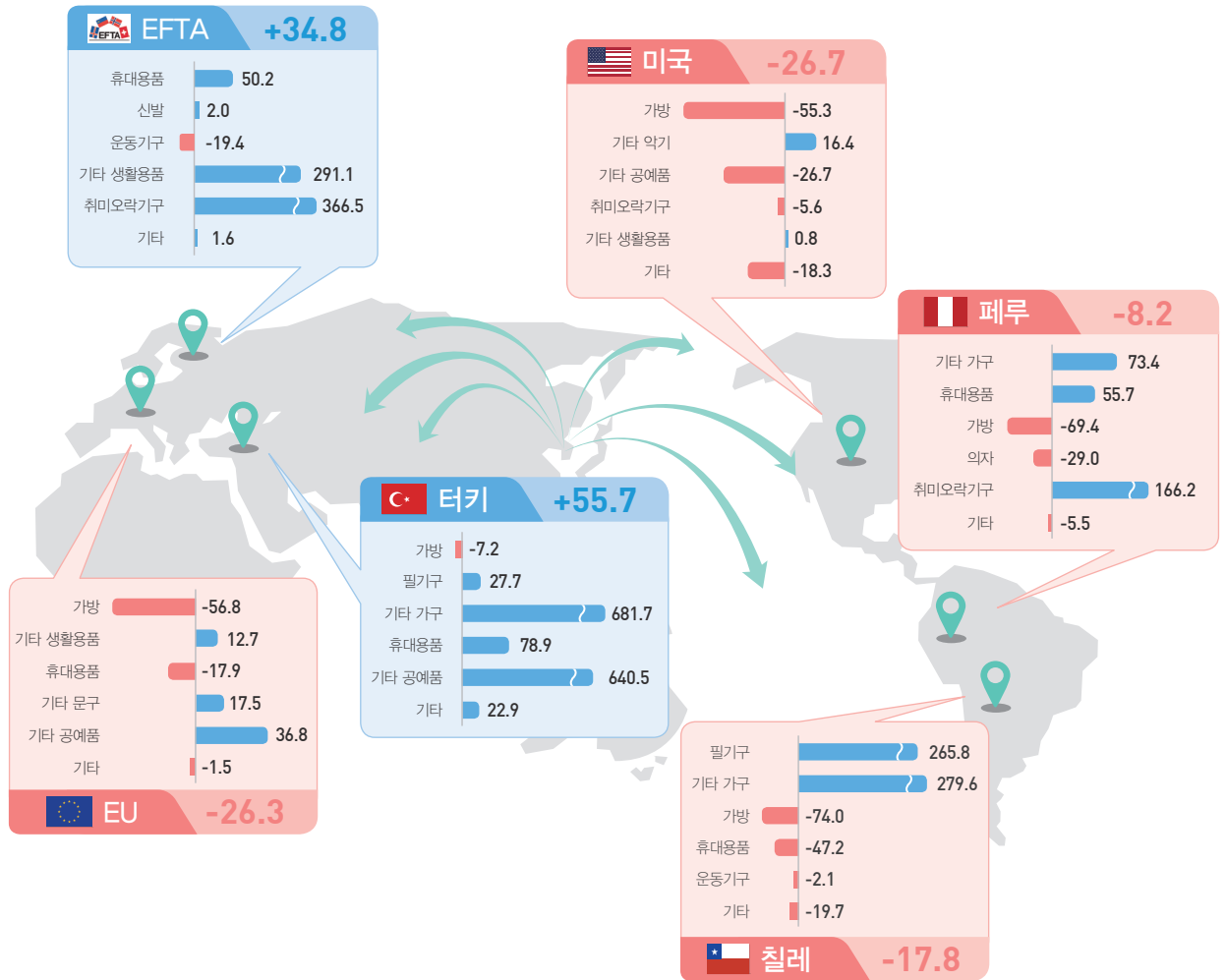


합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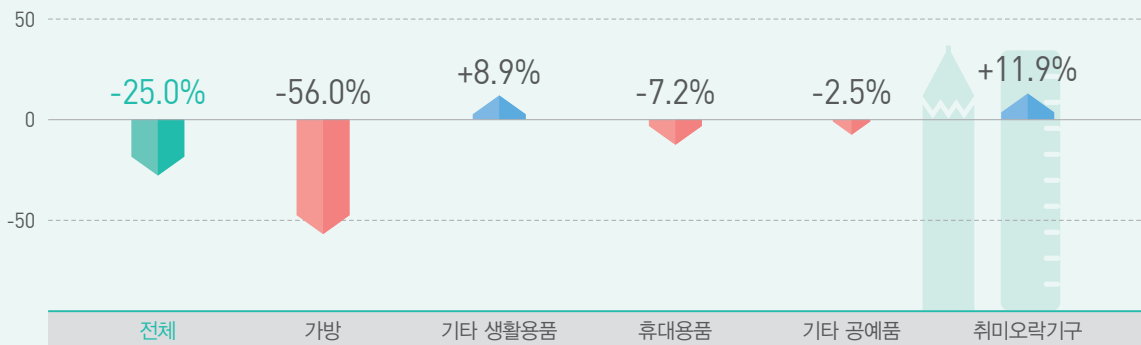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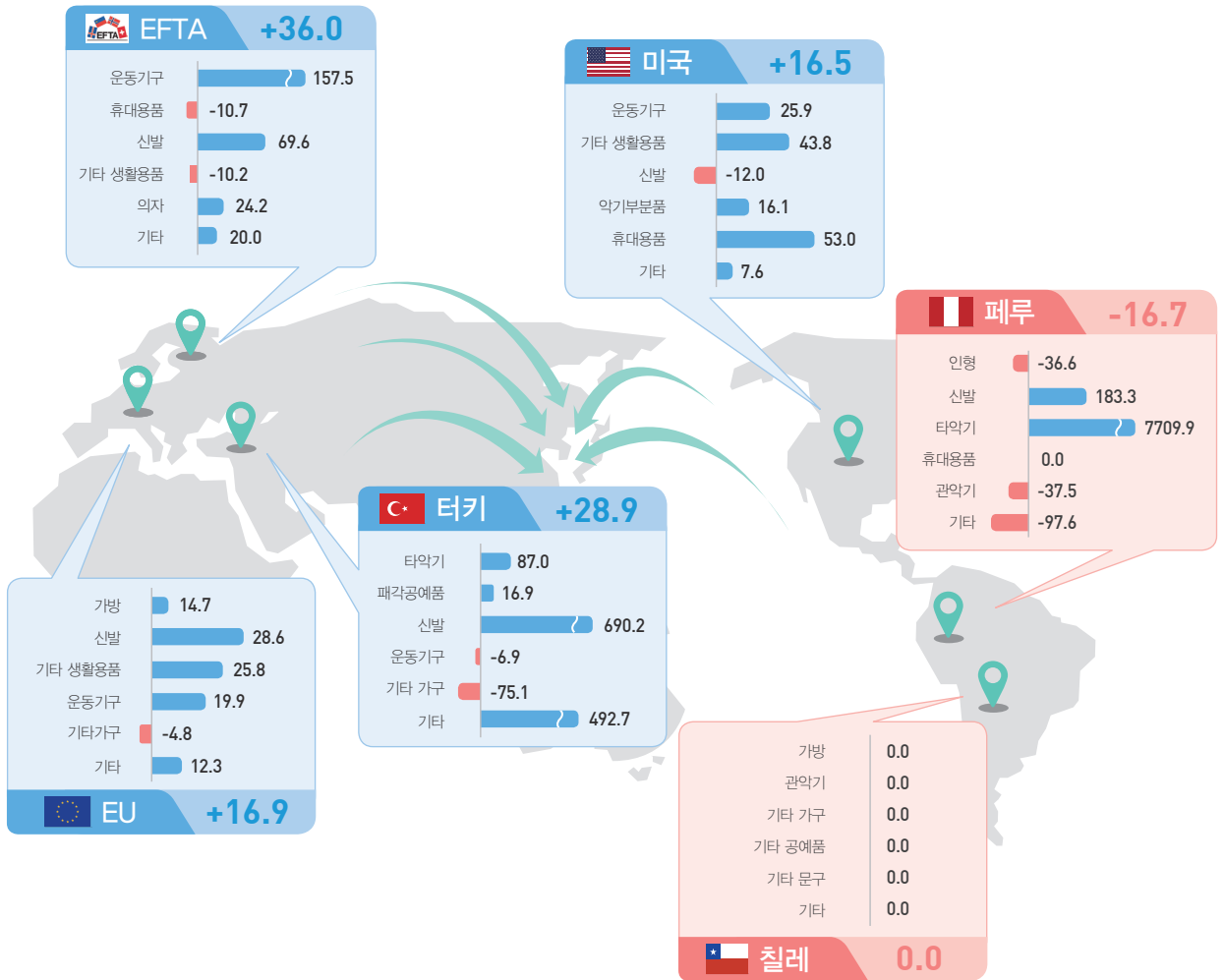


합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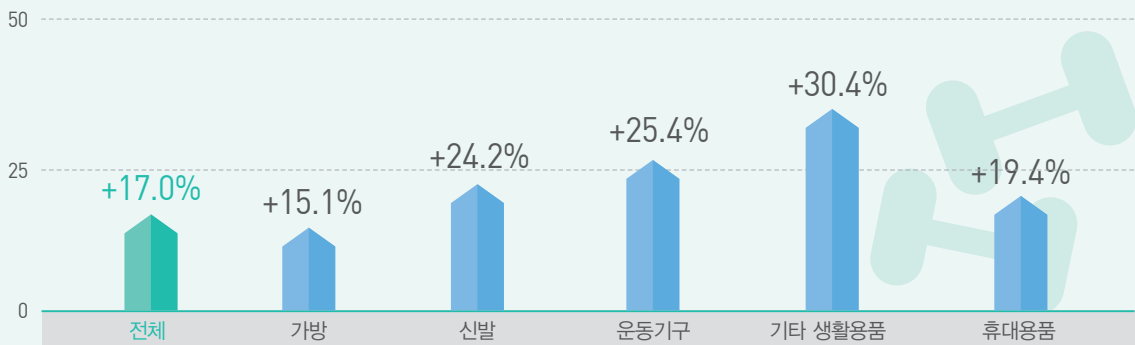




합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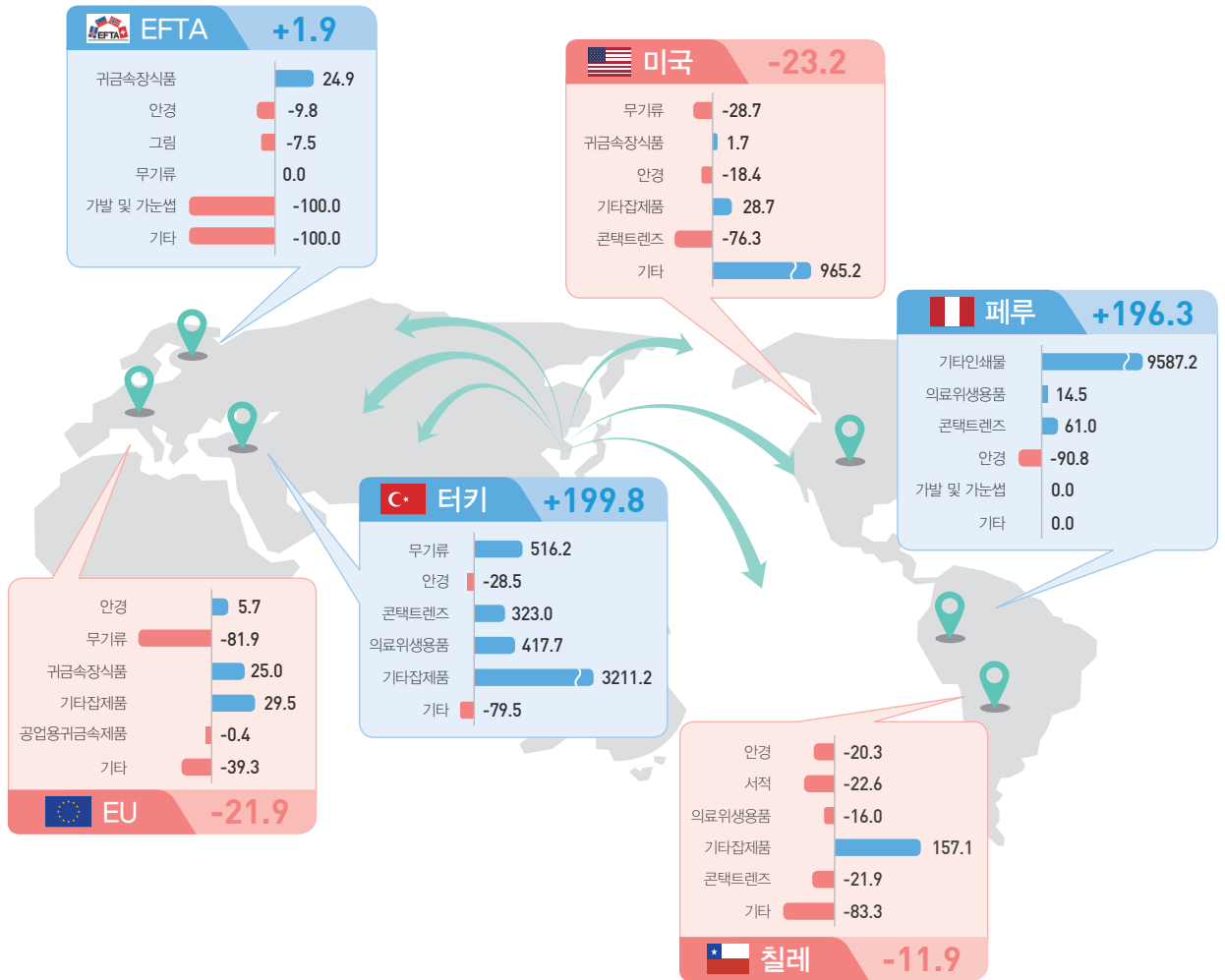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10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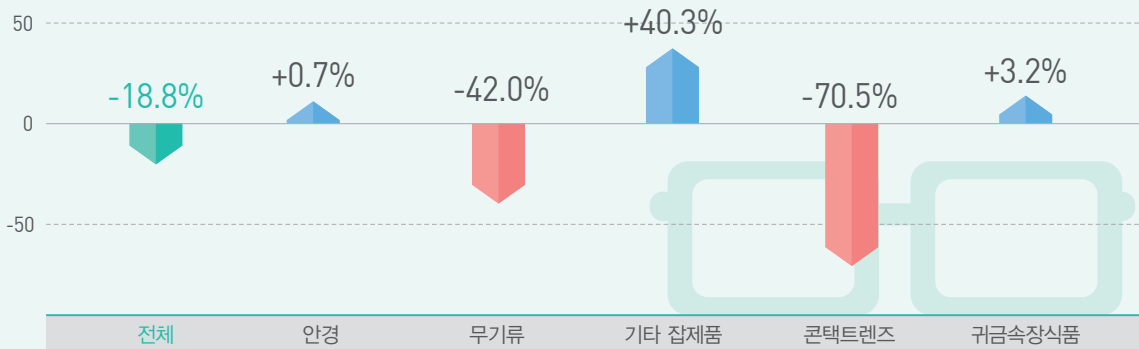
잡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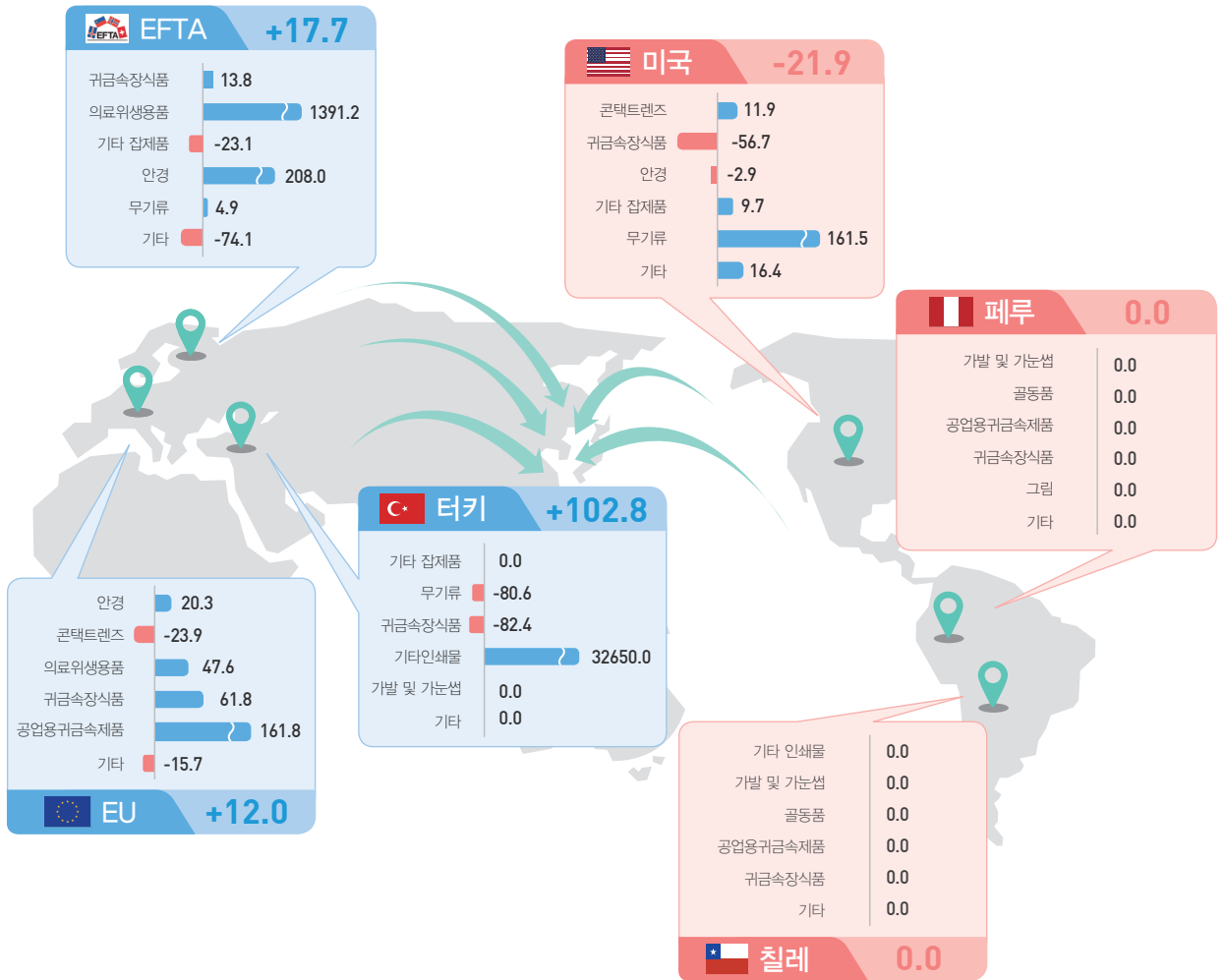


 : 협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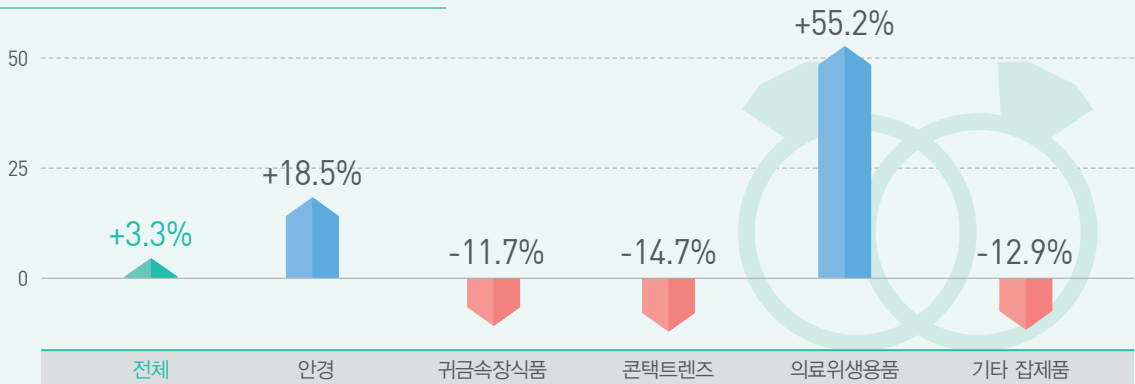




 : 협정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단위 : %)

품목별 FTA 특혜실적 상위 품목 증감률



FTA 무역 리포트

Vol.02 July 2015

〈비매품〉

발행일 2015년 7월

발행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481-3282 / FAX 042)481-7753

<http://www.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600-0701~3 / FAX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디자인·인쇄 아미고디자인

www.amigodesign.co.kr

Tel. 02-517-5043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활용 UP!!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관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 042-481-3282 Fax. 042-481-7753

국제원산지정보원

463-8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